



2022.8.

국회에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최형수 예산분석관
심성택 예산분석관
김소연 예산분석관
송은혜 예산분석관

지 원 | 김자영 행정실무원
주석진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02) 6788-3772 | a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2022.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8. 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2021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총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지원,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570.5조원, 총지출은 601.0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개선되어 90.6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2021년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20.6조원이 증가한 967.2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소비활성화지원 사업, 소상공인지원 사업, 주거안정지원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②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④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⑤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에 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의 상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5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1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2

II. 주요 현안 분석

1. COVAX AMC 등 국제기구 분담금 재정공여 공약에 관한 국회 사전보고
필요 등 13
2.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환경 검토 강화 등 18
 - 2-1. 사업 및 기금 규모 계획 시 면밀한 검토 필요 20
 - 2-2.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율 일관성 및 적정성 확보 필요 23
3. 백신 스와프 후속 조치 관리 철저 필요 27

III. 개별 사업 분석

1. KF글로벌챌린저 사업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필요 30
2.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면밀한 추진 필요 34
 - 2-1. 공공외교 협업시스템 강화 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 35
 - 2-2.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사업추진 방식 개선 필요 40
3. 데이터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사전검토 미흡 43

[통일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49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55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56

II. 주요 현안 분석

1. 남북협력기금 사업 58
 - 1-1. 최근 10년간(2012~2021년) 기금 결산 59
 - 1-2. 세부사업별 결산 60
 - 1-3.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 계획액 과다 편성 79



CONTENTS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결산 분석	83
2-1. 최근 5년간(2017~2021년) 프로그램 결산	87
2-2. 세부사업별 결산	88
2-3.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사유별 지급 방안 검토 필요	97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출입사무소 기본경비 집행	101
2.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	103
3.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실집행 부진	106
4. 시설 개보수 공사는 중장기 계획 마련 후 수행 필요	110
5. 국회 감액 사업 증액 집행 부적절	113
6. 평화경제 토크콘서트 예산 과다 증액 집행 부적절	115
7. 북한이탈주민 증감에 따른 용역수행 방식 검토 필요	1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I. 결산 개요

1. 현 황	123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27

국방위원회

[국방부]

I. 결산 개요

- 1. 현 황 133
-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41
-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43

II. 주요 현안 분석

- 1. 군인연금 144
 - 1-1. 최근 5년간(2017~2021년) 군인연금기금 운용 현황 및 재정수지 149
 - 1-2. 지속적인 군인연금기금 보전금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54
 - 1-3. 해외투자금 손실 발생에 따른 투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 164
- 2. 국군외상센터의 우수한 민간의료인력 확충 방안 필요 169
- 3. 장병의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정책 강화 필요 174
 - 3-1. 군 장병 정신건강 관련 지속적인 사업추진 필요 180
 - 3-2. 장병 정신건강의 실태조사 내실화 필요 183
 - 3-3. 군간부를 위한 심리상담 제도 보완 및 강화 필요 186

III. 개별 사업 분석

1. 탄약지환통의 규격 불일치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	191
2. 주둔지 경계용 등 CCTV 설치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 노력 필요	197
3. 수도병원 장례식장 기부채납사건 패소 관련 사전에 사업추진가능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	203
4.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의 사업집행 철저	208
5. 스마트캠프 전시회 사업추진 부적절	214
6. 간부확보장려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219
7. 군무원 운용률 제고 노력 필요	224
8. 군 간부 전세지원 자원 마련 대책 필요	229

[방위사업청] / 235

[병무청]

I. 결산 개요

- 1. 현 황 303
-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07
-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08

II. 개별 사업 분석

- 1. 대체역 편입신청 집중으로 인한 편입결정 지연 해소 필요 309
- 2. 사회복무요원 소집기관 확대 방안 마련 필요 31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I. 결산 개요

- 1. 현 황 323
-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27
-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28

II. 개별 사업 분석

- 1. 5·18 진상규명지원 사업의 집행을 제고 329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981억 9,400만원으로, 498억 7,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92억 6,900만원을 수납(수납률 98.7%)하고 6억 500만원은 미수납되었다.

[2021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98,194	198,194	198,194	49,875	49,269	605	0	98.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2021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7,862억 8,200만원으로, 이 중 2조 6,099억 4,900만원을 집행(집행률 93.6%)하고 137억 9,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25억 3,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736,149	2,736,149	2,786,282	2,609,949	13,798	162,535	93.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나.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2,347억 8,600만원으로, 1,338억 9,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전액을 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국제교류기금	169,657	169,657	169,657	123,895	123,895	0	0	100
국제질병퇴치기금	65,129	65,129	65,129	9,995	9,995	0	0	100
합계	234,786	234,786	234,786	133,890	133,890	0	0	100

자료: 외교부

2021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2,347억 8,600만원으로, 이 중 1,338억 9,000만원을 지출(집행률 57.0%)하고 371억 3,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국제교류기금	169,657	169,657	169,657	123,895	0	1,093	73.0
국제질병퇴치기금	65,129	65,129	65,129	9,995	0	36,045	15.3
합계	234,786	234,786	234,786	133,890	0	37,138	57.0

자료: 외교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1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498억(57.6%)이 감소한 1,831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0억 7,800만원(26.5%)이 감소하였다.

[2021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64,253	198,194	198,194	49,269	△148,925	△14,984
기금	184,984	234,786	234,786	133,890	△100,896	△51,094
합계	249,237	432,980	432,980	183,159	△249,821	△66,078

주: 2021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2021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770억 9,600만원(9.3%)이 감소한 2조 7,438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62억 8,700만원(8.5%)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342,568	2,736,149	2,736,149	2,609,949	△126,200	267,381
기금	184,984	234,786	234,786	133,890	△100,896	△51,094
합계	2,527,552	2,970,935	2,970,935	2,743,839	△277,096	216,28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라.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외교부의 자산은 5조 5,925억 8,600만원, 부채는 560억 800만원으로 순자산은 5조 5,365억 7,8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3,473억 9,900만원, 투자자산 285억 1,000만원, 일반유형자산 5조 1,406억 2,100만원, 무형자산 77억 3,5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8,574억 9,800만원(18.1%) 증가하였다. 투자자산이 590억 9,6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이 8,145억 300만원 증가하고 유동자산이 663억 6,200만원 증가한데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30억 3,500만원, 장기충당부채 526억 7,700만원, 장기차입부채 2억 9,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5억 5,000만원(△6.0%) 감소하였다. 이는 유동부채 57억 2,5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외교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5,592,586	4,735,088	857,498	18.1
Ⅰ. 유동자산	347,399	281,037	66,362	23.6
Ⅱ. 투자자산	28,510	87,606	△59,096	△67.5
Ⅲ. 일반유형자산	5,140,621	4,299,118	841,503	19.6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68,321	60,504	7,817	12.9
Ⅵ. 기타비유동자산	7,735	6,823	912	13.4
부 채	56,008	59,558	△3,550	△6.0
Ⅰ. 유동부채	3,035	8,760	△5,725	△65.4
Ⅱ. 장기차입부채	297	854	△557	△65.2
Ⅲ. 장기충당부채	52,677	49,944	2,733	5.5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5,536,578	4,675,530	861,048	18.4
Ⅰ. 기본순자산	2,191,397	2,191,397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356,056	482,828	△126,772	△26.2
Ⅲ. 순자산 조정	2,989,124	2,001,305	987,819	49.4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조 6,756억 5,0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조 2,719억 3,200만원, 관리운영비 2,481억 5,800만원, 비배분비용 23억 2,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35억 9,300만원, 비배분수익 662억 1,400만원, 비교환수익 등 124억 7,7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4,407억 1,500만원(18.2%) 증가한 2조 8,599억 2,400만원이며, 이는 주로 재외공관운영, 국제개발협력, 국제기구분담금,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비 증가에 기인한다.

총 15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9,836억원)과 재외공관운영 프로그램(8,636억 5,700만원), 국제기구분담금 프로그램(5,201억 8,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044억 9,600만원과 경비 1,436억 6,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평가손실 21억 1,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외교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675,650	2,234,173	441,477	19.8
가. 프로그램 총원가	2,719,243	2,288,178	431,065	18.8
나. 프로그램 수익	43,593	53,955	△10,362	△19.2
II. 관리운영비	248,158	220,004	28,154	12.8
III. 비배분비용	2,329	285	2,044	717.2
IV. 비배분수익	66,214	35,252	30,962	87.8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859,924	2,419,209	440,715	18.2
VI. 비교환수익 등	12,477	21,597	△9,120	△42.2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847,446	2,397,612	449,834	18.8

자료: 외교부

외교부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4조 6,755억 3,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5조 5,365억 7,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8,610억 4,800만원(18.4%) 증가하였

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2조 8,477억 4,6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2조 7,206억 7,500만원 발생하고 조정항목은 98,78억 1,900만원 발생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등 재원의 조달 2조 7,709억 6,6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502억 9,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실 8억 7,900만원과 자산재평가이익 9,886억 9,9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외교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4,675,530	4,714,437	△38,907	△0.8
II. 재정운영결과	2,847,446	2,397,612	449,834	18.8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720,675	2,368,182	352,493	14.9
IV. 조정항목	987,819	△9,476	997,295	10,524.4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5,536,578	4,675,530	861,048	18.4

자료: 외교부

마. 재정 구조

2021회계연도 외교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은 없다.

외교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파라과이(ODA), ②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③스리랑카(ODA), ④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ODA), ⑤아제르바이잔(ODA), ⑥우즈베키스탄(ODA) 등이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 가운데 국별협력사업인 파라과이(ODA)는 수원국 코로나19 확산세로 사업 지연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40억원이 감액(212억7,000만원→172억 7,000만원)되었고,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사업 삭감으로 36억원이 감액(299억8,500만원→263억1,900만원)되었다. 스리랑카(ODA)는 수원국의 사정으로 25억원이 감액(139억원→114억원)되었고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ODA)은 사업규모 대비 효과성이 적다는 검토를 반영하여 18억원 감액(887억 2,800만원→869억 8,700만원) 이외 국별협력사업(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ODA)은 수원국 사정 등 국회 감액안을 수용하여 32억원 감액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글로벌 온라인 화상회의 및 교육시스템 구축(정보화), ②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③아세안 및 동남아시아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등이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국제영상회의 및 해외 직원 교육시스템 구축 필요가 반영되어 65억 3,000만원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정상회의 행사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40억원이 증액(34억 1,200만원→74억 1,200만원)되었다. 아세안 및 동남아시아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는 KAL858 수색을 위한 용역비 등을 추가 반영을 위하여 14억 9,100만원이 증액(37억 4,300만원→52억 3,400만원)되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 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②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달성, ③주변 4국과 역내 협력 증진, ④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외교 다변화 ⑤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결집하는 선도적 다자외교를 통한 국격 상승 도모를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COVAX AMC 재정공여를 위해 2021년 1차분을 예비비와 전용을 통해 집행하고 2022년 예정된 나머지 2차분은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연도 중 재정공여 등을 이유로 예비비나 전용을 통해 집행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국회 사전보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출국납부금 감소, 사업집행 여건 악화 등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제 결산 간 차이가 점차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및 기금 규모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징수관리 주체별로 징수위탁수수료율이 상이하며, 현행 수수료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수료 부과의 일관성 및 수수료율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루마니아 의료기기 공여를 위한 예비비가 이월되어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1차 지원금 잔액과 2022년 예산 집행에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1

COVAX AMC 등 국제기구 분담금 재정공여 공약에 관한
국회 사전보고 필요 등

해외긴급구호 사업¹⁾은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피해국에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구호물자·현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도적지원(ODA)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2,327억 3,900만원 중 99.7%인 2,320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5,700만원을 불용하였다.

해외긴급구호 사업의 경우 재난대응,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국제부담금 사업으로 구성되며, 이 중 COVAX AMC(COVID-19 Vaccines Advance Market Commitment)²⁾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내역사업인 재난대응 및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예산 56억 3,000만원,³⁾ ODA 사업 전용예산 692억원⁴⁾, 예비비 437.5억원을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638-402의 내역사업

2) COVAX Facility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주도로 운영 중인 '백신 공동구매' 다자 협력 이니셔티브를 의미하며, 이는 고·중소득국이 자부담으로 COVAX Facility에 참여하는 'Self-financing'과 중·저소득국 백신 지원을 위해 공여국 등이 기금을 마련하는 'COVAX AMC' 2부분으로 구분된다. 해외긴급구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COVAX AMC에 대한 기여금을 의미한다. COVAX AMC의 운영방식을 보면, 공여국들이 마련한 기금을 바탕으로 사무국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백신 제조사간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AMC 92개국(저·중소득국)에 백신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주요국별 COVAX AMC 재정공여 공약 현황은 아래와 같다.

[OECD DAC 회원국의 COVAX AMC 재정공여 공약 현황]

(단위 : 백만불)

연번	국가	COVAX AMC 공약
1	미국	4,000
2	독일	1,222
3	일본	1,000
4	영국	731.4
5	스웨덴	538.6
6	EU	488.7
7	캐나다	470.2
8	이탈리아	469.9
9	프랑스	240.1
10	한국	210
11	노르웨이	192.7
12	스위스	161.6

자료: 외교부

활용하여 총 1,185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해외긴급구호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외긴급구호	119,789	119,789	0	69,200	43,750	232,739	232,082	99.7	0	657
COVAX AMC 재정공여	5,630	0	0	69,200	43,750	118,580	118,580	10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해외긴급구호 사업 내 COVAX AMC 재정공여 예산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국제협력단은 출연받은 예산 1,185억 8,000만원 중 1,185억 8,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해외긴급구호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본예산	추경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해외긴급구호	119,789	119,789	232,082	224,269	2,642	226,911	226,601	0	310	99.9
COVAX AMC 재정공여	5,630	5,630	118,580	118,580	0	118,580	118,580	0	0	100.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 3) 외교부에 따르면, COVAX AMC 재정공여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정확한 액수가 기재되지 않아 2021년 12월 코백스 1억불 송금액(한화) 기준으로 본예산 부분 해당액 56.3억원을 역추산하여 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4)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ODA) 사업 148.2억원, 미얀마(ODA) 사업 127.3억원, 아시아 비중점 국가그룹(ODA) 사업 80.4억원 등 ODA 사업에서 총 692억원을 인도적지원(ODA) 사업으로 전용 감액하였다.

나. 분석의견

해외긴급구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는 COVAX AMC 재정공여를 위해 2021년 1차분을 예비비와 전용을 통해 집행하고 2022년 예정된 나머지 2차분은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연도 중 재정공여 등을 이유로 예비비나 전용을 통해 집행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국회 사전 보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G7 정상회의(2021.6.)를 계기로 COVAX AMC에 2021년(1차분) 1억불, 2022년(2차분) 1억불 총 2억불 상당의 지원을 공약하였다. 이에 외교부는 1차분으로 1,185억 8,000만원을 공여하였으며, 2022년 예정된 2차분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 예산 1,131억원을 편성하였다.

[해외긴급구호 사업 내 COVAX AMC 재정공여 예산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예산액	전용(예비비)	집행액
2021	0	692 ¹⁾ (437.5)	1,185.8
2022	1,131 ¹⁾	-	-

주: 1) 재난대응,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사업 예산 56.3억원, ODA 사업 전용 예산 692억원

2) 재난대응 내내역사업에 편성함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전에 재정공여 공약을 발표한 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제적 약속 등을 이유로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이 그대로 인정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예산안 편성·제출 전에 구체적인 공여액을 명시·선언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 절차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COVAX AMC 재정공여(1차분)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공약 발표 후 당해연도에 예비비와 전용을 통해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OVAX AMC 지원을 공식화한 시기는 2021년 6월로, 외교부는 1차분 지원에 관한 준비를 연초부터 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시기에는 정부 내 추가경정예산안이 진

행되고 있던 시기로 가급적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도 중 재정공여 등을 이유로 예비비나 전용을 통해 집행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별도 법률 제정 등을 통하여 재정공여 공약에 대한 국회 사전보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교부는 국제부담금 성격의 COVAX AMC 재정공여 예산을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성격의 사업 집행 시 관련 비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ODA) 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외긴급구호 사업에서 COVAX AMC 재정공여 명목으로 민간경상보조 437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COVAX AMC 재정공여 예산은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국제부담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COVAX AMC 재정공여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역	집행비목	집행액
해외긴급구호	2021.6월 G7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COVAX AMC 1억불 기여의 연내 이행을 위해 예비비 편성	민간경상보조 (320-01)	43,75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해 설립된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 등에 지급하는 부담금,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등은 국제부담금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경상보조와 국제부담금 집행지침]

비목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민간경상보조 (320-01목)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 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
국제부담금 (340-02목)	-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국고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COVAX AMC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공여국들이 마련한 기금을 바탕으로 사무국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백신 제조사간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AMC 92개국(저·중소득국)에 백신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즉, 지출 대상과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민간경상보조보다 국제부담금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⁵⁾

따라서, 외교부는 국제부담금 성격의 COVAX AMC 재정공여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사 성격의 사업 집행 시 관련 비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2022년 예정된 2차분에 대해서도 이를 고려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일례로,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내내역사업인 ‘Gavi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 사업 예산은 국제부담금(340-02)으로 집행되고 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법」(2017.1.1. 시행)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출국납부금)¹⁾, 기금운용수익금 등이며²⁾, 운용 및 관리는 외교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동 기금의 2021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액의 경우 당초 계획 651억 2,900만원의 15.3%인 99억 9,500만원이 수납되었다. 수입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자 수가 감소하여 법정부담금인 출국납부금이 당초 계획 554억 9,900만원의 2.4%에 불과한 13억 4,900만원이 수납되었기 때문이다.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1)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천원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항공기 좌석 등급에 구분이 있는 경우 상위 등급의 좌석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좌석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이하 “출국납부금”이라 한다)
3. 기금운용수익금

[2021회계연도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총계	65,129	65,129	65,129	9,995	9,995	0	0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703	703	703	46	46	0	0
기타재산수입	703	703	703	46	46	0	0
기타경상이전수입	55,847	55,847	55,847	1,849	1,849	0	0
법정부담금	55,499	55,499	55,499	1,349	1,349	0	0
기타경상이전수입	348	348	348	499	499	0	0
정부예금회수	8,579	8,579	8,579	8,100	8,100	0	0
한국은행예치금회수	0	0	0	104	104	0	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79	8,579	8,579	7,996	7,996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지출의 경우 질병퇴치사업,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등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기금사업 불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출국자 수 감소로 출국납부금 등 기금 재원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비 지출 규모를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2021회계연도 국제질병퇴치기금 지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총계	65,129	65,129	65,129	9,995	0	55,134
질병퇴치사업	42,078	42,078	42,078	6,127	0	35,951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6,171	6,171	6,171	5,899	0	272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8,279	8,279	8,279	143	0	8,136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25,473	25,473	25,473	21	0	25,152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2,155	2,155	2,155	64	0	2,091
기금운영비	730	730	730	637	0	93
인건비	620	620	620	582	0	38
기금운영비	110	110	110	55	0	55
여유자금운용	22,321	22,321	22,321	3,231	0	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2,321	22,321	22,321	3,231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2-1. 사업 및 기금 규모 계획 시 면밀한 검토 필요

가. 현 황

2021년도 질병퇴치사업 단위사업의 집행률은 14.6% 수준이었는데, 이는 단위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 중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사업,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사업,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1.7%, 0.1%, 3.0%로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동 세부사업들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2021회계연도 국제질병퇴치기금 질병퇴치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집행부진 사유
질병퇴치사업	42,078	6,127	14.6	
·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6,171	5,899	95.6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른 전문가 파견 및 대외행사 추진 보류 등에 따라 일반수용비 및 국외업무여비 예산 절감
·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8,279	143	1.7	운영비 예산절감 및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라 사업비 지출 규모 (사업비 전액 감액) 조정
·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25,473	21	0.1	운영비 예산절감 및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라 사업비 지출 규모 (사업비 전액 감액) 조정
·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2,155	64	3.0	2021년 출국납부금 수납액 감소에 따라 징수위탁 수수료 지출 절감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코로나19로 인한 출국납부금 감소, 사업집행 여건 악화 등으로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제 결산 간 차이가 점차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및 기금 규모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상기 현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자 수가 감소하여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출국납부금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지출 사업 및 여유자금운용은 전년도의 각각 13%, 42%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났다.

[연도별 국제질병퇴치기금 계획액, 수입·지출, 여유자금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계획액	85,214	85,872	100,407	65,129
수입	39,688	41,951	11,240	1,895
지출	40,445	40,495	48,110	6,127
여유자금규모	45,322	43,204	8,505	3,554

주: 1. 수입은 자체수입(출국부담금, 재산수입, 기타), 지출은 사업비 지출임

2. 여유자금규모는 연말 잔액 기준임

자료: 외교부

한편, 출국납부금의 2021년도 계획 수입액은 555억원으로 2020년 510억원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21년도 실제 수입액은 13.5억원으로 2020년도 95.4억원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즉, 외교부는 코로나19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환경을 낙관적으로 전망함에 따라, 기금 운용 상 계획액과 결산액 간 차이를 보다 크게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계획 대비 실제 수입액의 감소에 따라 2021년 기금운용과정에서는 지출 조정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그 외 수입 보전을 위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¹⁾ 당초 계획된 사업 대부분은 추진되지 않았다.

1)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입액 보전을 위한 예수금 편성은 2022년도에 반영되었다.

2021년 국제질병퇴치기금 주요 사업의 지출 결산액을 살펴보면, 3개 주요 사업 중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사업만 집행률이 95.6%로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2개 사업의 집행률은 0.1~1.7%에 그치고 있다.

[2021회계연도 국제질병퇴치기금 주요 사업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결산	집행률	22년 예산
	당초	수정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6,171	6,171	5,899	95.6	1,515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8,279	8,279	143	1.7	9,600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25,473	25,473	21	0.1	48,482

자료: 외교부

따라서 외교부는 기금운용환경에 대한 검토 강화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2.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를 일관성 및 적정성 확보 필요

가. 현 황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사업¹⁾은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출국납부금 징수 위탁에 대한 경비 지급을 통해 기금사업을 수행하고, 운용상에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의 2021년도 계획현액 21억 5,500만원 중 6,4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9,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	2,155	2,155	0	0	2,155	64	0	2,09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2017년 1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정 시, 앞서 출국납부금²⁾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참고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10조(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대행)³⁾ 내 출국납부금 관련 내용을 설정하였으며, 외교부와 공항공사 간 약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 한국공항공사는 4.5%의 징수위탁수수료를 지급 중이다.

1) 코드: 국제질병퇴치기금 2433-404

2) 출국납부금은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포함된다. 즉,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에 근거한 출국납부금 1,000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 근거한 출국납부금 10,000원을 합하여 총 11,000원(1인당)이 부과된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출국납부금은 국제질병퇴치기금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권에 1,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되는 납부금을 말한다.

3)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10조(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대행)

①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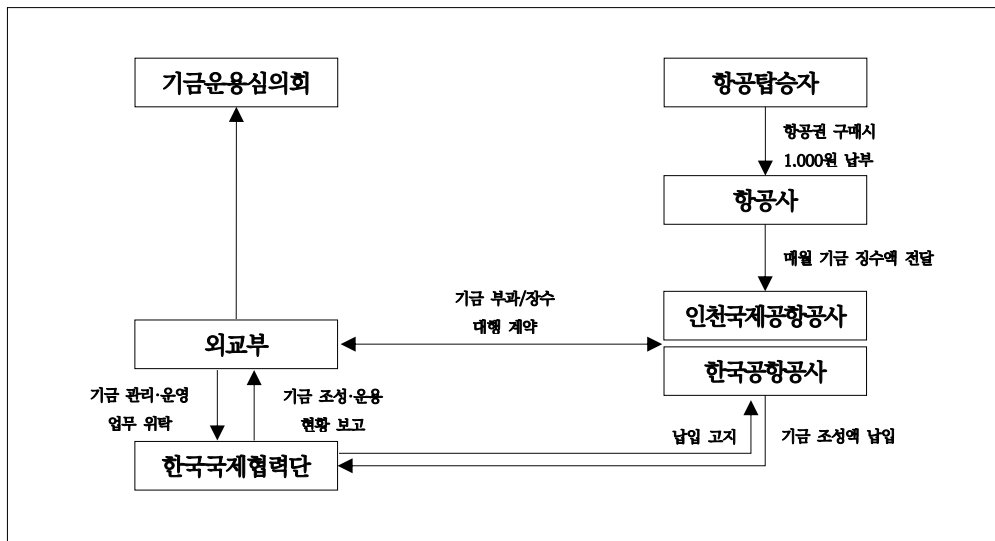
나. 분석의견

징수관리 주체별로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율이 상이하며, **현행 수수료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수료 부과와 일관성 및 수수료율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출국납부금 징수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공항공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양 공항공사는 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항공사에 위탁하고, 항공사는 이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취득하고 있다.

출국납부금 징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공권에 출국납부금을 포함하여 징수한 후 매일 실적 분류·송부, 월별 정산하여 납입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때 항공사는 국제선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2개 공항공사는 국제공항에서 각 항공사가 징수한 일별 납부금에 관하여 운항자료, 탑승현황 등의 징수자료를 접수하고, 출국납부금의 산정, 정산, 납입고지, 국고납부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출국납부금 납입 절차의 경우, 공항공사에서 항공사에 고지·징수 후 국고에 납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⁴⁾

[국제질병퇴치기금 및 출국납부금 징수 절차]



자료: KOICA,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좌석별 차등부과 체계 수립 연구」, 2019, p41.

4) 출국납부금 납입 일정을 보면, 익월 5일에 고지하여, 익월 19일에 징수한 후, 매월 말일에 국고납입되고 있다,

한편, 징수위탁수수료는 항공사와 공항공사 간 위탁관리에서 발생하는데,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징수액은 총 61억 2,100만원(인천국제공항공사 48억 2,100만원, 한국공항공사 13억원)으로 확인된다.

[연도별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징수위탁수수료(총액)	구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017	1,810	1,460	350
2018	1,912	1,500	412
2019	1,720	1,305	415
2020	615	493	122
2021	64	63	1
계	6,121	4,821	1,300

자료: 외교부

징수위탁수수료율을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5%, 한국공항공사 4.5%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징수관리 주체별로 수수료율이 상이하고, 객관적인 검토 없이 수수료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수수료율의 일관성 및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⁵⁾

수수료를 설정 연혁을 살펴보면,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모태인 항공기연대기여금의 운용을 시작한 2007년부터 수수료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양 공항공사 간 격차⁶⁾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1년까지 항공사, 공항공사 모두 위탁수수료를 취득하였으나, 2012년부터 항공사가 위탁수수료 전액을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⁷⁾

5) 기획재정부, 「2021년 기금존치평가」, 2021.6.

6) 외교부에 따르면, 과거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 당시 항공사는 6%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공사는 3.7%를 요구한 이후 약 5차례를 협상하였고, 항공사는 5% 이하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징수업무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입장이었으며, 인천공항공사 기준으로 2004년 5%로 조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7) 외교부에 따르면, '출국납부금 징수 실무는 개별 항공사가 대행하지만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자체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국회 등 외부 지적을 고려하여 양 공항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왔으며, 2012년 이후부터는 양 기관 자체 수수료 징수분은 폐지하고 위탁수수료는 전액 개별 항공사에 지급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율 설정 연혁]

기 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007~2008년	7.2% (항공사 5%, 공사 2.2%)	7.5% (항공사 4.5%, 공사 3%)
2009~2011년	5.5% (항공사 5%, 공사 0.5%)	5.5% (항공사 4.5%, 공사 1%)
2012년~현재	5% (전액 항공사)	4.5% (전액 항공사)

주: 2007년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모태인 항공기연대기여금 운용 시작연도임

자료: 외교부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4.5%)의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수수료 산정 시 부가가치세분 0.45%, 신용카드 수수료 2.0%, 항공사 원가 및 일반관리비 2.1%⁸⁾, 징수시스템운영비 등이 반영되며, 신용카드 수수료(2~2.3%),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항공요금 결제시스템 수수료(1%), 부가가치세(0.45%) 등을 제외하면 항공사 지급 수수료는 1% 내외로 확인된다.⁹⁾

외교부는 각 항공사 원가 및 일반관리비 요율 등의 차이에 따라 징수관리 주체별로 징수위탁수수료율이 상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 공항공사의 수수료 산정내용 중 어느 비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2021년 기준 징수위탁수수료율(4.5%)이 신용카드 업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2.06%)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징수위탁수수료율 산정 시 비목별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의 요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개체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보다 항공사의 징수자료 파악·추적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수수료 수준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교부는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부과와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공항공사간 수수료율 격차를 최소화하고,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8) 원가구성 항목은 인건비(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전산장비 구입비, 시스템 및 프로그램 설치·유지보수비, 관련 소모품비 및 인쇄비, 일반관리비 등)로 구성된다.

9) KOICA,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좌석별 차등부과 체계 수립 연구」, 2019, p123.

가. 현 황

EU주요회원국 및 확대가입대상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¹⁾은 EU주요회원국 및 확대가입대상국가들과의 실질협력관계를 증진하고, ASEM·V4·Nordic 등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유럽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활동 및 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는 EU주요회원국 및 확대가입대상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43억 3,300만원 중 43억 4,400만원을 집행하여 1,100만원을 과집행하였다. 루마니아 의료기기 무상공여를 위하여 예비비 40억 900만원을 배정받았으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전액 출연하였다.

[2021회계연도 EU주요회원국 및 확대가입대상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유럽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511	1,511	0	0	4,009	5,520	5,099	92.4	0	421
EU주요회원국 및 확대가입대상국가 와의 교류협력강화	344	344	0	△20	4,009	4,333	4,344	100.3	0	△1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EU주요회원국 및 확대가입대상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내 루마니아 의료기기 무상공여 관련 예산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출연받은 예산 40억 900만원 전액을 이월하였다.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433-401

[2021회계연도 EU주요회원국 및 확대가입대상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외교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본예산	추경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EU주요회원국 및 확대가입대상국가 와의 교류협력강화	0	4,009	4,009	4,009	0	4,009	0	4,009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루마니아 의료기기 공여를 위한 예비비가 이월되어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1차 지원금 잔액과 2022년 예산 집행에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백신 부족 추세에 대응하여 미국 안센 백신 공여, 이스라엘과 화이자 백신 스와프(교환) 등 주요국과의 백신 협력을 추진해왔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한국이 루마니아에 약 1천 500만 유로 상당의 RT-PCR 진단 키트를 지원한 계기로 루마니아와 보건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2021년 8월경, 한국 정부와 루마니아는 백신, 의료물품 교환 등 백신 협력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한국 정부는 루마니아로부터 화이자 백신 105.3만분(구매), 모더나 백신 45만회분(공여) 등 백신 140.3만회분을 도입하고, 한국은 루마니아가 희망하는 의료물품을 제공하며 상호공여²⁾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외교적 성과를 입증하였다.

루마니아 의료기기 공여 관련하여, 외교부는 백신 45만회분 도입에 상응하는 약 131억원 중 40억 900만원을 EU주요회원국 및 확대가입대상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예비비로 배정하였으며, 나머지 88억 4,000만원은 2022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2) 한국 정부는 루마니아로부터 모더나 백신 45만회분 도입을 조건으로 루마니아가 희망하는 의료기기를 무상 공여하기로 합의하였다.

[EU주요회원국 및 확대가입대상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내 루마니아 의료기기
공여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비비	집행액
2021	0	4,009	0
2022	8,840	-	-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예비비 40억 900만원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에 출연하였는데, 전액 이월되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루마니아의 코로나19 상황 악화, 정세 불안³⁾ 등으로 인해 공여절차가 지연되었으나, 루마니아의 의료물품 접수 희망 의사는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2022년 3월, 1차 지원금 40.09억 중 21억원에 상응하는 1차 의료물품(신속지원키트 60만개)을 조달하여 전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2022년 6월, 루마니아의 2차 희망 공여물품 목록을 접수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검토를 통해 2022년 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마니아 의료기기 무상공여 예산 신청 및 집행 내용]

구분	신청·배정일자	배경 및 향후 계획
예비비	- 신청: 21.10.26. - 배정통보: 21.11.9.	- 21.10.13. 루마니아의 1차 희망물품(신속진단키트, 코로나 치료제, 산소호흡기 등) 요청 - 21.12.3. 공여 물품 신속진단키트로 변경 요청 - 21.12.15.-22.1.17. 희망물품에 대한 국내 조달절차 실시 - 22.3. 루마니아에 신속지원키트 전달 - 22.6.23. 루마니아의 2차 희망물품(연구 기자재, IT기기 및 전기차량 등) 요청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2차 지원 시에도 루마니아의 정세 불안,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의 요인이 공여 절차에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차 지원금 잔액(약 19억)과 2022년 예산 집행에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2021.10.5. 집권내각 퇴진, 2021.11.25. 신임 총리 내각 신임안 통과 등

III

개별 사업 분석

1

KF글로벌챌린저 사업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필요

가. 현 황

KF글로벌챌린저 사업¹⁾은 해외 주요 싱크탱크, 박물관, 도서관, 대학 등 국제적 환경에서 실무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인적교류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외교부는 KF글로벌챌린저 사업의 2021년도 계획현액 4억 9,100만원 중 96.9%인 4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KF글로벌챌린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글로벌 인적교류	2,689	2,689	0	1,695	1,363	80.4	0	332
KF글로벌챌린저	786	419	0	491	476	96.9	0	1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2011년부터 추진된 KF 글로벌챌린저²⁾는 만 40세 미만의 관련 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각국 싱크탱크, 박물관, 도서관 국제기구/국제NGO 기관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선발인원은 약 30~40명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2021년에는 25명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28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국제교류기금 1733-401

2) 2011년 신설 당시의 사업명은 'KF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이었으며, 2015년 'KF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다.

[KF글로벌챌린저 사업 개요]

구분	싱크탱크	박물관	도서관	국제기구/국제NGO
참가 자격	·만 4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관련 전공 분야 학위소지(예정)자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미만인 자 등			
인턴십 기관	우드로윌슨센터 등 00개 정책연구기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00개 미술관·박물관	콜레주드프랑스 등 00개 도서관	벨기에 유럽의회,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글로벌세미나
인턴십 기간	6~9개월 (기관별 상이)	6~9개월 (기관별 상이)	10개월 이내	3~6개월 (기관별 상이)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도별 KF글로벌챌린저 선발인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국가	13개국	7개국	5개국	5개국	8개국
협력기관	30개처	23개처	23개처	23개처	22개처
선발인원	41명	34명	25명	25명	28명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KF 글로벌챌린저 사업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통한 선발은 비수도권 인재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해 해외 연수 실무기회가 보다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대상자 선발 단계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점제도³⁾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 10월 마련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 개선안(2022년 선발자부터 적용)’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자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⁴⁾을 담고 있다.

3)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서류평가 시 가산점 5점(만점 100점)이 부여된다.

4)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차등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체재비의 경우 기회균등대상자에 한하여 정액 체재비 20%를 증액 지급하고, 항공료는 실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 중 대상자 범위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소득 기준인 기회균등대상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의 사회다양성대상자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개선 이후 사회다양성대상자에 아동복지시설출신자, 장애인 부모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대원·교원·공무원의 자녀, 비수도권 인재 등이 추가되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범위 개선 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회 균등 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법정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사회 다양성대 상자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	(신규) 아동복지시설출신자
		(신규) 장애인 부모의 자녀
		(신규) 순직 군경·소방대원· 교원·공무원의 자녀
		(신규) 비수도권 인재

자료: 외교부

한편, 최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명, 2021년 1명 수준으로 선발 비중이 낮았으나, 2022년에는 대상자 범위 확대에 의해 1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선발된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명 중 8명은 비수도권 인재로 선발되었다. 즉, 2022년 전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 중 새로 추가된 대상자인 비수도권 인재만 늘어났을 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기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수는 큰 변동이 없다.

[연도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선발인원	25	25	28
사회적 배려 대상자	2	1	10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	1	2
비수도권 인재 ¹⁾	0	0	8

주: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예정자를 뜻함

자료: 외교부

그런데, 비수도권 인재의 경우, 기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건인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자녀), 아동복지시설출신자 등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률적인 사회적 배려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타 요건에 비해 해외연수 기회가 적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2022년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된 10명 중 8명이 비수도권 인재로 집중되었는데, 필요한 계층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가점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통해 선발된 인원이 비수도권 인재로 집중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수도권 인재와 기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가점이 5점으로 동일하다는 것 역시, 상대적 역차별 문제의 우려가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인재와 관련한 공공기관 채용의 경우, 대부분 전체 인원수 대비 일정 비율 할당을 통한 지역인재 채용을 실시하고 있고, 채용 과정 내에서의 가점은 부여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교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은 KF 글로벌챌린저 사업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해 해외 연수 실무기회가 보다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¹⁾은 재외공관별 현지맞춤형 사업을 통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 및 신뢰 증진, 주요국과의 공공외교 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활용하여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기반 확대의 목적을 지니는 사업이다.

외교부는 「공공외교법」²⁾(2016.2.3. 제정)에 근거하여, 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 공공외교 협업시스템 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공공외교 역량강화	24,065	24,065	0	0	24,065	14,360	59.7	0	9,705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19,653	19,653	0	△44	19,609	11,639	59.4	0	7,970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2,922	2,922	0	44	2,966	1,832	61.8	0	1,134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1,490	1,490	0	0	1,490	889	59.7	0	60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은 ①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사업, ②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사업, ③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사업을 주요 내역사업으로 한다.

외교부는 동 사업의 2021년 예산현액 240억 6,500만원 중 59.7%인 143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7억 500만원을 불용하였다.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731-403

2) 「공공외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2-1. 공공외교 협업시스템 강화 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공공외교 협업시스템 강화 사업¹⁾은 주한 외국인 교수 등 자문단에 공공외교 관련 자문을 구하고, 거점공관 중심으로 권역 내 사업 및 아이디어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외교부는 동 사업의 2021년 예산현액 8억원 중 35.9%인 2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1,300만 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공공외교 협업시스템 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공공외교 역량강화	24,065	24,065	0	0	24,065	14,360	59.7	0	9,705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2,922	2,922	0	44	2,966	1,832	61.8	0	1,134
공공외교 협업시스템 강화	800	800	0	0	800	287	35.9	0	513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공공외교 협업시스템 강화 사업은 자문단 운영 사업과 거점공관 운영 및 협업 시스템 강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거점공관 운영 및 협업 시스템 강화 사업은 2021년 예산액 7억 5,000만원 중 32.5%인 2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21회계연도 공공외교 협업시스템 강화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국가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자문단 운영	50	43	86.0
거점공관 운영 및 협업 시스템 강화	750	244	32.5
계	800	287	35.9

자료: 외교부

1) 코드: 일반회계 1731-403의 내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거점공관 운영 및 협업 시스템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예산편성 당시 지역별 사업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

외교부는 2021년 거점공관 운영 협업 시스템 강화 사업의 예산편성 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을 거점공관 대상지역으로 계획하였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일본, 러시아 지역의 담당관 회의 취소 및 화상회의 대체 등에 따라 동 사업의 집행액은 2억 4,400만원으로 예산액 7억 5,000만원 대비 32.5%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거점공관 운영 및 협업 시스템 강화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19	60	25	41.7
2020	695	152	21.9
2021	750	244	32.5

주: 2020년도에 예산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9년도에 거점공관 지역이 1개(미국) 지역이었으나 2020년도에 4개 지역으로(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외교부는 거점 지역내 여타 공관과 공유 및 교류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대면 교류가 불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 집행이 부진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계획과 집행 간 차이는 인정되나, 호놀룰루 및 이르쿠츠크 총영사관을 제외하고는 전년도와 대상 지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지 사정 청취 등을 통해 지역별 사업여건은 사업계획 시 예산액 계상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점공관 운영 및 협업 시스템 강화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국가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 부진 사유
미국(대)	40	83	-
호놀룰루(총) ¹⁾	0	57	-
중국(대) ²⁾	116	5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동 및 집합 활동이 전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여 각종 공공외교 활동을 계획하였으나, 델타 변이 확산 및 당국의 엄격한 방역 정책 등으로 계획변경 불가피
일본(대)	17	8.3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 다대하여 정책공공외교 활동 수행 불가
러시아(대)	41	21	코로나 19 상황으로 대면 세미나를 화상 세미나로 변경하여 개최하였는바, 임차료, 사업추진비 등 반납 및 공공외교 담당관 회의 취소
상트(총)	15	15	-
블라디(총)	23	55	-
이르쿠츠크(총)	14	0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현지 기관 및 지방정부 우려 등으로 당초 계획한 '남북러 협력 세미나' 취소
하반기 집행을 위한 배정 유보	484	0	하반기 지역별 담당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11월 오미크론 발생으로 방역 당국 지침(해외입국자 10일 격리 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회의 취소
계	750	244	

주: 1) 당초 예산액이 없는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집행하기 위해 유보하였던 4억 8,400만원 중 일부를 호놀룰루에서 개최 예정인 '한미동맹 세미나'에 추가 배정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임

2) 당초 예산액이 많은 이유는,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 외연확대' 사업에서 미·중·일·러 4개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예산 편성 비중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중국에 거점 사업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배정하였기 때문임

자료: 외교부

일례로 중국 대사관은 당초 1억 1,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당국 방역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 규모가 5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러시아 대사관은 코로나19 상황 하에 대면 세미나를 화상 세미나로 변경·개최하여 임차료, 사업추진비 등을 반납하고 기타 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다. 이르쿠츠크는 총영사관은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현지 기관 및 지방정부의 우려 등으로 사업이 전면 미시행되었다.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예산편성 시 대상국가의 사업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점공관 운영 및 협업 시스템 강화 사업은 당초 목적이 유사 권역 내 공관들의 협업을 위한 공유형 사업 추진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단위로 영상 제작, 현지어 번역 등에 국한되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점공관 운영 및 협업 시스템 강화 사업은 2019년 북미지역 공공외교 협업시스템 사업으로 최초 편성되었으며, 2020년부터 미·중·일·러 4개국으로 거점공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은 거점공관을 선정하여 사업구상 및 실행단계에서 주변공관들과 협업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여타 정책공공외교 사업과는 달리 관할지역 이외의 영역으로 저변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동 사업이 최초 추진된 2019년에는 공공외교 관련 동향 논의, 담당관 회의 등 권역 내 공관 간 협업을 통한 공유형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추진실적이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국한되고 있어 사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 사업의 2021년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미국대사관 및 호놀룰루총영사관을 제외한 여타 거점공관에서 영상 제작, 현지어 번역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공관 간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거점공관 운영 및 협업 시스템 강화 사업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거점공관명	추진실적	집행액
2021	미국(대) 호놀룰루(총)	- 영화를 통한 미주한인사회 조망 세미나 시리즈 -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한미동맹의 역할 세미나 개최	140
	중국(대)	- 한중 우호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공공기관·기업인 간담회	5
	일본(대)	- 본부 제작 디지털 공공외교콘텐츠 현지어 번역 및 공유	8.3
	러시아(대) 상트(총) 블라디(총)	- 한반도 세미나 개최, 러시아지역 공공외교담당관 회의, 디지털콘텐츠 제작 - 유튜브 구독자 증대사업(김치5종 영상 제작 및 홍보) -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러 극동지역 협력방안 세미나 개최	91
	러시아(대) 상트(총) 블라디보스톡(총)	- 정책 홍보 동영상 번역 - 정책 홍보 동영상 노어판 제작 - 정책공공외교 대상 DB 구축, 한-러 관계 PPT 제작	28
2020	미국(대)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분석 연구 세미나 개최 등	65
	일본(대)	- 본부 제작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번역 및 공유, 대일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및 공유	15
	중국(대)	- 중국지역 공공외교담당관 회의 - 대사관-총영사관 간 공공외교 협업체계 구축·운용 - 정책공공외교 데이터베이스 구축 준비 - 우리 기업의 중국 내 CSR 우수사례 다큐영상 제작	43
	미국 지역	- 미국 지역 정책공공외교 담당관 회의 - 정책공공외교 콘텐츠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협의 - 대미정책공공외교 강화 방안(의회 및 씽크탱크 동향 등) 협의 - 미중 전략경쟁 및 한중관계 동향 관련 협의 등	25

자료: 외교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면 교류가 불가한 점은 인정되나, 지난 2020년 사업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형 사업의 추진방안은 사업계획 당시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따라서 외교부는 동 사업목적인 유사 권역 내 공관들의 협업을 위한 공유형 사업 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2.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사업추진 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사업¹⁾은 세계 유수의 문화 전문가, 기업대표들이 참석하는 포럼 추진을 통해 글로벌 동향 및 관련 정책을 공유·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외교부는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사업의 2021년 예산현액 6억 3,800만원 중 78.1%인 4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공공외교 역량강화	24,065	24,065	0	0	24,065	14,360	59.7	0	9,705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19,653	19,653	0	△44	19,609	11,639	59.4	0	7,970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600	600	0	38	638	498	78.1	0	14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사업은 개별 포럼으로서의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추진 방식 재검토 및 콘텐츠 재설계 등을 통해 공공외교 사업으로서의 효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이하 “미래대화”) 사업의 2021년도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외 스포츠 현장 전문가²⁾를 초청하여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이후 tvN ‘미래수업’³⁾ 특집편으로 방영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하는 방

1) 코드: 일반회계 1731-403의 내내역사업

2) 사마란치 IOC 위원, 파키아오, 김라경 선수 등

3) 세계 석학들을 초청하여 국내외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토크쇼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미래대화 포럼은

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동 사업이 최초 추진된 2020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온라인 포럼 개최, ‘미래수업’ 방영, 영상 편집본 게재 등을 추진하였다.

외교부는 ‘미래수업’ 방영본을 공공외교 유튜브 채널(이하 ‘KOREAZ’)에 10여 개의 파편화된 영상으로 편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내용은 tvN 홈페이지 및 TVing(OTT 플랫폼)을 통해 시청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사업 집행내역 및 주요 일정]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 내용	방영·업로드 일자	집행액
2021	온라인 포럼 생중계	2021.11.4.	498
	tvN ‘미래수업’ 프로그램 방영(2회)	2021.11.23., 2021.11.30.	
	유튜브(KOREAZ) 영상 편집본 게재	2022.4.	
2020	온라인 포럼 생중계	2020.11.16.	497
	tvN ‘미래수업’ 프로그램 방영(2회)	2020.11.19., 2020.11.26.	
	유튜브(KOREAZ) 영상 편집본 게재	2021.1.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공공외교의 목적인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 증진’을 고려할 때, 현재 미래대화 사업은 사업추진 방식 및 콘텐츠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21년 방영된 미래대화 프로그램의 실적을 살펴보면, 생중계 시청자 수는 총 6,104명, 온라인에 게재된 영상 편집본의 조회수는 30,083회로 나타나는데, 해당 시청자 및 조회수 중 어느 정도의 외국인이 동 프로그램을 시청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KOREAZ 내 여타 콘텐츠의 추진실적을 보면, 일부 단일 콘텐츠가 전체 미래대화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를 2배 이상 상회하는 등 콘텐츠 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⁴⁾

외교부 특집편(26회, 27회)으로 방영되었다.

4) 일례로, 연사의 강연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인 ‘KOREAZ FOCUS’의 ‘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 영상의 조회수는 약 6만회로 확인된다(2022년 5월말 기준).

[2021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사업 추진실적]

내용	추진실적
온라인 포럼 생중계	6,104명 시청 (tvN 3,898명, tVing 1,806명, 외교부 400명)
영상 편집본 온라인 게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30,083회 ¹⁾

주: 1) 2022년 5월 말 기준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21년 미래대화 콘텐츠는 포럼 생중계 약 3주 후 tvN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었으나, 영문 자막을 추가한 영상은 외교부 공식 채널(KOREAZ)에 2022년 4월 이후 게재되어, 공개·확산 시기가 지연되고 홍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동 사업은 일부 해외 연사들을 초청하여 국내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현재와 같이 포럼 자체의 인지도가 낮고, 홍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별 포럼으로서의 공공외교 목적 달성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다. 일례로,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내 여타 사업⁵⁾ 대부분은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해외공관에서 실시됨에 따라, 현지에서의 직접 홍보가 가능하고, 각 주제에 대해 흥미를 가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보다 밀도있는 경험 및 이해를 통한 외교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미래대화 사업의 전신인 2019년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의 경우, 당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써 외교적 함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행사였으나, 동 사업은 신규 단독포럼으로서 주목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의 경우 2020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동 포럼이 문화교류 사업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으로, 외교부 소관인 미래대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순 문화교류 외에 적극적인 공공외교 형태의 사업으로서 그 외교적 성과가 입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미래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미래대화 포럼 브랜딩 전략, 행사 관심도 제고 방안 등을 강구하여 공공외교 사업으로서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스포츠 문화외교 사업, K-Pop 월드 페스티벌 사업, 한국주간행사 사업, 퀴즈 온 코리아 사업 등

가. 현 황

데이터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¹⁾은 효과적·체계적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연구를 통한 핵심 타겟층 및 콘텐츠 제작 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외교부는 데이터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의 2021년 예산현액 2억원 중 47.5%인 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데이터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6,361	6,361	0	0	6,361	4,606	72.4	91	1,664
데이터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200	200	0	0	200	95	47.5	0	10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예산편성 당시 분석 규모를 과다하게 판단하여 연구용역비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향후 추진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데이터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원이며, 이는 빅데이터 연구용역 4건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반영한 금액이다.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 1건당 5,000만원에 4건을 곱하여 2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송은혜 예산분석관(a79368@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731-405의 내역사업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예산액	산출내역	집행내역
200백만원	연구용역 4건 × 50백만원	1건 × 95백만원

자료: 외교부

그런데 집행실적을 보면 연구용역 4건 중 3건이 미집행되어 집행액은 9,500만원에 불과하다. 예산편성 시 수량 및 단가(4건×50백만원)가 실제 집행 시 조정(1건×95백만원²⁾된 사유에 대해 외교부는, 빅데이터 연구대상을 세분화하여 연구용역 4건³⁾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감안하여 1건⁴⁾으로 연구용역을 통합 추진하였다는 입장이다.

사업집행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사유에 대해 외교부는, 당초 외교부 SNS 채널(KOREAZ), 국내외 한국 관련 주요 SNS 채널, 공공외교 사례 등을 분석할 계획이었으나, 동 사업이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면서 KOREAZ 플랫폼 또한 본격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채널에 축적된 콘텐츠 및 구독자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아 연구용역의 규모를 축소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021회계연도 데이터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부진 사유
일반연구비	200	95	0	105	디지털 공공외교 관련 축적된 데이터 부족 등으로 연구용역 규모 축소

자료: 외교부

- 2) 인건비 70백만원(책임연구원 1명, 공동연구원 5명, 연구보조원 1명, 보조원 1명, 데이터 분석가 4명, 총 12명 투입), 경비 11.4백만원, 일반관리비 5백만원, 부가세 8.6백만원 등을 합하여 산출하였다.
- 3) 예산편성 당시 연구용역 추진계획은 ① 글로벌 공공외교 SNS 플랫폼 KOREAZ 채널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과적 채널 운영방안 및 콘텐츠 제작 방향 도출, ② 분야별 한국 관련 키워드 분석을 통해 주요 인플루언서 파악 및 주요 타겟 인물과 주변인물의 관계도 분석으로 우리 정책 발신 대상 도출, ③ 주요 타겟 국가의 對한국 또는 우리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여론과 인식조사를 위한 해외 주요 SNS 및 싱크탱크 분석, ④ 관심도가 높은 외교사안 및 주요 외교 이슈 관련 국민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등이다.
- 4)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효과성 제고 방안 도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외교부 SNS채널(KOREAZ) 구독자, 한국 관련 주요 SNS 인플루언서별 사용 키워드 등을 분석하여 공공외교 SNS 콘텐츠 제작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주요 연구대상인 KOREAZ 채널 개설일자를 보면, 페이스북 계정(Korea Public Diplomacy)은 2012년 2월, 유튜브 채널(KOREAZ) 및 트위터 계정(@mofa_koreaz)은 2013년 10월, 인스타그램 계정(@mofa_koreaz)은 2018년 4월에 개설되어, 채널 내 콘텐츠 및 구독자 등 분석 자료의 규모는 사업 계획 당시에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동 사업은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콘텐츠를 발굴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외교 수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외교부는 사업추진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8억 2,000만원이며, 23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2.1%인 21억 7,2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8,6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820	2,820	2,820	2,358	2,172	186	0	92.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2021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299억 8,100만원이며, 이 중 89.2%인 2,942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7,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7억 5,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29,355	329,355	329,981	294,248	1,978	33,755	89.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나.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현액은 1조 6,756억 100만원이며, 5,221억 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4.4%인 4,929억 3,300만원을 수납하고, 292억 4,8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남북협력기금	1,675,601	1,675,601	1,675,601	522,181	492,933	29,248	0	94.4

자료: 통일부

2021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현액은 1조 6,766억 9,900만원이며, 이 중 29.4%인 4,929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132억 3,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조 2,421억 1,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남북협력기금	1,675,601	1,675,601	1,676,699	492,933	13,231	1,242,111	29.4

자료: 통일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1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409억 4,600만원 (89.7%)이 감소한 162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80억 5,000만원 (52.7%)이 감소하였다.

[2021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164	2,820	2,820	2,172	△648	1,008
기금	33,087	154,327	154,327	14,029	△140,298	△19,058
합계	34,251	157,147	157,147	16,201	△140,946	△18,05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2021회계연도 통일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2,471억 6,900만원 (85.6%)이 감소한 2,277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83억 2,000만원(3.5%)이 감소하였다.

[2021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89,526	229,355	229,355	194,248	△35,107	4,722
기금	46,559	1,245,579	1,245,579	33,517	△1,212,062	△13,042
합계	236,085	1,474,934	1,474,934	227,765	△1,247,169	△8,32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라.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통일부의 자산은 3조 5,188억 1,200만원, 부채는 2조 3,054억 7,5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 2,133억 3,7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627억 700만원, 투자자산 2조 6,985억 5,100만원, 일반유형자산 4,599억 6,3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392억 8,500만원(4.1%) 증가하였다. 이는 남북협력기금 장기투자증권이 전기 대비 860억 6,8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111억 9,500백만원, 장기차입부채 2조 1,940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5억 900만원(0.1%) 감소하였다. 이는 유동부채 1,338억 6,900만원 감소, 장기차입부채 1,315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통일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3,518,812	3,379,527	139,285	4.1
Ⅰ. 유동자산	262,707	401,717	△139,010	△34.6
Ⅱ. 투자자산	2,698,551	2,447,065	251,486	10.3
Ⅲ. 일반유형자산	459,963	451,080	8,883	2.0
Ⅳ. 무형자산	6,666	6,754	△88	△1.3
Ⅴ. 기타비유동자산	90,926	72,910	18,016	24.7
부 채	2,305,475	2,307,984	△2,509	△0.1
Ⅰ. 유동부채	111,195	245,064	△133,869	△54.6
Ⅱ. 장기차입부채	2,194,000	2,062,500	131,500	6.4
Ⅲ. 기타비유동부채	280	421	△141	△33.5
순 자 산	1,213,337	1,071,543	141,794	13.2
Ⅰ. 기본순자산	246,751	246,751	0	0.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863,389	746,877	116,512	15.6
Ⅲ. 순자산 조정	103,197	77,915	25,282	32.4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1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828억 3,0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856억 7,500만원, 관리운영비 704억 500만원, 비배분비용 459억 9,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101억 8,100만원, 비배분수익 89억 6,2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는 전기 대비 1,310억 2,100만원(41.7%) 감소한 1,829억 3,0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총원가가 전기 대비 1,485억원(44.4%)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8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805억 800만원), 통일교육 프로그램(249억 7,700만원)과 통일정책 프로그램(179억 5,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46억 3,200만원과 경비 257억 7,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443억 500만원과 평가손실 16억 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통일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75,494	287,504	△212,010	△73.7
가. 프로그램 총원가	185,675	334,175	△148,500	△44.4
나. 프로그램 수익	110,181	46,671	63,510	136.1
II. 관리운영비	70,405	69,879	526	0.8
III. 비배분비용	45,993	60,119	△14,126	△23.5
IV. 비배분수익	8,962	103,550	△94,588	△91.3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82,930	313,951	△131,021	△41.7
VI. 비교환수익 등	100	11	89	809.1
VII. 재정운영결과(V-VI)	182,830	313,940	△131,110	△41.8

자료: 통일부

통일부의 2021년도 기초순자산은 1조 715억 4,3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조 2,133억 3,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417억 9,400만원(13.2%)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1,828억 3,0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2,993억 4,2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3,028억 5,1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35억 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260억 3,500만원, 투자증권평가손익 △7억 5,2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통일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071,543	1,039,550	31,993	3.1
II. 재정운영결과	182,830	313,940	△131,110	△41.8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99,342	348,286	△48,944	△14.1
IV. 조정항목	25,283	△2,354	27,637	△1,174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213,337	1,071,543	141,794	13.2

자료: 통일부

마. 재정 구조

2021회계연도 통일부의 회계 · 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1,000억원이 전출되었다.

[2021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회계 · 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통일부

통일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남북회담 추진 사업, ② 통일 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③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남북회담 추진 사업은 분야별 회담 추진 등에서 4.2억원이 감액(11.8억원 → 7.6억원)되었고, 통일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평화의 길 통일 걷기 관련 2.5억원이 감액(49.7억원 → 47.2억원)되었다. 그리고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은 남북간 관련 교류가 미진한 점 등이 반영되어 인적왕래 지원 및 교육학술협력 분야에서 총 22억원이 감액(213억원 → 191억원)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사업, ② DMZ평화적이용 사업 등이 있다.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사업은 북한정보 AI·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104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로 증액되었고, DMZ평화적이용 사업은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평화의 길 개보수 등을 위하여 총 45억원이 증액(139억원 → 184억원)되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는 민생협력지원 사업 등이 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사업의 세부내용과 민간단체명을 사업 추진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통일부는 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 ②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추진, ③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④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⑤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2021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사업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특수성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부진하였으나 향후 사업 재개를 대비하여 집행 관리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에서 예산편성 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있고,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에 따라 소요 예산액이 달라지는 사업이 있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예산편성 정확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6.25전쟁납북자 기념관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관서운영경비 범위(최고금액 500만원)를 벗어난 일반수용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계획변경으로 강원권 통일+센터 신축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보조금을 교부하여 전액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통일부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남북대화 5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통일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섯째, 평화경제 토크콘서트 행사 개최를 위해 예산편성보다 증액하여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향후 행사 추진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남북협력기금 사업

가. 현 황

2021년 남북협력기금¹⁾의 프로그램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현액 1조 6,766억 9,900만원 중 4,929억 3,300만원을 집행하여 계획 대비 29.4%를 집행하였다. 통일부는 집행액 중 57.4%에 해당하는 2,830억 7,400만원을 공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등 기금간거래에 집행하였고, 35.8%인 1,763억 4,200만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19 등의 여건으로 통일정책,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 문제해결,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등 4개 사업비 지출은 기금 지출액의 6.2%인 311억 8,1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비중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통일정책	3,750	3,750	81	3,831	3,121	81.5	0.6	0	710
남북사회문화교류	19,097	19,097	0	19,097	3,426	17.9	0.7	0	15,671
인도적 문제해결	653,019	653,019	626	653,645	3,989	0.6	0.8	9,270	640,387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567,204	567,204	390	567,594	20,645	3.6	4.2	3,961	542,988
남북협력기금운영비	2,509	2,509	0	2,509	2,338	93.2	0.5	0	171
기금간거래	325,256	325,256	0	325,256	283,074	87.0	57.4	0	42,182
여유자금운용	104,766	104,766	0	104,766	176,342	168.3	35.8	0	0
계	1,675,601	1,675,601	1,098	1,676,699	492,933	29.4	100.0	13,231	1,242,109

주: 1. 수정은 추경 기준

2. 비중은 전체 집행액 대비 비중

자료: 통일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1990년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어 1991년부터 기금 운용 개시

1-1. 최근 10년간(2012~2021년) 기금 결산

최근 10년간(2012~2021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은 2013년, 2016년, 2018년을 제외하면 2.5~7.9% 수준이다. 2013년, 2016년 및 2018년에 기금 집행률은 각각 26.9%, 42.2%, 22.0%로 다른 연도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기업 피해지원금과 2016년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경험기업 보험금 및 피해지원금이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2021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은 2.5%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는 남북관계 경색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2012~2021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획액	10,060	10,979	11,132	12,348	12,550	9,588	9,593	11,036	12,012	12,431
집행액	694	2,958	876	554	5,295	684	2,117	750	442	312
집행률	6.9	26.9	7.9	4.5	42.2	7.1	22.0	6.8	3.7	2.5

주: 계획액은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1-2. 세부사업별 결산

가. 현 황

남북협력기금 지출 사업¹⁾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등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부는 동 기금의 2021년도 계획현액 1조 2,441억 6,800만원 중 311억 7,900만원을 집행(2.5%)하고, 132억 3,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조 1,997억 5,800만원은 불용하였다. 기금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81.5%), DMZ평화적이용 사업(42.6%), 개성공단기반조성 사업(38.4%),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17.9%), 개성공단 운영 대출 사업(15.8%),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10.8%) 등 8개 사업에서 집행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의 호응이나 남북간 협의가 필요한 구호지원, 경제교류협력보험, 경험기반(융자),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등 4개 사업에서는 집행액이 없었다.

1)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5.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填)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2021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한반도통일미래센터	3,750	3,750	81	3,831	3,121	81.5	0	710
사회문화교류지원	19,097	19,097	0	19,097	3,426	17.9	0	15,671
이산가족교류지원	21,030	21,030	0	21,030	2,280	10.8	0	18,750
구조지원	118,897	118,897	0	118,897	0	0.0	0	118,897
민생협력지원	513,092	513,092	626	513,718	1,708	0.3	9,270	502,740
경제교류협력보험	4,275	4,275	0	4,275	0	0.0	0	4,275
경협기반(무상)	247,167	247,167	98	247,265	4,270	1.7	1,325	241,670
경협기반(유자)	252,025	252,025	0	252,025	0	0.0	0	252,025
경제교류협력대출(유자)	14,827	14,827	0	14,827	0	0.0	0	14,827
DMZ평화적이용	18,411	18,411	292	18,703	7,969	42.6	2,636	8,098
개성공단 운영 대출	14,585	14,585	0	14,585	2,302	15.8	0	12,283
개성공단기반조성	15,914	15,914	0	15,914	6,104	38.4	0	9,810
합계	1,243,070	1,243,070	1,098	1,244,168	31,179	2.5	13,231	1,199,758

주: 2021년 수정은 제2회 추정 기준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2021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사업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특수성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부진하였으나 향후 사업 재개를 대비하여 집행 관리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사회문화교류지원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²⁾은 거래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의 추진 등 교육·학술협력사업을 지원하고, 남북 간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경비와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통일부는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의 2021년도 계획현액 190억 9,700만원 중 34억 2,600만원(17.9%)을 집행하고, 156억 7,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 코드: 남북협력기금 2140-401

[2021회계연도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사회문화교류지원	19,097	19,097	0	19,097	3,426	17.9	0	15,671

주: 2021년 수정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교육·학술협력사업 지원, 인적왕래·기타 협력사업 지원, 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 대회 공동진출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학술협력사업 지원 사업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 보조금(국고보조율 10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현액 33억 4,500만원 중 25억 700만원이 교부되었다. 교부액 중 24억 2,500만원이 온라인 홍보관 운영, 스마트폰앱(남녘말 북녘말) 운영,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 학술포럼 개최 등에 집행되어 실행률은 72.5%이다.

[2021회계연도 교육·학술협력사업 지원 사업 집행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집행계획		집행실적	
	내용	계획현액	내용	집행액
교육·학술협력사업 지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	3,345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편찬사업회 인건비, 임차료, 온라인 홍보관 등 운영, 학술포럼)	2,507 (2,425)

주: 괄호()안은 실행액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2022년 4월에 종료될 계획이었으나 2016년 이후 남북공동회의를 개최하지 못해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³⁾ 편찬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의 종이사전 편찬 완료 후에 증보·개정사업 및 전자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추진

3) 통일부는 2021년말 기준 사업 진척률이 81.1%로 전년과 동일한 이유에 대해 표기된 진척률은 종이사전 진척률로, 사실상 우리측 단독으로 사전발간을 위한 준비작업은 90% 이상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한다.

할 예정으로 2021년 12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개정되어 편찬사업회의 존속기한이 6년 연장되었고,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2028년 4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북한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 진행이 어려워 보이므로 통일부는 사업추진 방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 진척률]

(단위: 회, %)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공동회의	4	4	4	0	0	0	0	2	3	0	0	0	0	0	0
진척률	25.0	39.0	53.0	56.7	63.0	65.0	66.2	69.2	73.3	75.1	78.0	78.5	78.7	81.1	81.1

자료: 통일부

인적왕래·기타 협력사업 지원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한 왕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국고보조율 50~100%) 집행이 거의 없었고, 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 대회 공동진출 사업은 2021년으로 연기된 일본 하계올림픽 공동진출 계획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없어 계획현액 전액이 불용되었다.

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 대회 공동진출 사업은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계획액이 15억원 수준이므로 최소한의 계획액을 편성한 후 북한과의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향후 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 대회 공동진출 사업과 같이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한 소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최소한의 계획액만 편성한 이후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1회계연도 인적왕래 · 기타 협력사업 지원 사업 등 집행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집행계획		집행실적	
	내용	계획현액	내용	집행액
인적왕래 · 기타 협력사업 지원	문화유산 보존 및 발굴, 체육, 종교, 문화예술, 지자체 등 기타	14,204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 디지털 복원 및 활용, 디지털 기록관 운영	919
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 대회 공동진출	합동훈련 및 친선경기, 유니폼 및 운동용품, 올림픽 참가, 공동응원	1,548	-	0

자료: 통일부

(2) 이산가족교류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⁴⁾은 이산의 고통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통일부는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의 2021년도 계획현액 210억 3,000만원 중 22억 8,000만원(10.8%)을 집행하고, 187억 5,0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은 전액 대한적십자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율은 100%이다.

[2021회계연도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이산가족교류지원	21,030	21,030	0	21,030	2,280	10.8	0	18,750

주: 2021년 수정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이산가족교류활성화 기반조성,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내역사업별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이산가족상봉행사 지원 사업은 대면·화상 상봉, 고향방문 등을 계획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국내에 화상상봉장⁵⁾ 7개를 증설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계획현액 141억 6,600만원

4) 코드: 남북협력기금 2140-403

중 6억 8,400만원이 집행(4.8%)되었다.

[2021회계연도 이산가족상봉행사 지원 사업 집행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집행계획		집행실적	
	내용	계획현액	내용	집행액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대면상봉, 고향방문, 화상상봉	14,166	화상상봉장 증설(7개)	684 (684)

주: 괄호()안은 실행액임

자료: 통일부

남북은 2005년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적십자회담·적십자실무접촉을 통해 2005~2007년 총 7회에 걸쳐 화상상봉(557가족, 3,748명)을 진행하였다. 이후 화상상봉은 진행되지 않았고,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우선 해결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 대비 화상상봉 인프라 보강을 위하여 계획변경으로 화상상봉장을 추가 설치하였는데 고령화되고 있는 이산가족 생존자의 이동편의성이 개선된 것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산가족 생존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 이하	계
인원수	12,323	17,825	9,196	4,038	2,833	46,215
비율	26.7	38.6	19.9	8.7	6.1	100.0

주: 2021년말 기준

자료: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이산가족교류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이산가족 실태조사, 이산가족 대상 영상편지 제작(1,004편), 이산가족 유전자검사(1,020명) 등으로 계획액 25억 100만원 중 15억 9,600만원이 집행되었다. 그리고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계획현액 43억 6,3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다.

5) 국내 화상상봉장 현황: (기존) 서울(5개소), 인천, 수원, 춘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증설) 의정부, 원주, 강릉, 청주, 홍성, 안동, 전주

[2021회계연도 이산가족교류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등 집행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집행계획		집행실적	
	내용	계획현액	내용	집행액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기반조성	민간 교류경비 지원, 민간 교류주선단체 지원, 대한적십자사 업무위탁비용, 서신제작교환, 유전자 검사, 이산가족 실태조사	2,501	제3차 이산가족 실태조사, 이산가족 대상 영상편지 제작(1,004편), 이산가족 유전자검사(1,020명), 이산가족 민간교류 주선단체 지원,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관리	1,596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4,363	-	-

자료: 통일부

영상편지 제작은 향후 이산가족 서신교환을 대비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이산 1세대의 기록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고, 총 3개의 영상파일을 개인보관용,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전달용, 통일부 기록보존용으로 제작하는 사업이다. 2008년 남북간 합의에 따라 기 상봉했던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남북 각 20편의 영상편지 제작 후 시범 교환한 사례가 있고, 당사자가 공개·활용에 동의한 영상편지는 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홈페이지 등에 등록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통일부는 사업 시작 이후 2021년까지 2만 4,077건의 영상편지를 제작했다.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는 이산가족 유전정보 DB에 보관된 유전정보 매칭·분석을 통해 사후 이산가족들의 가족관계 확인 및 법적 분쟁 등에 대비⁶⁾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남측 가족의 검체를 북측에 전달하거나 북측 가족의 검체를 전달 받은 사례는 없다. 통일부는 2014년 사업 시작 이후 2021년까지 65,397건의 검체를 검사했다.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중 생존 인원⁷⁾이 2005년 9만 8,268명에서 2021년 4만 6,215명으로 매년 3,000명 이상 감소하고 있으므로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 시 정

6) 북측 이산가족에게 유산을 남기는 경우 등

7)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한 이산가족찾기 해당연도(2005~2021) 신청자 중 생존 인원 현황

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및 유전자 검사 사업 시작 이후 실시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건수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건수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중 생존 인원
2005	4,013	0	98,268
2007	20	0	93,487
2012	815	0	74,836
2013	2,007	0	71,480
2014	1,202	3,261	68,264
2015	10,003	10,274	65,674
2016	0	10,030	62,631
2017	1,500	1,178	59,037
2018	1,502	11,245	55,987
2019	1,010	17,390	52,730
2020	1,001	10,999	49,452
2021	1,004	1,020	46,215
계	24,077	65,397	0

자료: 통일부

(3) 민생협력지원

민생협력지원 사업⁸⁾은 북한 영유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통일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건의료·농축산·산림·환경 분야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통일부는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2021년도 계획현액 5,137억 1,800만원 중 17억 800만원(0.3%)을 집행하고, 92억 7,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027억 4,000만원은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북한영유아 등 지원 내역사업의 이월액이다.

[2021회계연도 민생협력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민생협력지원	513,092	513,092	626	513,718	1,708	0.3	9,270	502,740

주: 2021년 수정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북한영유아 등 지원, 보건의료협력,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인도 지원협력체계구축·지원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북측 국경봉쇄 및 남북관계 상황 등으로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

내역사업별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영유아 등 지원 사업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모자패키지 지원, 북한 취약계층 지원 등을 계획하였으나 계획현액 871억 3,400만원 중 7억 3,000만원만 집행(0.8%)되었고, 보건의료협력 사업은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 질병통제 체계 구축 지원 및 의료인력 교육 인력 지원 등을 계획하였으나 국제회의와 대북 감염병 관련 연구용역만 수행하여 계획현액 954억 5,900만원 중 1억 9,900만원이 집행(0.2%)되었다.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사업은 북한과 농축산(축산방역 등), 산림(산림복구 등), 환경(생활환경 개선) 협력과 비료지원(20만톤) 등을 계획하였으나 실적이 거의 없어 계획현액 3,301억 2,000만원 중 7,400만원(0.02%)이 집행되었고, 인도지원

8) 코드: 남북협력기금 2140-402

협력체계 구축·지원 사업은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보조사업과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위탁사업 중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만 수행되어 계획현액 10억 500만원 중 7억 500만원(70.1%)이 집행되었다.

[2021회계연도 민생협력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집행계획		집행실적	
	내용	계획현액	내용	집행액
북한영유아 등 지원	UN기구 등을 통한 모자패키지 지원,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87,134	농촌아동 영양지원, 분유지원	730
보건의료협력	보건의료 체계 지원, 질병통제 체계 구축 지원, 의료인력 교육 지원,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지원	95,459	보건의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회의, 대북 감염병 관련 연구 용역(3건)	199
농축산·산림·환경협력	농축산·산림·환경협력, 비료지원(20만톤)	330,120	농업협력프로젝트 사업	74
인도지원협력체계 구축·지원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보조),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위탁)	1,005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705

자료: 통일부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집행되지 않는 등 집행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민생협력지원 사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이 0.3~3.8% 수준으로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민생협력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17	231,634	231,634	0	231,634	1,322	0.6	10,240	220,072
2018	230,991	230,991	10,240	240,496	2,661	1.1	0	237,835
2019	451,296	451,296	0	451,296	17,108	3.8	7,779	426,409
2020	451,092	451,092	7,779	458,871	13,871	3.0	626	444,374
2021	513,092	513,092	626	513,718	1,708	0.3	9,270	502,740

주: 수정은 추정 기준

자료: 통일부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 2018·2020·2021회계연도 이월액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8회계연도 북한영유아 등 지원 내역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 102억 4,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2020회계연도에는 보건의료협력과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내역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 일부가 불용되었다. 또한 2021회계연도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내역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 6억 2,600만원 중 7,4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의 정확한 산정을 통하여 이월액의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8·2020·2021회계연도 민생협력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이월액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18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북한영유아 등 지원	87,134	86,399	10,240	96,639	0	0	96,639
보건의료협력	68,200	68,200	0	68,200	0	0	68,200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74,700	74,700	0	74,700	1,857	0	72,843
인도지원협력체계 구축·지원	957	957	0	957	804	0	153
내역사업명	2020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북한영유아 등 지원	87,134	87,134	5,233	92,367	11,851	0	80,516
보건의료협력	58,459	58,459	837	59,296	549	0	58,747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304,494	304,494	1,709	306,203	767	626	304,810
인도지원협력체계 구축·지원	1,005	1,005	0	1,005	705	0	300
내역사업명	2021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북한영유아 등 지원	87,134	87,134	0	87,134	730	9,270	77,134
보건의료협력	95,459	95,459	0	95,459	199	0	95,260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329,494	329,494	626	330,120	74	0	330,046
인도지원협력체계 구축·지원	1,005	1,005	0	1,005	705	0	300

주: 수정은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4) 경험기반(무상)

경험기반(무상) 사업⁹⁾은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등 남북 당국 간 합의 또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교류협력기반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일부는 경험기반(무상) 사업의 2021년도 계획현액 2,472억 6,500만원 중 42억 7,000만원(1.7%)을 집행하고, 13억 2,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416억 7,0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경험기반(무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경험기반(무상)	247,167	247,167	98	247,265	4,270	1.7	1,325	241,670

주: 2021년 수정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내역사업별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사업은 홍수예보시설 설치, 황폐지 산림복구, 한강하구 조사 등을 계획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 9,800만 원을 포함한 계획현액 181억 2,400만원 중 1억 2,700만원이 집행(0.7%)되었다.

[2021회계연도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사업 집행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집행계획		집행실적	
	내용	계획현액	내용	집행액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홍수예보시설 설치, 황폐지 산림복구, 한강하구 조사, 민간선박 항행 및 사업인프라 조성	18,124	한강하구 생태조사(전년도 이월액), 민간선박 시범 항행	127

자료: 통일부

9) 코드: 남북협력기금 3040-401

동 내역사업은 홍수예보시설 설치 등 사업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으로 구성된다. 홍수예보시설 설치 등 사업은 2000년 9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2004년 현지조사용 기자재 33개 품목을 북측에 제공하고 북측의 기상·수문자료를 일부 인수하였고, 2009년 9월 임진강 사고¹⁰⁾를 계기로 남북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고 홍수예보체계 구축에 관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021년 계획현액은 남북공동조사·사업설계, 홍수예보시설 설치, 황폐지 산림복구, 부대경비 등 64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미집행되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고 군사정전위원회가 항행규칙을 정하도록 한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 수역에 대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민간선박 운행 등 공동이용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남과 북은 2007년 10.4선언 합의를 통해 해당지역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2007년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한 바 있으며, 2018년 11~12월에 걸쳐 35일간 한강하구 공동수역 남북공동 수로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년 계획현액은 수로·지형 등 한강하구 조사에 95억 4,400만원, 민간선박 항행 및 사업인프라 조성에 21억원 등 116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우리 측 습지 생태조사 8,400만원, 민간선박 시범항행 4,300만원만 집행하여 실행행률은 1.1%이다.

10) 북한에서 댐을 방류,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수위가 늘어나면서 강가에서 야영을 하던 6명이 실종되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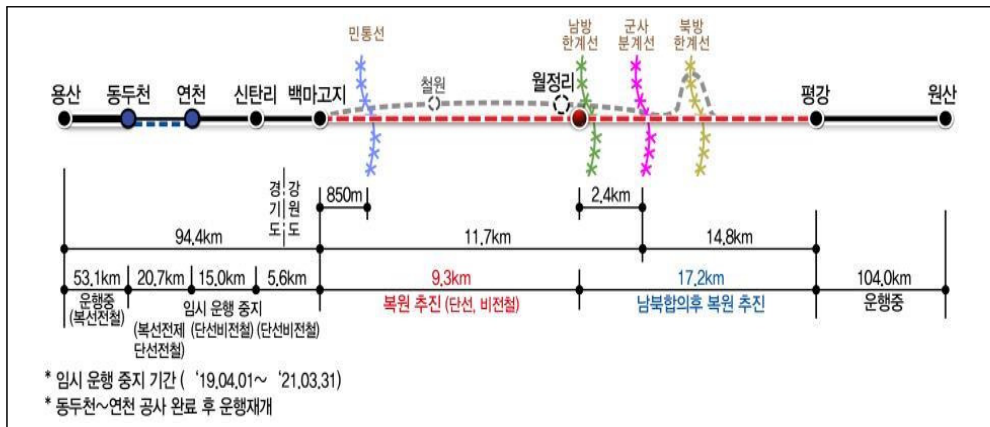
(말도로부터 만우리까지, 길이 70km, 면적 280km²)



자료: 통일부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은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 11.7km 구간에 단선 비전철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1단계(백마고지~남방한계선) 9.3km 구간을 우선 시행하고, 2단계(남방한계선~군사분계선) 2.4km 구간을 남북합의 후 시행]으로 계획현액 475억 1,400만원 중 일부 미보상 토지 보상 관련 비용으로 2억 5,600만원(0.5%)이 집행되었다.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자료: 통일부

[2021회계연도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집행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집행계획		집행실적	
	내용	계획현액	내용	집행액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 11.7km 구간 단선 비전철 철도 건설	47,514	일부 미보상 토지 보상 관련 비용(차수 계약 준공금, 출장비, 신문광고료, 간접보상비)	256

자료: 통일부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은 2015년 정부가 우선 남북철도 남측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그해 7월 기본·실시설계 및 건설공사 계약을 진행하면서 공사에 착수하였다.¹¹⁾ 2016년 1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2016년 5월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설계는 계속 진행되어 월정리역 건축 분야를 제외한 노반·궤도 분야 설계가 2016년 9월에 완료되었고, 시스템(전기, 신호, 통신) 분야 설계가 2017년 4월에 완료되었다. 토지 협의 매수는 2017년 12월에 완료되었고, 매수에 불응한 잔여지에 대해 2018년 4월 수용재결이 있었다. 이후 2018년 6월에 사업기간을 2020년까지 2년 연장하였고, 2019년 6월에 2022년까지, 2021년 6월에 2024년까지 사업기간을 각각 재연장하여 공사 재개 없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 사업의 연도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 공사가 중지되고 2017년에 감리비, 설계비 및 보상비 등이 집행된 이후 2018년부터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다.

11) 2015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연도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계	3,200	2,647	63,085	21,821	65,926	9,223	65,926	0	57,534	0	43,410	1,298	47,514	256
공사비	1,790	1,238	41,132	2,490	51,530	0	60,680	0	54,664	0	40,221	1,012	41,405	246
보상비	0	0	16,074	15,477	12,257	9,040	3,107	0	0	0	0	0	3,704	8
설계비	1,338	1,338	4,029	3,306	0	36	0	0	0	0	1,239	31	261	0
감리비	62	62	1,700	458	2,000	125	2,000	0	2,800	0	1,900	244	2,074	0
부대비	10	9	150	89	139	23	139	0	70	0	50	11	70	2

자료: 통일부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과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은 사업시작 이후 남북관계 특수성 등으로 인해 진행이 부진하였으나 향후 사업 재개를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사업은 남북한 간 상시적 연락 및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교류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단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현액 3억 1,100만원 중 1억 4,800만원(47.6%)이 집행되었다.

[2021회계연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사업 집행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집행계획		집행실적	
	내용	계획현액	내용	집행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운영비 및 사업추진 소요 비용	311	일반수용비(43), 업무추진비(21), 정책연구비(48), 자산취득비(20)	148

자료: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정상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하여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내에 정식 개소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공동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서울 근무로 전환하였는데 2020년 6월 16일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였다.

통일부는 개성 현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공동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현재 기관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력 13명으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등 남북연락업무 정상화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통신연락선의 복원, 남북연락·협의기구의 발전적 재개 준비와 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 7월 27일 남북간 통신연락이 재개된 이후부터는 통신연락선 운영의 정상화 및 기술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조직연혁 및 정·현원]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조직연혁

- 2018. 4. 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
- 2018. 7. 2.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숙소 등 관련 개보수 공사 착수
- 2018. 9. 1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개최 및 정식 개소·운영
- 2018. 9. 14.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 직제 신설
- 2018. 9. 1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입주 및 남북 공동업무 개시
- 2018. 9. 30.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 완공
- 2020. 1. 30. 코로나19 상황 하 공동업무 잠정 중단 및 서울근무 전환
- 2020. 6. 16.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 2021. 7. 27. 남북통신선 복원
- 2021. 8. 10.~10.3. 북한의 통신 무응답
- 2021. 10. 4. 남북통신선 재복원

□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고공단	3급	4급	4·5급	5급	6·7급	8·9급	계
정원	1	3	6	1	7	8	4	30
현원	0	3	2	1	3	4	0	13

자료: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기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0회계연도에는 사무소 업무가 중단되었으나 계획액에 큰 변동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현액 63억 7,400만원 중 불용액이 49억 4,500만원(77.6%) 발생하였고, 2021회계연도에는 계획액이 2020년 대비 95.1%(60억 9,500만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나 47.6%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북한 코로나19상황 및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업무 정상화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조직 및 예산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향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업무 정상화를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남북간 연락·협의기구의 발전적 재개에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내역사업 연도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18(신규)	0	11,740	0	11,740	10,304	87.8	810	626
2019	8,254	7,112	810	7,922	5,438	68.6	0	2,484
2020	6,406	6,406	0	6,374	1,429	22.4	0	4,945
2021	311	311	0	311	148	47.6	0	163

주: 2021년 수정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1-3.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 계획액 과다 편성

가. 현 황

DMZ 평화적 이용 사업¹⁾은 DMZ의 실질적 평화지대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DMZ 국제포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DMZ 평화의 길, 판문점 견학 통합 운영,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통일부는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2021년도 계획현액 187억 300만원 중 79억 6,900만원(42.6%)을 집행하고, 26억 3,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80억 9,800만원은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은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함께 비무장지대 내에 공원을 조성하여 DMZ를 생태교류 현장이자 국제평화 상징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현액 67억 9,7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다.

[2021회계연도 DMZ 평화적 이용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DMZ 평화적 이용	18,411	18,411	292	18,703	7,969	42.6	2,636	8,098
DMZ 세계평화 공원조성	7,517	6,797	0	6,797	0	0.0	0	6,797

주: 2021년 수정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내역사업은 우리측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고, 합의 이후에도 추진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일정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계획액을 편성하거나 사전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집행가능한 수준의 기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은 남북한과 국제사회간 합의를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측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일부는 일정 사업절차가 진

1) 코드: 남북협력기금 3040-405

행되는 과정을 검토하여 계획변경 절차를 통하여 계획액을 편성하거나 계획액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추진절차 상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기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은 2014년부터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2015년 제1차 남북당국회담에서 북한에 공원조성 논의를 제안한 이후 북한의 호응이 없어 현재까지 사업 착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동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연구용역비, 토지매입비, 기본조사설계비, 지뢰제거 및 안보시설비 등 1차 년도 사업비를 매년 편성하고 있고, 사업의 성격상 남북 합의가 진행된다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지뢰제거 및 안보시설비, 공사비 등 2~4차 년도 사업비까지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이다.

동 사업은 ① 2014년 기금 신규 사업으로 302억원이 편성된 이후 2021년까지 사업 구상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5억 9,300만원이 집행된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이 없다는 점, ②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계획변경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③ 추진절차 상 1년 이상 소요되는 계획액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금계획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계획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3,190백만원 집행)과 판문점 전차 통합 운영 사업(52백만원 집행, 969백만원 이월)이 신규로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기금집행에 대해 국회는 회계연도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신규 사업 추진은 지양하라는 시정요구하였다.²⁾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20년에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하여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던 DMZ 평화통일문화공간조성 사업 계획액(28억 9,20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다. 이후 통일부는 2021년 기금운용계획에 DMZ 평화의 길 사업과 DMZ 평화통일문화공간조성 사업 경비를 신규로 편성하였고, 재차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에서 DMZ 평화의 길 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을 자체변경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³⁾

2)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 통일부는 원칙적으로 기금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회계연도 중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신규 사업 추진은 지양할 것(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판문점 통합운영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 추진)

3) 통일부는 운영 중인 DMZ 평화의 길(고성A코스)에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부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였다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 결산 연도별 현황: 2014~2021년]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수정액	집행액	불용액	수정내용	집행내용
2014	30,200	30,200	234	29,966	-	연구용역
2015	32,400	32,400	299	32,101	-	연구용역
2016	30,000	30,000	60	29,940	-	연구용역 (전년도 이월액)
2017	10,000	10,000	0	10,000	-	-
2018	10,000	10,000	0	10,000	-	-
2019	10,640	9,498	3,190	6,308	판문점 견학 통합 운영 내역사업(신규)으로 1,142	DMZ 평화의 길 3,190
2020	7,517	4,625	0	4,625	DMZ 평화통일문화공간조성 내역사업(신규)으로 2,892	-
2021	7,517	6,797	0	6,797	DMZ 평화의 길 내역사업으로 720	-

주: 1. 2017년부터 북한 핵실험, 미사일발사 등으로 인한 사업 착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관련 예산이 100억원으로 축소됨
 2. 2019년에 추진된 판문점 견학 통합 운영 및 DMZ 평화의 길 사업은 2019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에서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업 추진에 대한 시정요구가 의결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리고 동 사업의 2021년 기금계획 편성내용과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당초 기금계획은 사례연구비 2억원, 토지매입비 20억원, 기본조사설계비 27억 1,000만원, 지뢰제거 및 안보시설비 26억 700만원, 총 75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사업 추진절차를 보면, 통일부는 남북합의 이후 부지선정까지 5개월, 사업계획 확정 및 고시 4개월, 토지보상 8개월 등 남북간 사업합의부터 토지보상 절차까지만 진행하더라도 1년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은 남북합과 국제사회간 합의를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측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고, 합의 이후에도 추진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부는 동 사업의 계획액을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는 입장이다.

고, 추진절차 진행에 맞추어 기금 계획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 추진절차]

절차	내용	소요기간
추진체계구축 및 부지선정	☐ 추진체계 구축 등(3개월): 추진체계 구축 및 부속합의 ☐ 입지선정(2개월): 남북 공동조사 후 공원 구역 확정	5개월
사업계획 수립	☐ 남북협의를 통한 계획 확정 및 고시	4개월
토지보상	☐ 토지보상	8개월
설계	☐ 설계 및 시공 통합발주(2개월) ☐ 기본설계(2개월) ☐ 실시설계(3개월)	7개월
지뢰제거, 軍시설 이전	☐ 지뢰제거(3개월)	3개월
설계심의	☐ 설계 기술심의(1개월)	1개월
공사 추진	☐ 실시계획 승인 고시(1개월) ☐ 착공 후 준공(6개월)	7개월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가. 현 황

2021년 통일부 일반회계의 프로그램별 세출 결산 현황을 총지출 기준으로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집행액은 760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집행액 1,942억 4,800만원의 39.2%를 차지한다. 인건비·기본경비 집행액 571억 1,000만원을 제외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집행액은 통일부 일반회계 사업비 집행액의 55.5%를 차지한다.

[2021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비중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97,899	97,899	175	98,074	76,085	39.2	77.6	166	21,823
기타 프로그램	63,785	63,785	340	64,125	57,535	29.6	89.7	1,668	4,922
통일행정지원	67,671	67,671	111	67,782	60,628	31.2	89.4	144	7,010
계	229,355	229,355	626	229,981	194,248	100	89.2	1,978	33,755

주: 1.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2. 총지출 기준임

3. 비중은 전체 집행액 대비 비중임

자료: 통일부 세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조사 절차를 거치고,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으로 확인이 되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시설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¹⁾에 입소하여 12주(400시간)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기간 중에 가족관계 등록, 주거알선, 정착금 지급, 생계·의료급여 신청 등의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1999년 7월 경기도 안성에 설치되었고, 이후 2012년 12월 강원도 화천에 제2하나원이 설치되었다. 현재 안성 하나원은 여성 합숙 숙소로, 화천 하나원은 남성 합숙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정착준비를 한다.

[시설보호단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주요내용]

단 계	시 기	구 분	항 목	내 용
시설 보호 단계	하나원 입소	하나원 기본교육		12주(400시간) 교육
		주민등록 지원		하나원 입소 기간 중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가정법원)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정 읍·면·동)
		주거	주택알선	영구·국민 임대주택 알선 (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 원칙적 불가,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변경 불가)
		사회 보장	생계급여 등 신청	주민등록번호 부여 즉시 하나원 소재 보장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료: 통일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 있는 동안 거주 희망지역을 신청하고, 한국토지주택 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으로부터 해당지역의 임대주택을 배정받는다. 이후 하나원 출소 시 1인 세대 기준 약 1,600만원²⁾의 주거지원금을 받는데,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³⁾ 종료 후 지급된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친 북한이탈주민은 1인 세대 기준 8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받는데, 이중 500만원은 초기지급금으로 하나원 퇴소 시 지급되며, 나머지 300만원은 거주지 전입 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된다. 해당 거주지로 전입한 후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라 한다)⁴⁾에서 지역적응교육을 받는다. 8일(50시간) 간의 초기집중교육을 수료한 뒤에는 심리상담,

2) 2인~4인 세대 2,000만원, 5인 이상 2,300만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보호기준 등)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3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취업상담 등의 기타 적응지원을 받는다.5) 거주지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이 기간 동안 정착금 지급, 각종 취업지원 장려금, 사회보장 특례, 교육지원을 비롯하여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주지보호단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주요내용]

단 계	시 기	구 분	항 목	내 용
거주지 보호 단계	하나원 수료 시 및 거주지 전입 직후	하나센터 지역적응 교육 및 지원		지역적응교육 8일(50시간) 및 사회적응 지원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800만원 (하나원 퇴소시 500만원, 거주지 전입후 1년 이내 분기별 100만원씩 3회)
			취약계층 가산금	장애, 장기치료, 제3국출생 자녀양육, 한 부모가정아동, 고령 등 최대 1,540만원 (1세대 1개 사유만 인정)
			지방거주 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1인 세대 기준 160만원(광역시), 320만원(기타)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주거	주거 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
		취업	취업 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중 1년 이상 동일업체 근무 시 수도권 500~700만원, 지방 600~800만원(최대기간 3년, 6개월 동일업체 근무한 경우도 신청 가능) 3년간 근속 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직업훈련 장려금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500시간 이수 시 120만원~최대 740시간 이수 시 160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과정 수료 시 200만원 추가) (단, 2014.11.28. 이전 입국자에만 해당)
			자격취득 장려금	자격취득 시 200만원(1회 한도) (단, 2014.11.28. 이전 입국자에만 해당)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단 계	시 기	구 분	항 목	내 용
			고용 지원금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에 임금의 1/2을 월 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년 지원 (단, 2014.11.28. 이전 입국자에만 해당)
			자산형성 제도 (미래행복 통장)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 (단, 2014.11.29. 이후 입국자에만 해당)
			취업성공 패키지 (고용부)	무료 직업훈련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에는 1유형, 이후에는 소득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참여) 훈련기간 중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취 업 시 취업촉하금 지급
			기타	영농정착 및 창업지원, 취업연계 직업훈 련, 단기연수지원사업 등
		사회 보장	생계급여	거주지보호기간 중 특례 적용
			의료급여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지정
			국민연금	입국당시 50~60세 해당자 국민연금 가입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입학
			학비지원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사후 지원

자료: 통일부

거주지보호단계가 지난 이후에도 북한이탈주민은 원하는 경우 하나센터 등을
통해 취업, 사회적응, 정서안정, 교육, 의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후지원단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주요내용]

단 계	시 기	내 용
사후 지원단계	거주지 보호 기간 종료 이후	하나센터 등을 통한 사후 지원 (취업, 사회적응, 정서안정, 교육, 의료, 법률상담 등)

자료: 통일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1. 최근 5년간(2017~2021년) 프로그램 결산

최근 5년(2012~2021년) 동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동 프로그램의 집행률은 2017년, 2018년, 2020년에는 90%정도의 수준을 보였고, 2019년에는 102.8%로 높게 나타났으나 2021년에는 77.7%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	110,997	112,566	107,436	92,019	97,899
집행액	99,324	99,919	110,465	84,949	76,085
집행률	89.5	88.8	102.8	92.3	77.7

주: 예산액은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폐쇄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21년 말 기준으로 누적 3만 3,815명인데 2011년 2,706명이 입국한 이후 매년 입국인원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2020년¹⁾과 2021에는 입국인원이 2019년 대비(1,047명) 큰 폭 줄어든 229명, 63명이 입국하였다.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및 누적 입국인원]

(단위: 명)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남	6,379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40	9,475
여	14,02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23	24,340
합계	20,400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33,815

자료: 통일부

1) 2020회계연도 집행률이 92.3%로 높은 이유는 이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가산금 등 지급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분할 지급)되기 때문이다.

2-2. 세부사업별 결산

가. 현 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 체계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부는 동 프로그램의 2021년도 예산현액 980억 7,400만원 중 760억 8,500만원(77.6%)을 집행하고, 1억 6,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18억 2,300만원은 불용하였다.

동 프로그램의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 체계 운영 사업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각각 99.2%, 100%로 높은 반면,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및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각각 69.1%, 46.0%, 70.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은 예산현액 3억 2,400만원 중 이월액이 9,300만원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1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 체계 운영	15,774	15,774	175	±152	15,949	15,816	99.2	0	133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32,900	32,900	0	1,655	34,555	34,555	100.0	0	0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	324	324	0	0	324	224	69.1	93	7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33,865	33,865	0	△1,655	32,210	14,823	46.0	0	17,387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5,036	15,036	0	±524	15,036	10,667	70.9	73	4,296
합계	97,899	97,899	175	±2,331	98,074	76,085	77.6	166	21,823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예산편성 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있고,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에 따라 소요 예산액이 달라지는 사업이 있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예산편성 정확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¹⁾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마련, 청소년학교 지원, 지역협의회 및 지역적응센터 운영,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159억 4,900만원 중 158억 1,600만원(99.2%)을 집행하고, 1억 3,3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북한이탈주민 정 책 및 지원 체계 운영	15,774	15,774	175	±152	15,949	15,816	99.2	0	133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1) 코드: 일반회계 2331-300

동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내역사업별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5개 내역사업 모두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내역사업에서 예산 편성 없이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추진한 문제가 있다.

[2021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집행계획		집행실적	
	내용	예산현액	내용	집행액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 및 관리, 북한이탈주민 정책수립 관련 행정 지원 등	247	좌동	228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 등 운영지원	4,370	좌동	4,370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역협의회(132개) 운영지원	700	좌동	700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역적응센터(25개) 운영 지원	6,825	좌동	6,825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기획운영, 시설관리, 민간위탁사업	3,807	좌동	3,693

자료: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산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간 소통·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2019년 12월 건립되어 2020년 5월 개관하였다. 동 센터의 주요사업은 ①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의 소통지원, ② 북한이탈주민 문화생활 종합지원, ③ 체험교육 및 도서관 운영 등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사업의 집행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통일부는 예산편성 없이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해 관리용역비(210-15비목)를 일반연구비(260-01비목)로 전용하여 1,650만원을 집행하였다. 남북통합문화센터 홈페이지는 2019년에 구축되었는데 당시에는 홈페이지 구축 예산이 일반수용비로 잘못 편성되어 있어 통

일부는 일반연구비로 9,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홈페이지는 운영 과정에서 유지보수, 기능개선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충분히 예측되므로 통일부는 향후 홈페이지 관련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²⁾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³⁾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는 사업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345억 5,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32,900	32,900	0	1,655	34,555	34,555	10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 기간 중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지 전입 후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서 최대 4년간 근로소득의 30%이내 저축금액에 대해 1:1로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일부는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사업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17억원을 증액하여 78억원을 집행하였다..

2) 통일부는 남북통합문화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은 관리용역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3) 코드: 일반회계 2331-302

[2021회계연도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6,100	6,100	0	1,700	7,800	7,800	10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대 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자 중 거주지 전입 후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임금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 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 정부·지자체 시행중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 혜택자는 제외
지급시기	거주지 보호기간 내 최대 4년(최초약정 2년 + 최대 2년까지 연장)
지원내용	근로소득 30%(10~50만원 범위) 저축금액에 대해 1:1 매칭지원
신청방법	하나센터에 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확인 및 적립 등 운영

자료: 통일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의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은 예산편성 대비 집행이 부진한 반면, 2017년, 2020년 및 2021년은 예산 편성 대비 초과 집행이 발생하였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재단 자체조 정과 예산전용을 통하여 예산편성 대비 각각 5억 1,600만원, 17억원이 추가 집행 되어 예산 대비 초과집행액이 확대되고 있다. 통일부는 향후 소요예산의 추계 정확 도 제고를 통하여 재단 자체조정이나 예산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	1,821	4,353	7,005	6,567	6,100
집행액	1,849	3,762	5,497	7,083	7,800
집행률	101.5	86.4	78.5	107.9	127.9

자료: 통일부

(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⁴⁾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의지 제고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322억 1,000만원 중 148억 2,300만원(46.0%)을 집행하고, 173억 8,7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33,865	33,865	0	△1,655	32,210	14,823	46.0	0	17,38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정착금 종류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하나원 수료 시와 그 이후 일정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는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등 정착금 지급 사업의 집행액이 2019년 391억 6,100만원에서 2021년 148억 2,3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런 이유는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이 2019년 1,047명에서 2021년 63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하나원 입소 및 수료 인원이 각각 2019년 1,049명, 1,210명에서 2021년 73명, 87명으로 감소한데 기인한다.

동 사업의 집행액은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수, 하나원 입소 및 퇴소 인원 수 등에 따라 시차로 점차 변동하게 되는데 2022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폐쇄가 지속되고 있어 입국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예산액(280억 500만원)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향후 지급시차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코드: 일반회계 2337-302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지급단가	집행액 및 인원 수		
		2019	2020	2021
정착기본금	1인 세대 800만원 (초기 600만원, 이후 3회분할)	8,267	4,723	921
주거지원금	1인 세대 1,600만원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19,502	10,444	5,350
정착장려금	수도권 최고 1,650만원, 지방 최고 1,950만원	7,702	7,062	7,506
보로금	정보나 재화의 가치에 따라 최대 10억원 내에서 조정	921	755	490
고령 가산금	720만원(45만원씩 16회 분할)	205	206	194
한부모 가산금	360만원(22.5만원씩 16회 분할)	218	147	85
고용지원금	월 한도액 50만원(3~4년)	2,346	978	277
계		39,161	24,315	14,823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1,047	229	63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입소인원		1,049	404	73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수료인원		1,210	538	87

자료: 통일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⁵⁾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고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150억 3,600만원 중 106억 6,700만원(70.9%)을 집행하고, 42억 9,600만원은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입소인원이 코로나19상황에 따라 감소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코드: 일반회계 2337-302

[2021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5,036	15,036	0	0	15,036	10,667	70.9	73	4,29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하나원 교육훈련, 제2하나원 교육훈련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내역사업별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하나원 교육훈련과 제2하나원 교육훈련 사업의 집행률은 각각 69.7%, 77.1%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집행계획		집행실적	
	내용	예산현액	내용	집행액
하나원 교육훈련	사회적응교육, 초기정서안정 지원, 진로지도, 하나돌학교 운영, 하나의원 운영, 시설·청사관리·경비업무 등	12,540	사회적응 교육(431), 하나의원 운영(103), 시설·청사관리·경비업무(7,239) 등	8,743 (69.7)
제2하나원 교육훈련	사회적응교육, 진로지도, 교육생지원, 하나돌학교 운영, 하나의원 운영, 청사관리 등	2,496	사회적응 교육(195), 하나의원 운영(55), 청사관리(862), 힐링프로그램(89) 등	1,924 (77.1)

주: 괄호()안은 집행률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제2하나원 교육훈련 내역사업에서 예산편성 없이 신규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운영을 수행하면서 8,880만원을 집행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우리사회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10~12월),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물품 구매 및 시설정비,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등에 예산이 집행되었다. 통일부는 신규로 추

진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경우 예산안에 편성하여 국회 심의절차를 거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1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만원)

내역사업명	비목	집행내역	집행액	비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상용임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1인, 10~12월)	458	
	일반수용비	워크숍 참석수당, 연구용역 제안서 기술평가 사례금, 물품 구입 등	844	
	시설장비유지비	숙소 환경개선 정비	1,256	
	일반연구비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개발	4,000	일반수용비에서 전용
	구호및교정비	교육생 특식	53	
	공사비	힐링 프로그램 운영 공간 정비 및 중장비 실습장 조명공사	2,189	
	자산취득비	물품 구입	80	
합계			8,88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3.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사유별 지급 방안 검토 필요

가. 현 황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7항1)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과는 별도로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 자녀양육가산금, 한부모 가정아동보호가산금, 고령가산금 등 5종 중 하나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산금 지급사유와 신청절차 등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가산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고, 생계유지가 곤란하여야 한다. 가산금 지급사유는 북한이탈주민이 ① 13세 미만 이거나 ② 60세 이상일 경우, ③ 장애가 발생할 경우, ④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 5가지이다. 신청절차는 ①과 ②의 사유는 통일부에, ③~⑤의 사유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가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각 사유별 구체적인 가산금 지급기준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3)에 규정되어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⑦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및 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1. 13세 미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만 해당한다)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2.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산금 지급 기준 현황]

(단위: 만원)

수행	종류	지급금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전달체계	비고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	장애 가산금	중증 1540, 경증 360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탈북민	사회진출 1년 후 남은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분기별 분할 지급 (최대 16회)	하나센터(신청) →하나재단 →분할 지급	자격이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가장 금액이 큰 하나의 사유만 인정
	장기 치료 가산금	최대 720 (1개월 입원 시 80, 최대 9개 월)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중증질병 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탈북민			
	제3국 출생 자녀양육 가산금	227~263기(자 녀 1인당 400, 2자녀까지)/ 264기부터(자 녀 1인당 450, 2자녀까지)	제3국에서 출생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탈북민 부모 (조부모도 가능)			
하나원	한부모 가정아동 보호 가산금	400(세대별)	만 13세 미만 보호아동	보호기간내 사회진출 1 년 후 분할 (16회)지급	하나원 수료시 지급(결정)	
	고령 가산금	800	만 60세 이상 탈북민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가산금 지급의 기본원칙)

- ① 가산금은 영 제39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및 고령가산금, 같은 항 제2호의 장애가산금, 같은 항 제3호의 장기치료가산금, 같은 항 제4호의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 ②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산금 지급 업무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가 담당하며 규칙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가산금 지급 업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담당한다.
- ③ **동일인에게 중복의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가장 금액이 큰 가산금만을 지급한다.** 다만, 보호결정 당시 고령가산금 또는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해당 아동을 동일인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한다)을 지급받거나 거주지보호기간 중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을 지급받는 보호대상자가 장애가산금 또는 장기치료가산금 지급 사유가 생겨 이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금액이 큰 종류의 가산금과 이미 지급된 다른 종류의 가산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나. 분석의견

통일부는 거주지 보호기간 내(5년) 생계유지가 곤란한 북한이탈주민에게만 가산금이 지급되는 점, 각 가산금의 지급사유가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사유별로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통일부는 정착금과 별도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가산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 ‘생계유지 곤란’,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 제3항은 “동일인에게 여러 가지 가산금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가장 금액이 큰 하나의 사유만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부는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가산금 지급사유별 신청서류 검토만을 통해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5종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가장 금액이 큰 하나의 사유만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일반적으로 정착 초기의 북한이탈주민은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지급사유별로 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복지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착 초기의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보로금⁴⁾을 지급받거나 전문기술이 있는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5종의 가산금 지급사유는 각각 장애등급 판정, 3개월 이상 장기치료, 자녀양육, 한부모아동보호, 고령 등으로 지급사유가 다르므로 중복지급에 대한 여지도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 가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가산금 등 5종의 가산금 집행액이 8억 8,300만원으로 가산금을 사유별로 지급하더라도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보로금은 제공한 정보의 대가로 5억원 범위내에서 지급되는데 2021년에는 5명에게 총 4억 9,000만원이 지급되었다.

[2021년도 가산금 사유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자녀양육가산금	고령가산금	한부모아동보호가산금	합계
88	20	496	194	85	883

주: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자녀양육가산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고령가산금, 한부모아동보호가산금은 통일부(하나원)이 집행

자료: 통일부

따라서 통일부는 가산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한 후 일정기간 내 생계곤란한 북한이탈주민에게만 가산금이 지원되는 점, 5종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다르다는 점,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여러 가지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초기 정착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급사유별로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출입사무소 기본경비 집행

가. 현 황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출입사무소 기본경비 사업¹⁾은 남북간 철도·도로를 통한 육로통행에 필요한 출입절차 합의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출입심사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사업이다. 통일부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출입사무소 기본경비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13억 9,900만원 중 13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출입사무소 기본경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출입사무소 기본경비	1,399	1,399	0	0	1,399	1,370	97.9	0	29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금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예산 집행 시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출입사무소 기본경비 중 150만원을 남북협력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7018-257

기금 사업인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제1차 실행위원회 회의개최’ 명목으로 집행하였다.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출입사무소 기본경비의 기금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만원)

일자	건명	집행액
2021.01.25.	DMZ 평화통일문화공간조성 제1차 실행위원회(임차료)	105
	DMZ 평화통일문화공간조성 제1차 실행위원회(관서업무추진비)	45
합계		150

주: DMZ 평화통일문화공간조성 사업은 남북협력기금의 DMZ 평화의 길 사업의 내역사업임
자료: 통일부

「국가재정법」은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 또한, 「국가재정법」은 제2장 예산에 예산안 편성과 집행 등을 규정하고, 제4장 기금에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금결산 등을 규정하여 예산과 기금을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부는 일반회계인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출입사무소 기본경비 예산으로 남북협력기금 사업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평화통일문화공간조성 사업 회의개최 비용을 집행하였다. 이러한 집행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통일부는 일반회계 예산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설치)

-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가. 현 황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서 관서운영 경비 지급 최고금액인 500만원을 초과하여 2건 집행하였다.

[관서운영경비 지급 최고금액(500만원) 초과 집행 현황]

(단위: 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건명	집행액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일반수용비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및 2021년도 시행계획 책자 발간	529
6.25전쟁납북자 기념관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빔프로젝터(LC-XL100A) 램프 외 2건	543

자료: 통일부 제출 지급대장 발췌

나. 분석의견

관서운영경비 범위(최고금액 500만원)를 벗어난 일반수용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¹⁾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2조²⁾는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운영비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등을 제외하고는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을 건당 500만원으로 하고 있다.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소관)에서는 “건당(500만원)”을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구분하기 쉽게 정리해 놓고 있다.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예산과목	용 도
인건비(110)	현역병사 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21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 및 인쇄비용, 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시험연구비 중 연구용역비는 제외
여 비(220)	전체
특수활동비(23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업무추진비(24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직무수행경비(250)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보전금(310)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민간이전(320)	구호 및 교정비

2)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 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예산과목	용 도
유형자산(430)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 시 공제되는 금액 중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직접 지출하기 곤란한 경비

자료: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별지 제1호

그런데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서 관서운영경비 지급 최고금액인 500만원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벗어난 2건을 집행하였다. 이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통일부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관서운영경비가 아닌 경비는 지출관의 검토를 거치는 일반적인 지출절차를 통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가. 현 황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지역사회 통일관련 서비스를 종합지원하고 민간과 정부 간 소통·협력의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통일기반조성¹⁾의 내역사업이다. 통일부는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50억 800만원 중 49억 3,200만원(98.5%)을 집행하고, 7,6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내통일기반조성	9,589	9,589	221	0	9,810	9,582	97.7	0	228
통일+센터 설치·운영	5,008	5,008	0	0	5,008	4,932	98.5	0	7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지방분권형·국민참여형’ 통일·대북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통일+센터 설치를 추진하였다. 통일+센터는 지역별로 지역사회 내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여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로, 통일부는 2018년 9월부터 인천 통일+센터²⁾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전국 권역별로 7개의 통일+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031-301

2) 인천시 연수구 소재 건물 9층에 사무실을 임차해 운영 중이다.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 연차별 계획]

□ 계획

- 2018. 9. 인천 통일+센터 시범 운영
- 2020. 4. 광역지자체 대상 설치 신청 접수 및 2개 후보지 선정
- 호남권(목포), 강원권(춘천)
- 2021. 1. 호남권·강원권 통일+센터 설치 착수
- 2021. 4. 광역지자체 대상 설치 신청 접수 및 2개 후보지 선정
- 충청권(내포신도시), 경기권(의정부)
- 2022. 1. 충청권·경기권 통일+센터 설치 착수
- 2023(안) 영남권·제주권 통일+센터 설치 착수, 호남권 운영 개시
- 2024(안) 강원권·충청권·경기권 통일+센터 설치 운영개시, 인천센터 확대 운영
- 2025(안) 영남권·제주권 통일+센터 운영 개시, 권역별 설치 완료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계획변경으로 강원권 통일+센터 신축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보조금을 교부하여 전액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통일부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2021년에 호남권(목포)·강원권(춘천) 통일+센터 설치를 추진하면서 전라남도과 강원도에 각각 26억 7,500만원, 16억 2,500만원, 총 43억원의 보조금을 교부(국고보조율 50%)하였다.

그런데 보조금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에 교부된 보조금은 전액 집행된 반면, 강원도에 교부된 보조금은 전액 미집행되고 이월되어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였다.

[2021회계연도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수행 주체	통일부			사업수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전라남도	2,675	2,675	2,675	2,675	0	2,675	2,675	0	0	100.0
강원도	1,625	1,625	1,625	1,625	0	1,625	0	0	1,625	0.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³⁾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강원센터 건축 관련 행정절차가 2021년에 시작되었고, 기본계획 용역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관련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지선정 재검토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견조율에 상당시일이 소요되어 설계공모 절차가 지연되었으며, 강원도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강원센터 신축 계획이 9월말 기준으로 변경되어 설계비(3억 원)를 제외한 공사비(13억 2,500만원)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보조금을 9월, 10월, 2차례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부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교부된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17.

[강원권 통일+센터 신축 계획]

강원센터 신축 계획(1월)	강원센터 신축 계획 변경(9월)
○ 2021. 1.~2. 기본계획 용역 ○ 2021. 3.~4.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 2021. 5.~11. 설계 ○ 2021.12. 착공 ○ 2023. 4. 완공	○ 2021. 3.~8. 기본계획 용역 ○ 2021. 9.~11.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 2021.11.~2022.6. 설계 ○ 2022. 6. 착공 ○ 2023. 9. 완공¹⁾

주: 1) 강원권 통일+센터는 2021년 하반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관련 도 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지선정 재검토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전조율에 상당시일 소요되었음. 이에 따라 완공시기가 2024년으로 변경되었음

자료: 외교통일위원회, 「2022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p.32.

[2021년도 강원권 통일+센터 신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월별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1월~8월	9월	10월	합계
강원도	1,625	0	813	812	1,625

주: 교부액은 설계비 3억원, 공사비 13억 2,500만원임

자료: 외교통일위원회, 「2022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p.33.

가. 현 황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¹⁾은 남북출입사무소의 철도·도로 출입시설 및 물류센터 출입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는 사업이다. 통일부는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37억 400만원 중 35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5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3,704	3,704	0	0	3,704	3,589	96.9	0	11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간 철도·도로를 통한 육로통행에 필요한 출입절차 합의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출입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003년에 설치되었다.

[남북출입사무소 시설 현황]

구분	동수	건축면적	부지면적	위치
경의선	39개	54,105㎡	443,520㎡	경기도 파주시
동해선	16개	33,019㎡	229,411㎡	강원도 고성군

자료: 통일부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3031-300

나. 분석의견

예산편성 없이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를 수행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설물 개보수 공사의 경우 증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통일부는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에서 ‘구출경동 주차장 아스콘 포장’ 명목으로 2,100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동 사업의 내역사업을 살펴보면, 동해선 과학보안장비(CCTV) 성능개선 사업, 동해선 출입시설 LED 등기구 교체사업,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사업 등 3개 내역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집행된 반면, 구출경동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는 예산 편성 없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03년 조성되어 노후된 구출경동 주차장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타 공사비 절감액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도로포장 공사를 추진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북출입사무소는 건물 등을 관리하는 주체로 시설개보수 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예측가능하고, 시설개보수 공사의 경우 증장기 계획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통일부는 현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 등 시설물의 개보수 공사의 경우 증장기 계획을 마련한 후 순차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1 회계연도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내역사업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0결산	2021	
		예산액	집행액
출입심사시설 관리	2,232	2,378	2,289
경의선 과학보안장비 성능개선	99	0	0
동해선 과학보안장비 성능개선 등	0	757	751
동해선 출입시설 LED 등기구 교체	0	215	196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0	331	320
구출경동 주차장 아스콘 포장	0	0	21
기타 부대경비	0	23	12
합계	2,331	3,704	3,589

자료: 통일부

가. 현 황

남북대화 50주년 기념사업은 남북대화의 역사적 의의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남북회담 추진 사업¹⁾의 내역 사업이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50주년 기념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1억 4,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남북회담 추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남북회담 추진	766	766	0	±61	766	362	47.3	0	404
남북대화 50주년 기념사업	100	100	0	45	145	145	10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남북대화 5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통일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와 남북대화 50년사 편찬 등을 추진하면서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다.

남북대화 50주년 기념사업의 예산안·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통일부는 동사업의 예산안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1억원이 감액되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4031-300

어 1억원만 예산에 반영되었다. 그런데 통일부는 동 사업 집행과정에서 남북회담 추진 사업 내 다른 내역사업 재원 4,500만원을 활용하여 1억 4,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을 증액하여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남북회담추진 사업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내용]

(단위: 백만원)

2020		2021 (안)	증감액	수정이유
본예산	추경			
1,462	1,368	1,183	△417	○ ① 내역사업인 '분야별 회담추진'(8억 5,800만원, 전년 대비 4억 7,400만원 감액)은 북한과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회담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② 다른 내역사업인 '남북대화 50주년 기념사업'(2억원, 신규)은 기념행사 및 50년사 편찬사업임 ○ 남북회담추진사업 예산은 집행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남북대화 50주년 기념행사는 부적절하므로, 예비비를 편성했던 과거 사례에 따라 2018년 예산(7억 6,600만원) 수준으로 4억 1,700만원 감액 필요

자료: 2021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1회계연도 남북대화 50주년 기념사업 예산안·예산·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안	예산	집행
○ 50주년 기념 행사운영 148 - 행사운영 준비 8 - 행사운영 위탁 140 ○ 남북대화 50년사 편찬 52 - 집필 23 - 인쇄 및 발송 29	○ 50주년 기념 행사운영 66 - 행사운영 준비, 위탁 ○ 남북대화 50년사 편찬 34 - 집필, 인쇄 및 발송	○ 50주년 기념 행사 57 ○ 사진전 4 ○ 남북대화 50년사 편찬 84 - 국문판 53 - 영문판 31
200	100	145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 현 황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기반 구축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통일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기반 구축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1억 9,800만원 중 1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342	342	0	±30	342	312	0	30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기반 구축	198	198	0	±30	198	192	0	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평화경제 토크콘서트 행사 개최를 위해 예산편성보다 증액하여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향후 행사 추진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통일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기반 구축 내역사업에서 정책연구비(260-02 비목) 3,000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비목)로 전용하여 평화경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일반용역비 4,950만원을 집행하였다.

평화통일 토크콘서트는 2030세대의 평화경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해 추진되었는데 해외인사(짐 로저스) 실시간 화상 대담, 국내·외 동영상 촬영, 동영상 제작(4편), 유튜브 게재 등에 예산이 집행되었다.

[2021년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비고
	세부사업 명	비목		세부사업 명	비목		
전용 (9.23.)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260-02	30	좌동	210-14	토크콘서트 개최	불용예상액 활용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1년 평화경제 토크콘서트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	계약유형	계약기간	수행자	집행액
평화경제 토크콘서트	일반용역비(210-14비목)	수익	9.30~11.30	○○○	49.5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의 일반용역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제포럼 1억원과 대국민 소통 활성화 2,500만원 등 총 1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평화경제 토크콘서트 행사 개최 경비는 대국민 소통 활성화 예산으로 집행되었는데 통일부는 편성예산(2,500만원) 대비 120% 수준인 3,000만원을 전용 증액한 후 이 중 2,450만원을 추가로 집행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불용이 예상되는 정책연구비를 활용하여 2030세대에게 친숙한 영상에 기반한 대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사 개최 예산의 경우 면밀한 계획 하에 적정규모로 예산안에 편성하여 국회 심사 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정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 집행 시 홍보 등 행사성 경비의 지출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하는 2021년 예산 국회 부대의견이 있었다.²⁾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행사 추진 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385.

가. 현 황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¹⁾은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활동·주민생활·주민의식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를 북한정세분석 및 통일·대북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통일부는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4억 1,700만원 중 3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예산은 대부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일반연구비(260-01비목)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417	417	0	0	417	397	95.2	0	20
일반연구비	401	401	0	0	401	390	97.3	0	1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용역을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자 감소이유로 사회진출자 위주로 수행하는 것은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수행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의 일반연구비로 ‘2021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용역을 수행하면서 3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다.

동 용역은 ① 하나원 교육생 및 사회진출자 대상 설문조사, ② 경제·사회 주요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533-302

분야 주제별 심층면접, ③ 5개 도시 인문지리정보 조사, ④ 2013~2021년 데이터 통합분석 및 DB입력 등으로 구성된다.

하나원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은 안성, 화천에 위치한 하나원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회진출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은 용역수행자가 지역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과 협조하여 피면접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통일부는 2020년부터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자 수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감소함에 따라 2020년, 2021년 정보수집 대상자를 하나원 교육생에서 사회진출자 중심으로 변경하여 수행하였다. 사회진출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최신 북한정보 획득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시 가급적 최근 5년 이내 입국자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 기존 입국자라 하더라도 새롭게 발굴·조사하여 수집된 정보는 기존 누적 데이터를 보완·검증하는 데 유용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영역은 축적 중인 과거 북한 정보와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이 제공하는 과거 북한 정보를 하나원 교육생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최신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국내입국 기간이 오래된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최신 정보 획득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자 수가 증감에 대비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²⁾

2) 2022년의 경우 23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이외에 누적 데이터 심화분석, 종합자료집 등을 추진 중이다.

[최근 5년간(2018~2021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연구용역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피면접자				집행액	수행자
		하나원 교육생	사회 진출자	방북자	계		
2018	1,137	560	143	30	733	406	북한대학원대학, 현대리서치
2019	1,047	472	209	10	691	433	북한연구학회, 현대리서치
2020	229	66	437	0	503	400	송실대, 글로벌리서치
2021	63	20	331	0	351	390	송실대, 글로벌리서치

자료: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00만원이며, 2,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5.6%인 1,500만원을 수납하고 1,2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은 없다.

[2021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	6	6	27	15	12	0	55.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1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29억 1,800만원이며, 이 중 95.0%인 312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6억 5,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1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2,918	32,918	32,918	31,262	0	1,656	95.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라.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산은 284억 9,000만원, 부채는 없으며 순자산은 284억 9,0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300만원, 일반유형자산 277억 6,500만원, 무형자산 7억 2,1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4억 2,500만원(9.3%) 증가하였다. 이는 자산 재평가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25억 1,2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8,490	26,065	2,425	9.3
Ⅰ. 유동자산	3	0	3	0
Ⅱ. 투자자산	0	0	0	0
Ⅲ. 일반유형자산	27,765	25,253	2,512	9.9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721	812	△91	△11.2
Ⅵ. 기타비유동자산	0	0	0	0
부 채	0	0	0	0
Ⅰ. 유동부채	0	0	0	0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28,490	26,065	2,425	9.3
Ⅰ. 기본순자산	12,238	12,238	0	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794	83	△877	△1,056.7
Ⅲ. 순자산 조정	17,046	13,744	3,302	24.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30억 8,7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31억 2,200만원, 비배분비용 1,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4,7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5억 4,800만원(8.3%) 증가한 330억 8,700만원이며, 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고유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25억 7,9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운영 단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순원가는 331억 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단일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관리운영비로 집계된 금액은 없으며,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1,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3,122	30,543	2,579	8.4
가. 프로그램 총원가	33,122	30,543	2,579	8.4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
II. 관리운영비	0	0	0	0
III. 비배분비용	12	0	12	0
IV. 비배분수익	47	4	43	1,075.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3,087	30,539	2,548	8.3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3,087	30,539	2,548	8.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65억 6,5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84억 9,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4억 2,500만원(9.3%)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330억 8,700만원으로 집계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33억 3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322억 900만원으로 집계되어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322억 9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33억 3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26,065	25,914	151	0.6
Ⅱ. 재정운영결과	33,087	30,539	2,548	8.3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2,209	30,690	1,519	4.9
Ⅳ. 조정항목	3,303	0	3,303	0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28,490	26,065	2,425	9.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이 있다.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우리고장 평화플랜 사업에서 해외 평화플랜 1회를 축소하여 6,100만원이 감액(2억 5,000만원→1억 8,9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이 있다.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협의회 운영비 사업에서 해외 협의회 인건비 및 임차료 지원 등 운영비의 현실화를 위해 4억원이 증액(9억 8,300만원→13억 8,300만원)되었다.

국방위원회





국방부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9,894억 1,600만원이며, 1조 8,268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1.8%인 1조 6,774억 7,800만원을 수납하고 1,485억 5,4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8억 3,8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43,948	243,948	243,948	360,768	256,957	103,536	275	71.2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739,754	739,754	739,754	811,609	770,533	40,513	563	94.9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1,005,714	1,005,714	1,005,714	654,493	649,988	4,505	0	99.3
합계	1,989,416	1,989,416	1,989,416	1,826,870	1,677,478	148,554	838	91.8

자료: 국방부

2021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8조 999억 5,100만원이며, 이 중 94.2%인 35조 9,046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1조 1,819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조 133억 8,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5,843,659	35,843,659	36,258,745	34,739,443	951,508	567,793	95.8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739,754	739,754	784,856	715,386	55,003	14,467	91.2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1,005,714	1,005,714	1,056,350	449,785	175,436	431,128	42.6
합계	37,589,127	37,589,127	38,099,951	35,904,614	1,181,947	1,013,388	94.2

자료: 국방부

나.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4조 4,457억 3,300만 원이며, 7조 7,635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6%인 7조 7,342억 7,000만원을 수납하고 288억 5,0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억 9,700만원을 불납 결손 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군인복지기금	838,302	838,302	838,302	848,607	830,859	17,350	397	97.9
군인연금기금	3,607,431	3,607,431	3,607,431	6,914,911	6,903,411	11,500	0	99.8
합계	4,445,733	4,445,733	4,445,733	7,763,518	7,734,270	28,850	397	99.6

자료: 국방부

2021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의 계획현액은 4조 4,503억 7,600만원이며, 이 중 173.8%인 7조 7,342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61억 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68억 5,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군인복지기금	838,302	838,302	842,945	830,859	6,145	86,901	98.6
군인연금기금	3,607,431	3,607,431	3,607,431	6,903,411	0	9,956	191.4
합계	4,445,733	4,445,733	4,450,376	7,734,270	6,145	96,857	173.8

자료: 국방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1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027억 5,800만원(△19.2%) 이 감소한 1조 6,937억 5,400만원이다.

[2021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결산 (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836,826	908,573	908,573	553,692	△354,881	△283,134
기금	1,126,552	1,187,939	1,187,939	1,140,062	△47,877	△13,510
합계	1,963,378	2,096,512	2,096,512	1,693,754	△402,758	△269,624

자료: 국방부

2021회계연도 국방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조 3,531억 7,600만원(△3.6%)이 감소한 36조 3,750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 2조 5,991억 8,600만원(7.7%)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결산 (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9,784,235	33,577,922	33,577,922	32,323,106	△1,254,816	2,538,871
기금	3,991,639	4,150,314	4,150,314	4,051,954	△98,360	60,315
합계	33,775,874	37,728,236	37,728,236	36,375,060	△1,353,176	2,599,186

자료: 국방부

라.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국방부의 자산은 258조 5,430억 2,400만원, 부채는 251조 2,198억 9,600만원으로 순자산은 7조 3,231억 2,800만원이다.

자산은 일반유형자산 244조 7,226억 1,400만원, 유동자산 11조 4,535억 1,000만원, 투자자산 1조 9,179억 4,0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24조 1,184억 8,400만원(10.3%) 증가하였는데, 이는 군수품 취득에 따른 선급금 및 정부내 단기예탁금 등 유동자산 1조 744억원 증가, 국유재산 재평가 및 시설자산과 전비품 취득 등 일반유형자산 23조 5,282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239조 3,705억 5,2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5조 6,696억 8,900만원, 장기차입부채 2조 9,577억 6,6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18조 4,969억 1,600만원(7.9%)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물가상승율 증가 및 할인율 감소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등 장기충당부채의 18조 9,060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국방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58,543,024	234,424,540	24,118,484	10.3
Ⅰ. 유동자산	11,453,510	10,379,071	1,074,439	10.4
Ⅱ. 투자자산	1,917,940	2,443,955	△526,015	△21.5
Ⅲ. 일반유형자산	244,722,614	221,194,318	23,528,296	10.6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446,880	404,988	41,892	10.3
Ⅵ. 기타비유동자산	2,080	2,208	△128	△5.8
부 채	251,219,896	232,722,980	18,496,916	7.9
Ⅰ. 유동부채	3,221,889	2,544,696	677,193	26.6
Ⅱ. 장기차입부채	2,957,766	2,972,155	△14,389	△0.5
Ⅲ. 장기충당부채	239,370,552	220,464,549	18,906,003	8.6
Ⅳ. 기타비유동부채	5,669,689	6,741,580	△1,071,891	△15.9
순 자 산	7,323,128	1,701,560	5,621,568	330.4
Ⅰ. 기본순자산	139,459,467	139,459,467	0	0.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195,647,300	△185,200,249	△10,447,051	5.6
Ⅲ. 순자산 조정	63,510,962	47,442,343	16,068,619	33.9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9조 4,111억 5,600만원으로 프로그램 총원가 56조 510억 7,000만원, 관리운영비 7,802억 200만원, 비배분비용 3,562억 1,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조 1,149억 5,200만원, 비배분수익 6조 6,587억 900만원, 비교환수익 등 26억 6,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6조 9,648억 9,800만원(16.4%) 증가한 49조 4,138억 2,200만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대비 6조 9,637억 8,400만원(16.4%) 증가한 49조 4,111억 5,6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 총원가 및 비배분수익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국방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54,936,119	46,393,306	8,542,813	18.4
가. 프로그램 총원가	56,051,070	47,709,989	8,341,081	17.5
나. 프로그램 수익	1,114,952	1,316,683	△201,731	△15.3
II. 관리운영비	780,202	678,863	101,339	14.9
III. 비배분비용	356,210	1,350,550	△994,340	△73.6
IV. 비배분수익	6,658,709	5,973,795	684,914	11.5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9,413,822	42,448,924	6,964,898	16.4
VI. 비교환수익 등	2,666	1,552	1,114	71.8
VII. 재정운영결과(V-VI)	49,411,156	42,447,372	6,963,784	16.4

자료: 국방부

총 14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총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급여정책 프로그램(15조 2,871억 5,773만원), 군인연금(연금정책) 프로그램(15조 2,940억 6,69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업무추진비 2,299억 1,951만원과 복리후생비 1,572억 2,182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감가상각비 376억 6,015만원과 이자비용 660억 9,217만원, 기타비용 1조 2,369억 7,833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도 기초순자산은 1조 7,015억 6,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7조 3,231억 2,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5조 6,215억 6,800만원(330.4%) 증가하였다. 기말 순자산이 증가한 이유는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이 전년도 대비 22조 4,217억 5,100만원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한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46조 1,889억 8,927만원으로 국고수입, 무상이전수입 등 재원의 조달 47조 8,846억 7,481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조 6,956억 8,554만원으로 구성된다. 조정항목은 8조 8,437억 3,537만원으로 투자증권평가이익 172억 9,989만원, 자산재평가이익 16조 459억 5,074만원, 기타 순자산의 감소 7조 2,195억 1,526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국방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1,701,560	18,825,805	△17,124,245	△91.0
II. 재정운영결과	49,411,156	42,447,372	6,963,784	16.4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6,188,989	38,901,143	7,287,846	18.7
IV. 조정항목	8,843,735	△13,578,016	22,421,751	△165.1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7,323,128	1,701,560	5,621,568	330.4

자료: 국방부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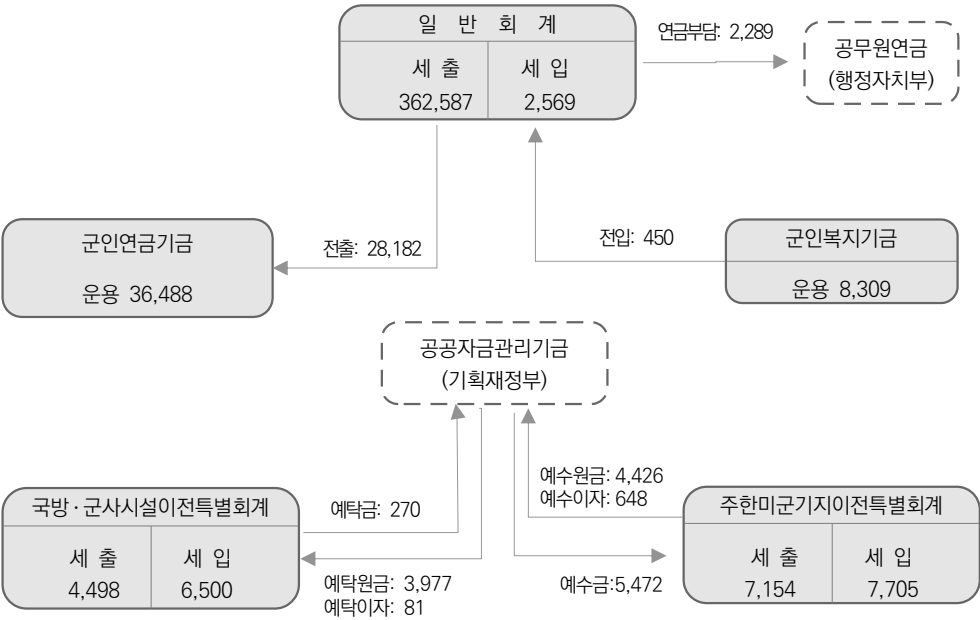
2021회계연도 국방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289억원, 군인연금기금으로 2조 8,182억원이 각각 전출되었고, 군인복지기금에서 일반회계로 450억원 전입되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 5,472억원을 받고, 예수원금 4,426억원과 예수이자 648억원을 상환하였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270억원을 예탁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회수 3,977억원, 예탁이자수입 81억원을 받았다.

[국방부 소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국방부

국방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이동형 의무전개키트 사업, ②플라즈마 환경멸균기 사업, ③12사단 아파트 신축 사업 등이 있다.

이동형 의무전개키트 사업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75.0억원이 감액(165.4억원 → 90.4억원)되었고, 플라즈마 환경멸균기 사업은 시급성을 고려 군 병원에 우선 도입하여 44.1억원이 감액(53.0억원 → 8.9억원)되었다. 12사단 아파트 신축 사업은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부액을 조정 31.3억원이 감액(165.6억원 → 134.3억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마스크 구매 사업, ②전투복 소재 국산화 사업 등이 있다.

마스크 구매 사업은 마스크 1인당 지급매수를 주 2매에서 3매로 확대하여 161.4억원이 증액(326억원 → 487.4억원)되었고, 전투복 소재 국산화 사업은 전투복 국내생산기반 강화 및 안정적 수급을 위해 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71.9억원이 증액(0 → 71.9억원)되었다.²⁾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생일 특식 사업, ②K1E1 전차 사업, ③강릉기지 용벽설치 사업 등이 있다. 생일 특식 사업은 “통합발주에 따라 대도시에서 납품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여 소규모 지역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생일특식을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 K1E1 전차 사업은 “K1E1 전차 포수조준경 고장으로 인해 운영에 제한이 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K1A1전차에 적용되고 있는 포수조준경을 기술변경으로 추진할 것”, 강릉기지 용벽설치 사업은 “강릉기지 용벽설치와

1) 국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2) 국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사업에 착수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³⁾

3) 국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국방부는 ① 군사 능력 발휘 여건 보장을 통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②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 확충**, ③국방 분야에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한 **국방운영의 첨단화·효율화 추진**, ④장병 복무여건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사기충천한 병영문화 조성** 등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군인연금과 관련하여,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그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는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군인연금 제도 개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병의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정책 강화와 관련하여, 군 장병 정신건강 관련 지속적인 사업추진, 장병 정신건강의 실태조사 내실화 필요 및 군간부를 위한 심리상담제도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 밖의 사업과 관련하여, 탄약지환통의 규격 불일치에 따른 대안 마련, 주둔지 경계용 등 CCTV 설치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 노력,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의 집행 철저 및 군간부확보장려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군인연금

가. 제도 개요

군인연금의 가입자는 「군인연금법」 제2조에 따라 현역 또는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으로 부사관, 준사관, 장교가 해당한다. 군인연금의 가입자로서 기여금 납부 의무와 연금수급 권리를 갖게 되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¹⁾

[군인연금 가입자]

구 분	주요 내용
가입자	현역 또는 소집하여 복무하는 군인
예외조항	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
가입자 수	2021년 기준 192,000명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군인연금 기여금부담률은 국가와 군인이 각각 7%(2021년 기준)이다. 20년²⁾ 이상 복무하여야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고 연금지급률은 복무기간 1년 당 1.9%(2021년 기준)이다.

[군인연금제도 주요 항목(2021년 기준)]

기여금부담률	연금수급요건	연금지급률
7%	20년 이상 복무	1.9%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다만, 군인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사관, 병, 군간부후보생도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

2) 다만, 「군인연금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20년으로 한다는 간주규정이 있어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이면 연금수급권이 발생한다.

군인연금 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역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이 있다.

퇴역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이다. 군인은 퇴직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므로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은 퇴직 연령과 일치하고 「군인사법」 제8조에 근거하여 연령·계급·근속 등 다양한 정년이 적용된다. 연령정년은 부사관(하사·중사·상사·원사) 40~55세, 위관장교(소위·중위·대위)³⁾ 43세, 영관장교(소령·중령·대령) 45~56세, 장군(준장·소장·중장·대장) 58~63세로 규정하고, 계급정년은 준장 이상부터 중장까지 적용되며 4~6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임관 이후 해당 계급으로 진급한 군인이 최대로 복무할 수 있는 기간이 근속정년이며 위관장교⁴⁾는 15년, 영관장교는 24~35년이다.⁵⁾

상이연금⁶⁾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급여이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으로 구분되며, 상이연금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상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상이연금 수급자는 이외에 장애보상금, 보훈연금을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퇴직자 포함)이 사망한 경우,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이때 퇴역연금 수급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기여제로 부담되는 급여이고, 상이연금 수급자 사망에 따른 상이유족연금과 복무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은 비기여제로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급여이다.

퇴역연금일시금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자가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을 수령하기를 원할 때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급여이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총 복

3) 준사관인 준위의 연령정년은 55세이다.

4) 준사관인 준위의 근속정년은 32년이다.

5) 부사관의 경우에는 계급정년이나 근속정년은 없고 연령정년만 있기에 장기복무인 하사로 임용되면 상사는 53세, 원사와 준위는 55세의 연령정년이 적용된다.

6) 「군인 재해보상법」이 2020년 6월 11일 시행되면서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등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군인연금기금 내에서 수입(재해보상 국가부담금), 지출(상이연금 등 재해보상급여)이 이루어지므로 군인연금 제정과 관련이 있어 함께 다루기로 한다.

무기간 중 일부는 퇴역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일시금을 받고자 할 때 지급하는 급여이다. 퇴직일시금은 퇴역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 즉 20년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군인연금은 제도 도입 이후 개혁을 거치고 퇴역연금액 지급산식도 바뀌면서 2013년 7월 이전 복무기간, 2013년 7월 이후 복무기간 등 두 구간별로 각각 연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더하여 총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구간별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도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으로 다르다. 2013년 이전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월액을 적용하는데, 군인에게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 봉급과 기말수당액의 연지급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2013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며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이다.

[군인연금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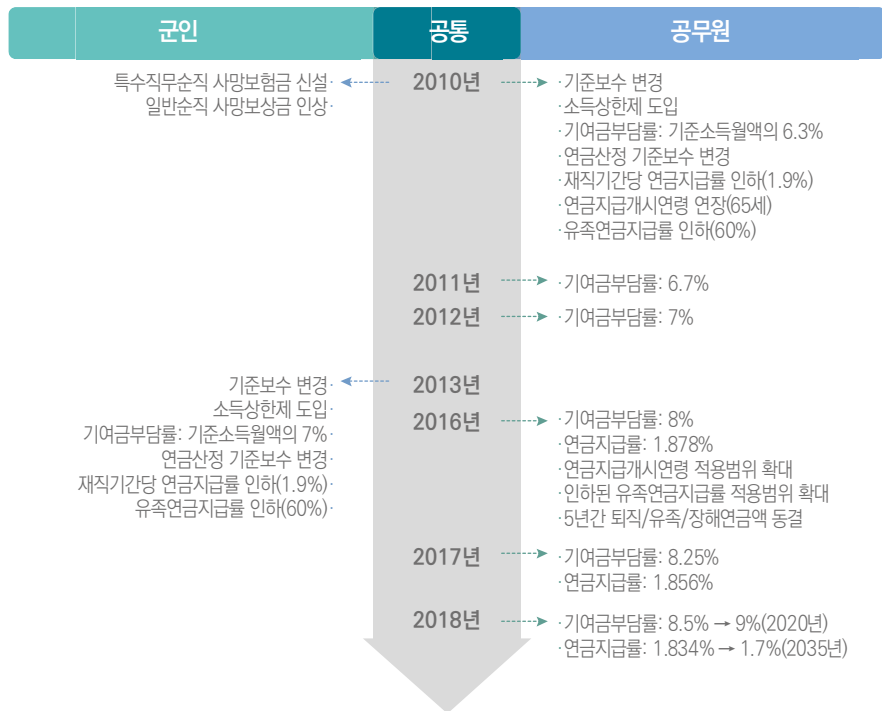
구 분	주요 내용													
연금급여 유형	○ 퇴역연금: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로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 상이연금: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때 지급 ○ 유족연금: 복무 중 공무상 사망(순직유족), 퇴역·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 또는 20년 이상 복무자 중 공무 외 사망(전환유족)													
연금 수급개시 연령	군인은 퇴역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므로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은 퇴역 연령과 일치하고 「군인사법」 제8조에 근거하여 연령·계급·근속 등 다양한 정년 적용													
	〈군인의 정년제도〉													
	구 분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위	대위 중위 소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연령	40세	45세	53세	55세	55세	43세	45세	53세	56세	58세	59세	61세	63세
	근속	-				32년	15년	24년	32년	35년	-			
	계급	-									6년	6년	4년	-
월급여 수준	퇴역연금액 = 2013년 7월 이전(A) + 2013년 7월 이후(B) · A: (평균 보수월액×50%)+(평균 보수월액×20년 초과복무연수×2%) · B: 평균 기준소득월액 ⁷⁾ ×복무연수×1.9%													
수급자 수	2021년 기준 99,454명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 군인연금과 공무원 · 사학연금 연혁 비교: 2010~2018년

-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로 ‘더 내고 덜 받는’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었고, 2010년 이후 두 제도의 개혁시기가 달라지면서 기여금부담률 등 주요 항목에서 차이가 있음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 연혁 비교: 2010~2018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전망」, 2018.

7) 매년도 기준소득월액에 급여사유가 발한 날(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일)까지 적용기간별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군인연금기금을 통해 군인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군인연금기금을 관장하는 국방부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계획을 확정한다.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군인이 납부하는 연금기여금, 기금적립금의 투자 수익으로 발생하는 재산수입, 국가가 납부하는 기여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의 국가부담금과 보전금 등을 포함한 국고지원으로 구성된다. 지출은 퇴역연금 등 군인연금급여 지급, 군인연금 운영에 소요되는 기금운영비로 구성된다.

[군인연금 기금운용계획 구성]

항 목			내 용
수입	자체 수입	연금기여금	군인이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7.0%)
		재산수입	기금 적립금의 금융자산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기 타	합산·연계반납금, 환수금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
	국고지원		◦ 일반회계전입금 - 국가부담금: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기여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으로 구성 - 보전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상이전수입 및 국가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에서 보전하는 금액
	지출	군인연금급여	◦ 군인연금법에 의해 지출하는 각종 연금 및 일시금 - 연금: 퇴역연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 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기금운영비		군인연금 급여 지급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제 경비	
수지 (수입-지출)			군인연금기금 수입과 지출의 차이

자료: 국방부

1-1. 최근 5년간(2017~2021년) 군인연금기금 운용 현황 및 재정수지

2021년 기준 기금 운용자산은 1조 3,500억원으로 금융부문 78.5%, 기타부문 21.5%로 구성된다. 금융부문 자산은 2017년 0.9조원에서 2021년 1.06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2017년 76.9%에서 1.6%p 증가하였다. 복지부문의 자산은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 등으로 구성된 기타부문의 자산이 2021년 기준 0.29조원이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군인연금기금 운용자산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융부문	0.90	0.89	0.96	1.03	1.06
	(76.9%)	(76.7%)	(77.4%)	(79.2%)	(78.5%)
복지부문	0	0	0	0	0
	0	0	0	0	0
기타부문	0.27	0.27	0.27	0.27	0.29
	(23.1%)	(23.3%)	(22.6%)	(20.8%)	(21.5%)
합 계	1.17	1.16	1.24	1.30	1.35

주: 1. 시가기준이고, ()는 합계 대비 해당부문의 비중
 2. 금융부문을 각 연도 말 기준 시가평가 반영한 금액
 3. 기타부문은 부동산 등으로 구성
 자료: 국방부

금융부문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수익률을 살펴보면, 최저 △2.2%(2018년)에서 최고 5.6%(2019년)로 약 7.8%p의 변동 폭을 보였다. 2017년 2.7%에서 2018년 △2.2%로 급락하였다가 2019년에는 5.6%로 급등하는 등 최근 3년간에는 다소 큰 폭의 증감을 기록하였다.

자산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 주식의 경우 최근 5년간(2017~2021년) 최저 △17.3%(2018년)에서 최고 33.9%(2020년)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 채권은 금리에 영향을 받으므로 국내 채권은 최근 5년간 최저 △0.2%(2021년)에서 2.6%(2020년)의 수익률을 보였으며 주식에 비해 수익률의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국내 대체투자는 최근 5년간 최저 △96.3%(2020년)에서 최고 112.4%(2019년)으로 주식보다 높은 수준의 변동폭을 보였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군인연금 금융부문 자산유형별 수익률 현황]

(단위: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융부문		2.7	△2.2	5.6	3.8	2.9
채 권		1.1	2.5	2.3	2.7	△0.2
	국 내	1.1	2.5	2.3	2.6	△0.2
	해 외	0	0	0	6.6	△1.5
주 식		21.8	△11.8	21.3	18.4	20.1
	국 내	23.1	△17.3	9.8	33.9	6.5
	해 외	11.3	△6.9	30.7	6.7	30.0
대체투자		3.2	△49.5	16.4	2.04	0.8
	국 내	△1.2	△94.5	112.4	△96.3	1.4
	해 외	7.6	△5.4	1.1	2.16	0.0
단기금융상품		1.3	1.7	1.7	1.0	0.8

주: 연기금투자물 통합펀드를 국내/국외 주식/채권으로 구분하여 작성

자료: 국방부

군인연금의 총 수입은 2017년 1조 6,354억원에서 연평균 4.1% 증가하여 2021년 1조 9,190억원을 기록하였다. 수입은 크게 보험료 수입과 퇴직수당 등에 대한 국가부담금으로 구분되는데, 보험료 수입은 2017년 1조 1,942억원에서 2021년 1조 4,193억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하였다. 보험료 수입이 연평균 4.4%씩 증가한 것은 군인의 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는 기여금부담률이 7%로 유지되었고, 가입자 수는 동 기간 동안 연평균 1.4% 정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군인연금 지출은 2017년 3조 660억원에서 2021년 3조 5,331억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하였다. 수입의 증가율이 지출의 증가율보다 높지만, 규모의 차이로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1조 4,306억원의 적자가 연평균 3.1% 증가하여 2021년에는 1조 6,141억원을 기록하였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군인연금 재정수지 현황(결산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수입 (A)	가입자기여	5,878	6,145	6,397	6,691	6,858	3.9
	국가부담(사용자)	6,064	6,534	6,753	7,107	7,335	4.9
	보험료	11,942	12,679	13,150	13,798	14,193	4.4
	퇴직수당 등 국가부담금	4,325	4,442	4,784	4,940	4,835	2.8
	기타	87	106	138	156	162	16.8
	소 계	16,354	17,227	18,073	18,894	19,190	4.1
지출(B)		30,660	32,208	33,646	34,482	35,331	3.6
재정수지(A - B)		△14,306	△14,980	△15,573	△15,588	△16,141	3.1
국고지원(C)		14,523	15,100	15,740	15,779	16,012	2.5
국고지원 후 당기수지(A-B+C)		217	120	167	191	△129	-
누적적립금		11,676	11,623	12,444	13,017	13,483	-

주: 수입 기타항목은 사업의 수익(합산 및 연계 반납금, 환수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자료: 국방부

군인연금 가입자 수는 2017년 182,000명에서 2021년 192,000명으로 1만명이 증가하였다. 가입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계급별로 정원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운영되는 특징에서 기인한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군인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가입자 수	182,000	183,000	186,000	189,000	192,000	1.4

자료: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군인연금 수급자 수는 2017년 91,071명에서 2021년 99,454명으로 연평균 2.2% 증가하였다. 연금급여별 수급자 수는 퇴역연금이 2017년 69,005명에서 2021년 75,064명으로 연평균 2.1% 증가하고 유족연금은 2017년 20,919명에서 2021년 23,241명으로 연평균 2.7% 증가하였다. 상이연금은 2017년 1,147명에서 2021년 1,149명을 기록하여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군인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수급자 수	퇴역연금	69,005	70,409	71,983	73,318	75,064	2.1
	유족연금	20,919	21,574	22,164	22,700	23,241	2.7
	상이연금	1,147	1,144	1,134	1,135	1,149	0
합 계		91,071	93,127	95,281	97,153	99,454	2.2

주: 2020년 분할연금 제도 신설로 퇴역연금 수급자 수에 분할연금 수급자 수 포함

자료: 국방부

군인연금의 운용체계는 「군인연금법」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기금운용관리 주체가 된다. 국방부장관 아래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심의·의결기구인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가 있고, 자산배분 및 변경과 장기자금의 투자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 자산운용위원회가 있다.

그 밖에 여유자금 운용의 성과평가를 위해 군인연금기금 성과평가위원회와 위험관리 전략 및 정책결정을 위해 군인연금기금 위험관리위원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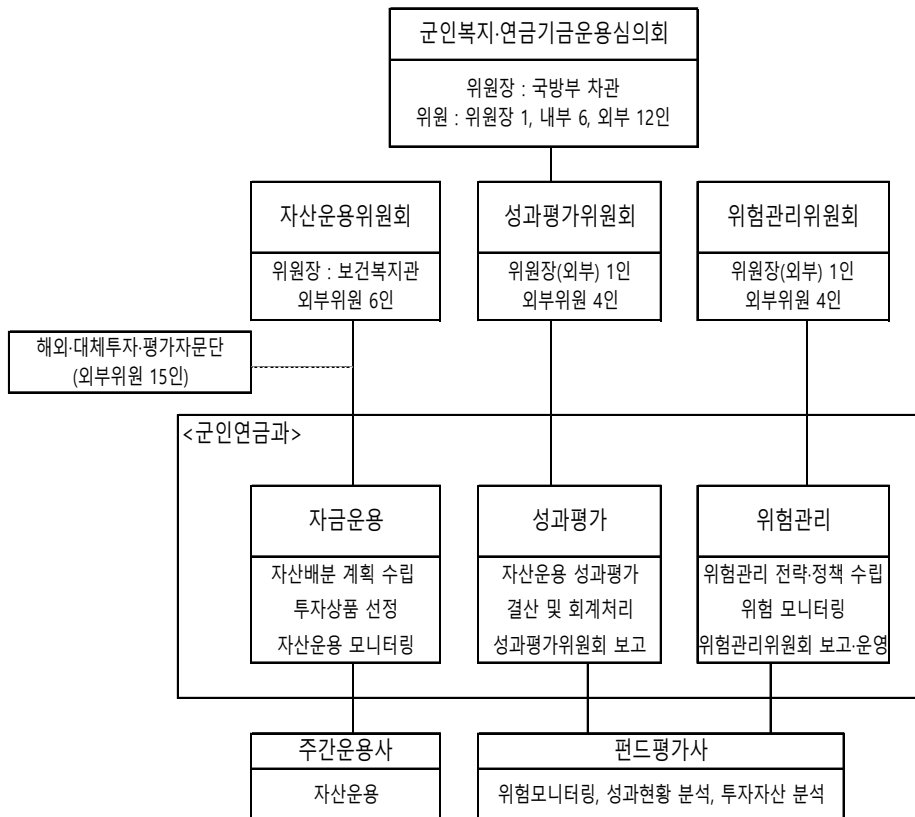
[기금의 자산운용 기구의 주요기능]

기구	주요기능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심의 ·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군인연금기금 자산운용위원회	· 자산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자산배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장기자금의 투자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군인연금기금 위험관리위원회	· 자산운용 현황 및 운용자산의 주요 변동사항 점검 · 위험관리 계획 수립 · 위험관리 전략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군인연금기금 성과평가위원회	· 성과평가 정책수립 · 여유자금 운용의 성과평가

기구	주요기능
군인연금기금 해외·대체투자·평가자 문단	· 해외·대체투자 : 신규 투자를 고려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 적정성 및 투자전략 등에 대한 자문 · 기금평가 : 기금운용평가, 기금존치평가 등 각종 평가에 대한 사전컨설팅, 지적 사항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
펀드평가사	·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 및 펀드 모니터링 · 위탁운용자산대상기관 평가 · 자산운용 컨설팅 등

자료: 군인연금기금 자산운용지침

[군인연금기금 운용 체계]



자료: 국방부

1-2. 지속적인 군인연금기금 보전금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가. 현 황

보전금이란 군인연금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군인연금법」 제45조에 따라 수지차보전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2021도 수입 계획액은 3조 5,430억 800만원이었으며, 이 중 3조 5,201억 9,100만원이 수납되었다.

[2021회계연도 군인연금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결산	2020결산	2021년			
			계획		결산(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군인연금기금 수입	3,381,323	3,467,261	3,543,008	3,543,008	3,520,191	99.4
보전금	1,574,008	1,577,855	1,601,186	1,601,186	1,601,186	100

자료: 국방부

군인연금기금 수입은 개인기여금, 국가부담금, 보전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개인기여금은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7%를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¹⁾ 국가부담금은 연금지급을 위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부사관 이상인 군인의 보수예산의 7%를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전출하고 있다.²⁾ 그 밖에도 국가부담금에는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전투가산부담금, 기금운영비 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타 수입에는 건물대여료, 이자수입 등이 포함된다.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 「군인연금법」 제42조(기여금) ① 군인은 군인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기여금을 내야 하며, 그 납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군인연금법」 제44조(부담금)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7퍼센트로 하며, 그 납부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군인연금기금은 자체수입(개인기여금, 국가부담금)만으로는 연금급여를 충당할 수 없어 「군인연금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국가가 보전하고 있다. 보전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결산 기준 보전금은 1조 6,012억원으로 전체 군인연금기금 수입의 45.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군인연금 수입원천별 결산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총수입	자체세입		국가부담금		보전금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1	23,560	3,521	15.0	7,773	33.0	12,266	52.0
2012	25,674	4,010	15.6	9,164	35.7	12,500	48.7
2013	27,436	4,855	17.7	8,889	32.4	13,692	49.9
2014	28,561	5,265	18.4	9,563	33.5	13,733	48.1
2015	28,556	5,229	18.3	9,896	34.6	13,431	47.1
2016	29,580	5,587	18.9	10,328	34.9	13,665	46.2
2017	31,011	5,965	19.2	10,389	33.5	14,657	47.3
2018	32,327	6,251	19.3	10,976	33.9	15,100	46.7
2019	33,813	6,536	19.3	11,537	34.1	15,740	46.5
2020	34,673	6,847	19.7	12,047	34.7	15,779	45.5
2021	35,202	7,020	19.9	12,170	34.6	16,012	45.5
연평균 증가율	4.1	10.6		4.6		2.7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첫째,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보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기초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고갈에 따른 국가보전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은 3조 2,400억원,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은 1조 6,012억원 규모이다. 최근 5년간 보전금 규모를 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5년도 연금 개혁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전금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고, 군인연금의 경우 동일 기간 동안 보전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보전금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무원연금	22,820	22,806	20,563	25,644	32,400
군인연금	14,657	15,100	15,740	15,779	16,012

자료: 인사혁신처, 국방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2015년 보험료율을 9%로 인상하고 급여 지급율을 1.7%까지 인하하는 제도개편을 실시하였다. 반면, 군인연금은 2013년 제도개편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였지만, 다른 직역연금보다 낮은 7%로 유지하고 있으며 급여 지급율에 대해서는 개편을 실시하지 않아 1.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직역연금 제도개편 현황]

구분	개편연도	주요내용
공무원연금	2015년	· 보험료율 인상(7.0→9%) · 급여 지급율 인하(1.9→1.7%) · 지급개시연령 단계적 상향(60세→65세))
군인연금	2013년	· 보험료율 인상(5.5→7%)
사학연금	2015년	· 보험료율 인상(7→9%) · 급여 지급율 인하(1.9→1.7%)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교육부

이에 따라 2021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9%이고, 군인연금의 기여율은 7%로, 평균 퇴직연금액은 공무원연금이 월 242만원인 데 비하여 군인연금은 월 282만원이다.

군인연금이 타 공적연금에 비해 제도개편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2013년 7월 제도개편이후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 남북 대치의 안보상황 하에서 군 인적자원의 획득 및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주요 선진국의 군인연금의 경우 군복무 특수성을 인정하여 기여금 면제 등 타 공적연금과 우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제도 비교: 2021년 기준]

항목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기여율	9%	7%
평균 기여금(월)	44만원	29.7만원
평균 퇴직연금액(월)	242만원	282만원

자료: 공무원연금공단(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의 평균연금), 국방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전출되는 보전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유지되어 국가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기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기타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군인연금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유자금 운용 현황을 보면 2021년도 기금운용 수익률은 공무원연금이 8.1%인데 비해 군인연금은 3.16%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무원연금	적립금	82,941	99,129	96,379	92,109	93,282
	수익률	6.8	△1.7	8.0	9.6	8.1
군인연금	적립금	9,871	10,377	10,587	11,403	11,837
	수익률	2.99	△2.06	6.07	3.24	3.16

주: 운용규모는 연간 평균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국방부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을 근거로, 향후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보전금 규모)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GDP 대비 비중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실질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인력구조 재설계³⁾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하게 재정수지를 추계한 후 제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군 인력구조 개편 등을 반영하여 군인연금의 향후 재정 상황을 전망할 필요가 있으며 그를 기초로 기여율 및 수급연령 조정 등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군인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전금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국방개혁2.0에 따르면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며,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위하여 장교와 부사관을 증원할 계획이다.

[군인연금 장기재정전망]

(단위: 억원, %)

연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GDP 대비
2020	18,412	36,055	17,643	0.18
2025	21,632	45,279	23,647	0.19
2030	24,041	55,718	31,677	0.19
2035	26,709	67,190	40,481	0.50
2040	29,616	79,984	50,368	0.21
2045	32,870	94,050	61,180	0.22
2050	36,429	109,504	73,075	0.23
2055	40,250	126,487	86,237	0.23
2060	44,423	145,263	100,840	0.24

자료: 국방부

둘째, 공무원연금과 같이 국가보전금의 잉여금 부분에 대해 다음 국가보전금의 편성 시 감액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전금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 지출을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액을 보전하는 것이지만, 두 연금 간 국가보전금 산정 및 정산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가보전금 산정시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수입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군인연금은 기금운용수익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전금은 보험료 수입 등 기금수입에서 연금급여 등 지출을 차감하여 그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모두 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해 기금운용수익의 사용을 제한하였으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보전금 절감을 위해 기금운용수익의 일부를 국가보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21조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국가보전금 산정시 기금수입에 기금운용수익금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군인연금의 경우 「군인연금법」 제45조를 근거로 국가보전금 산정시 기금수입에 기금운용수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4) 2013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수익을 반씩 나누어 절반은 공단에 적자 보전으로 전입하고 절반은 지불준비금으로 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하였다.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국가보전금 산정기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정	산정 기준	- 경상비지출(연금지급금+기금운영비) - 경상비수입(경상이전수입+국가부담금+기금운용수익금) - 기금운용수익금=[기금운용수익 - (유형자산평가이익+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 × 전입률⁵⁾	경상비지출(연금지급금+기금운영비) - 경상비수입(경상이전수입+국가부담금)
	법적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21조 제2항 및 제71조 제8항⁶⁾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 기준」인사처 지침	「군인연금법」 제45조 ⁷⁾
정산	정산 방법	보전금을 과소추계하여 부족할 경우 차차년도(원금) 정산, 과다추계하였을 경우 기금으로 적립하고 차차년도에 적게 받음	보전금을 과소추계하여 부족할 경우 차차년도(원금) 정산, 과다추계하였을 경우 기금으로 적립(정산하지 않음)
	법적 근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7조 ⁸⁾	「군인연금법」 제48조 ⁹⁾

자료: 인사혁신처, 국방부

- 5) 기금운용수익금 중 기금수입 포함 비율은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에 따라 0~50%이다.
- 6) 「공무원연금법」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 ②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⑧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제1항 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 7) 「군인연금법」 제45조(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 8)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②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급여총액"이라 한다)의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2. 전전년도의 기여금·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전전년도의 기여금·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보다 부족한 금액
- 9) 「군인연금법」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국가는 군인연금제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2021년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은 3조 2,576억원이며, 이 중 기금운용수익금 3,463억원이 수입에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 중 기금운용수익금]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가보전금	22,820	22,806	20,563	25,644	32,400	32,576
기금운용수익금	1,002	0	2,508	0	992	3,463

주: 기금운용수익금은 기금운용수익 중 일부를 보전금에 충당한 금액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 산정 시 기금운용수익을 수입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국가보전금이 남을 경우 결산상 잉여금을 책임준비금으로 간주하여 군인연금기금에 적립하고 있다.¹⁰⁾ 군인연금이 2017~2020년 동안 추가로 더 지원받은 국가보전금은 694억원 규모이다.

[군인연금 국고보전금 계획 및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 및 집행	실집행		결산상 잉여금
		금액	실집행률	
2017	1,452,326	1,430,692	98.5	21,634
2018	1,510,000	1,497,990	99.2	12,010
2019	1,574,008	1,557,299	98.9	16,709
2020	1,577,855	1,558,745	98.8	19,110
2021	1,601,186	1,614,047	100.8	△12,861

자료: 국방부

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다음다음 연도 보전금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10) 국가보전금을 과소 편성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차차년도에도 부족액만큼 더 받는다. 2021년 128억원이 부족했으며 이는 2023년도 예산 요구 시 국가보전금에 포함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결산상 잉여금(아래표 잔액)은 각각 216억원, 120억원, 167억원, 191억원 규모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기금에 적립되어 금융자산 등에 투자되었다. 다만 2021년의 경우에만 연금급여 부족분으로 기금 적립금에서 약 129억원이 집행되었다.

[최근 5년간 군인연금 자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상수입 등(a)	16,353	17,227	18,073	18,894	19,190
국가보전금(b)	14,523	15,100	15,740	15,779	16,012
총수입(a+b=c)	30,876	32,327	33,813	34,673	35,202
총지출(d)	30,660	32,207	33,646	34,482	35,331
잔액(c-d=e)	216	120	167	191	△129
자산 평가이익(f)	295	132	668	398	622
자산 합계(g=h+i)	11,676	11,623	12,444	13,017	13,483
금융자산(h)	8,889	8,846	9,686	10,269	10,523
부동산 자산 등(i)	2,787	2,777	2,758	2,748	2,960

주: 자산 현황은 기말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방부

결산상 잉여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1960년도 제도 도입 시기부터 6.25전쟁 등으로 연금수급자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IMF 구제금융 시기 이후의 기금적립금 사용 후 미보전 등으로 기금의 고갈은 더욱 심화됨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2016년에 군인연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책임준비금으로서 최소한 6개월분의 연금지출액이 적립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¹¹⁾ 국방부는 연금지급금의 6개월분(1조 7,663억 6,000만원¹²⁾) 이상이 적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6개월분 달성한 후에 결산잉여금의 규모를 감안한 보전금 규모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인연금법」 제45조는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전금이 남을 경우 정산하는 것이 법 취지에 타당하다.¹³⁾

다만, 국방부의 입장대로 6개월분 달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재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고,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이를 충당하기에는 약 18.8년이 소요¹⁴⁾되는 등 당분간 현행법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법 취지에 따라 국가보전금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국가보전금 편성 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연금지급 급여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군인연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 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¹⁵⁾

11) 한국사회보험연구소, 「군인연금기금 책임준비금의 적정 규모 기준 설정 연구」, 2016

12) 2021년 기준 군인연금 지출액은 3조 5,327억 2,000만원으로 월평균 지출액은 2,943억 9,300만원이다.

13) 그 밖에 「군인연금법」 제48조제2항의 개정 취지는 여유자산운용수익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남은 국가보전금을 결산상 잉여금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4) 국방부는 2021년 결산기준 재산수입(222억 2,100만원, 기금운용수익포함)으로 연금지급금 6개월분까지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향후 약 18.8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15) 앞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국가보전금은 전전년도의 기여금·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제외하고 있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1-3. 해외투자금 손실 발생에 따른 투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

가. 현 황

군인연금기금 여유자금¹⁶⁾은 2021년 기준 1조 1,837억원으로, 이 중 99.4%인 1조 1,760억원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도입된 연기금투자풀에, 0.6%인 76억원은 기타자산에 배분되어 있다.

연기금투자풀¹⁷⁾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 관리주체가 위탁하는 여유자금을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는 투자체제로, 2020년말 기준 위탁금액은 25조 6,987억원이며, 위탁기관은 70개로 이 중 61개는 기금이고, 9개는 공공기관이다.

연기금투자풀은 상위펀드(통합펀드)에 하위펀드(개별펀드)를 자산으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재간접투자(Fund of funds)방식으로 운영되고, 유형은 크게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주식과 채권), MMF(단기금융펀드)가 있다.

군인연금기금은 타 기금이 투자되지 않는 단독 통합펀드로, 혼합형 펀드이면서 단독 수익자 펀드이다.

16) 군인연금기금의 금융자산 연중 운용평잔을 의미한다.

17)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 관리주체가 위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자료: 연기금투자플 홈페이지

나. 분석의견

기타자산에서 해외 투자금 손실 발생 후 장기간 회수조치가 미흡하므로 현지 담보물 처분 등 투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군인연금기금은 2021회계연도 기준 약 1조 1,760억원이 연기금투자플에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군인연금기금 수익률을 보면, 2017년 2.99%에서 2018년 △2.06%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다가 2019년 6%로 반등한 후에 2021년까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군인연금기금 수익률]

(단위: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익률	2.99	△2.06	6.07	3.24	3.16

자료: 국방부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연기금투자율은 2019년 6.06%에서 2021년 3.17%로 수익률은 줄고 있고, 기타자산의 경우 2021년 기준 수익률은 △0.03%를 기록하였다.

[최근 3년간 연기금투자율 및 기타자산 수익률]

(단위: 백만원, %)

구분(보유비중)	2019	2020	2021
연기금투자율 금액	1,048,996(99.1)	1,132,262(99.3)	1,176,133(99.4)
수익률	6.06	3.26	3.17
기타자산금액	9,659(0.9)	8,065(0.7)	7,626(0.6)
수익률	6.95	1.68	△0.03
계	1,058,655(100)	1,140,328(100)	1,183,759(100)
전체 수익률	6.07	3.24	3.16

자료: 국방부

한편, 군인연금 수익률을 최근 3년간 전통자산¹⁸⁾(주식, 채권, 현금성 단기자산 등) 및 대체투자(부동산 투자 등)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전통자산의 경우 벤치마크¹⁹⁾ 대비 초과수익률은 2019년, 2020년 및 2021년에는 각각 △0.44%p, △0.08%p, 0.02%p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통자산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현황]

(단위: %, %p)

평가기준일	전통자산 수익률	벤치마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
2019년말	6.53	6.97	△0.44
2020년말	3.42	3.50	△0.08
2021년말	3.18	3.16	0.02

자료: 국방부

18) 전통자산은 확정금리,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국내채권형, 해외채권형 포함한 자산을 말한다.

19) 3개월 미만은 연기금투자율 업계 MMF 평균수익률, 3개월~1년 미만은 KIS국고채권(6~12개월), 중장기는 투자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한국은행 정기예금금리, 매경BP종합채권, KOSPI TR 50%, +KOSPI200 TR50% 등)한다.

대체투자의 경우 벤치마크²⁰⁾ 대비 초과수익률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7.31%p, △0.14%p, △3.72%p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체투자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현황]

(단위: %, %p)

평가기준일	대체투자 수익률	벤치마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
2019년말	16.36	9.05	7.31
2020년말	2.04	1.90	△0.14
2021년말	0.78	4.50	△3.72

자료: 국방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타자산 및 대체투자의 수익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2007년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및 한국교직원공제회²¹⁾가 함께 투자한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 리조트 개발사업²²⁾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국방부 100억원, 공무원연금공단 150억원 등²³⁾ 총 400억원을 투자한 사업이었으나, 현지 시행사가 펀드자금 횡령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2011년 국방부 등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국내 모집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년 법원은 현장에 담보물이 존재하고 담보물 처분 가액이 손해배상액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를 처분하여 보전하라는 취지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국방부는 100억원 중 약 44억 7,9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1심 패소 후 다른 투자자와 함께 항소²⁴⁾하여 자산운용사 측에 담보물 매각

20) 상품은 S&P GSCI TR, 국내부동산은 오피스빌딩 투자수익률, 해외부동산은 OECD CPI 상승률 5년 평균 + α

21)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 더케이손해보험이 투자하였다. 현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일부 지분만을 남겨 놓고 더케이손해보험을 2020년에 하나금융그룹에 매각한 상태이다.

22) 마이애셋 사모 샹포더발리 부동산투자신탁(상품명)

23) 그 외에 새마을금고 100억원, 더케이손해보험(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였다가 2020년 일부 지분을 남겨놓고 하나금융그룹에 매각되었다)이 50억원을 투자하였다.

24) 2014년 8월에 항소하였다.

절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타 투자자와 함께 현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인도네시아에 경매절차를 신청한 상태이나 코로나19로 현지 법원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2022년 다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7년 동 상품에 투자한 후에 1심 판결이 2014년 7월에 내려졌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담보물 처분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원고와 피고 간의 협상시도가 있었으나 입장차이로 결렬되었고,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의 업무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의 재정운영 건전성 차원에서 국방부는 투자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¹⁾는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국군수도병원 진료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액 450억 5,800만원 중 337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103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군수도 병원 사업 및 지원비	45,058	45,058	1,402	△6	46,454	33,786	2,335	10,333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국군수도병원 내에 건립한 국군외상센터는 총상, 폭발창 등 군 외상환자 진료 및 전시 대비 필수 분야인 외상 진료능력을 확보하고 군 환자 외에 민간 외상환자도 진료함으로써 공공의료 영역인 외상분야 의료서비스 제공확대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센터이다.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건물연면적은 11,169㎡(지하1층, 지상 1~2층 및 옥탑층)이고, 주요 시설은 외상병동 40병상, 외상중환자실 20병상, 외상수술실 2개실 등이다.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3735-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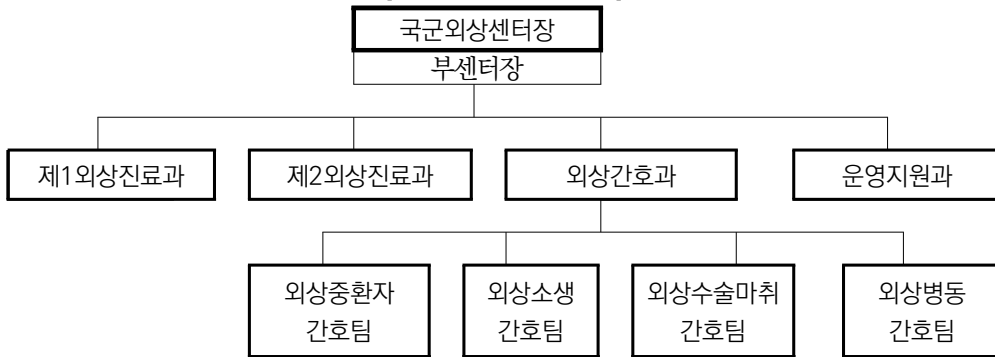
[국군외상센터 개요]

구 분	내 용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내
연면적 등	11,169㎡ (3,319평, 지하1층, 지상 1~2층, 옥탑층), 총사업비 486억원
시설	외상병동 40병상, 외상중환자실 20병상, 외상수술실 2개실
사업연혁	기본 및 실시설계(2017), 공사(2017~2020.3)

자료: 국방부

국군외상센터의 조직 및 인력규모는 4개과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사 13명 (센터장²) 포함, 간호사 61명, 보건직 30명, 행정직 16명 등 총 정원은 120명이다.

[국군외상센터 조직도]



자료: 국방부

[국군외상센터 인력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군인력		
			정원	현원	결원
센터장			1	1	0
군인	외과	외상외과	3	3	0
		일반외과	2	2	0
	정형외과		2	2	0
	응급의학과		1	1	0
	흉부외과		1	1	0
	신경외과		1	1	0
	마취과		1	1	0
	영상의학과		1	1	0

2) 센터장은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채용되며, 임기는 최대 3년이다.

구분	군인력		
	정원	현원	결원
간호사	61	32	29
보건직	30	21	9
행정직	16	15	1
계	120	81	39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군외상센터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민간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군외상센터의 법인화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군외상센터의 건립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2011년 10월에 처음 국군중증외상센터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 3월에는 동 센터를 준공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2년 4월에 비로소 개소하였다.

[국군외상센터 건립 진행 과정]

2011년 10월 5일 : 국군중증외상센터 설립 추진계획 수립
2012년 4월 : A대학병원과 MOU체결
2013년 10월 : 국군외상센터 설립 계획보고(150병상/1,000억원)
2016년 4월 : 국군외상센터 설립 계획 수정보고(60병상, 497억원)
2017년 12월 26일 : 국군외상센터 시설공사 설계 완료/계약 체결
2020년 3월 5일 : 국군외상센터 준공
2020년 9월 7일 ~ 2021년 5월 30일 : 1차 국가감염병전담병원 지정
2021.8.23. ~ 2022. 4.18 : 2차 국가감염병전담병원 지정
2022년 4월 20일 : 국군외상센터 개소 및 B대학병원과 MOU체결

자료: 국방부

그러나 2022년 4월 국군외상센터 개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부터 추진된 A대학병원과 민간 의료 인력 파견 등에 대한 논의는 위탁운영방식, 법인화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듯 국가감염병전담병원지정과 민간 협력체계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이미 구입된 의료장비³⁾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2021년 국군외상센터 위탁사

업비 83억 6,400만원 중 5억 3,100만원은 타 사업으로 이·전용되었고 78억 3,300만원은 집행되지 못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 사업	본예산	이·전용등	집행액	불용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	국군외상센터 위탁사업비	8,364	△531	0	7,833
	국군외상센터의료진실무위 탁교육비	30	0	30	0
	국군외상센터시물레이션센 터운영비	22	0	22	0
	국군외상센터운영비	12	0	6	6
	계	8,428	531	58	7,839

자료: 국방부

또한 2022년 제2회 추경에서는 국군외상센터 운영비 52억 6,300만원 중 20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다.

현재 국방부(국군수도병원)는 2022년 4월에 B대학병원과 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간 외상 외과 전문의 지원 등 다각적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에 있다.

[민간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사항 비교]

구 분	A대학병원	B대학병원
운영방식	위임·위탁 및 용역계약	용역계약
급여수준	A대학병원 내부규정에 따름 (교육훈련비, 수당 등 모두 포함)	예산범위 내에서 B대학병원 내부규정에 따름(협약 중)
병원에 요청한 인력 규모	외상분야 의사 5명, 간호사 30명	외상분야 의사 ○명
진행상황	협약 중단	논의 중

자료: 국방부

- 3) 국군외상센터는 2019년에 의무장비 인공호흡기 이동식(MR용) 구입 등 258대(약 76억 4,500만원), 2020년 수술대 등 182대(약 41억 5,700만원), 2021년 혈관조영-전산화단층촬영기 등 3대(약 28억 6,700만원)를 획득한 상태이다.

국군외상센터의 설립취지는 총상, 폭발상 등 군 외상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및 전시 대비 필수 분야인 외상 진료능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민간 외상환자도 진료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민간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국방부는 민간의 우수한 외상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센터 내 군 의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진료의 전문성을 조직에 내재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국방부는 숙련된 군의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하여 장기복무연장 지원수당을 신설하고, 위탁교육으로 양성한 장기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9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군인사법」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용역계약을 통한 민간의료인력 확충과 군의관 보수수준을 상향하려는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우려된다.

첫째, 용역계약을 통한 민간의료 인력을 한시적으로 충원하고 이를 통해 군의관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군의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수당 인상을 통해 보수수준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나 한정된 국가예산을 고려할 때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본급 인상인 아닌 수당 인상만으로는 유인책이 약할 수 있다.

셋째, 용역계약을 통한 운용 방식은 일방의 계약해지 및 계약 연장불가 등으로 국군외상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의료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국군외상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군외상센터를 별도 법인화하여 전문성있는 의료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유사한 사례로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 제27조⁵⁾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국립암센터 보수규정」을 통해 공무원과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갖추으로써 우수한 민간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2022. 5. 9.)

5)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생략)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훈령」 제4편 제5장에는 군 자살 예방 규정을 두어 자살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단계적으로 규정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자살 고위험군을 식별하고 이를 관리·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식별-관리-분리”의 단계적 접근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살위험군에 대한 단계별 접근 조치를 살펴보면, 먼저 식별단계는 인성검사 및 자살예방교관 등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해 식별하고, 관리단계는 정신과 치료, 고충상담 및 그린캠프 입소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분리단계는 부대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의심되는 병사 또는 그린캠프에서 입소한 병사 중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병사를 대상으로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병역심사관리대에 편입시키고 외부 임상심리사의 심리검사를 거쳐 정신건강을 판별한다. 정신건강 판별 후 정신건강으로 군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병사는 각 군 본부 등에 설치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자대복귀 또는 전역 처분을 하게 된다.

[군 병사에 대한 단계별 자살예방조치]

식 별	관 리	분 리
◦관찰 및 면담 * 개인생활지도기록부 ◦인성검사 ◦전문교관 자살예방교육 * 전문교관 운영 * 장병Gate-Keeper화	◦상담관 및 군종장교 상담 ◦도움·배려 병사 분류 ◦그린캠프 운영(육·해군) ◦정신과 군의관 상담 및 진단 ◦군병원 입원 및 치료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 ◦병역심사관리대 운영 ◦전역심사위원회

자료: 국방부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제232조의2(생명존중의 문화 조성) 등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조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장병 정신건강 관련 사업으로 크게 장병복무적응지원 사업과 진료 지원 사업²⁾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장병복무적응지원 사업 중 정신건강 관련 내역사업은 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인성검사, ② 자살예방전문교관 양성, ③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④ 심리상담지원, ⑤ 그린캠프 사업 등이 있고, 2021년도 예산현액 321억 3,800만원 중 315억 2,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사업과 그린캠프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진료지원 사업 중 정신건강 관련 내역사업은 ① 군병원내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인근로자 인건비, ② 정신건강실태조사, ③ 정신건강활동지원 사업이 있고, 2021년도 예산현액 6억 1,100만원 중 5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군병원내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인근로자 인건비와 정신건강실태조사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도 군 장병 정신건강 관련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병복무적응지원	인성검사	22	22	0	22	22	0
	자살예방전문교관 양성	232	232	△134	98	87	11
	병영생활전문상담관	31,500	31,500	△594	30,906	30,437	470
	심리상담						
	민간심리상담지원	65	65	34	99	99	0
	그린캠프	1,079	1,079	△516	563	535	28
	병역심사관리대	490	490	△220	270	244	26
	국방헬프콜 통산비 및 홍보비	180	180	0	180	180	0
	계	33,568	33,568	△1,430	32,138	31,604	535

2) 코드: 일반회계 2439-304(장병복무지원), 2231-301(진료지원)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진료 지원	군병원내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인근로자	417	417	0	417	344	73
	정신건강실태 조사	105	105	0	105	100	5
	정신건강활동 지원	89	89	0	89	72	17
	계	611	611	0	611	516	95

자료: 국방부

최근 3년간 군 장병 정신건강실태조사³⁾ 주요결과를 보면, 우울증 유병률은 병사의 경우 2019년 7.8%, 2020년 8.7%, 2021년 6.0%로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부의 경우 2019년 3.0%에서 2020년 6.5%로 높아졌다가 2021년 4.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위험성 유병률은 병사와 간부의 경우 각각 2019년 4.1%, 2.3%, 2020년 4.0%, 2.1%, 2021년 2.9%, 1.6%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정신건강실태조사 조사영역별 유병률]

조사영역	병사			간부		
	2019 유병률(%) (n=1975)	2020 유병률(%) (n=1852)	2021 유병률(%) (n=1974)	2019 유병률(%) (n=987)	2020 유병률(%) (n=878)	2021 유병률(%) (n=1008)
담배 의존문제	15.0	13.8	14.2	16.2	16.6	14.7
알코올 사용문제	4.4	3.3	1.8	6.6	8.2	4.5
신체증상	9.1	7.0	6.2	4.2	3.3	3.4
불면증	9.9	9.7	7.2	5.3	5.5	4.0
불안	4.0	4.0	3.1	1.5	1.8	1.8

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년 군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조사영역	병사			간부		
	2019 유병률(%) (n=1975)	2020 유병률(%) (n=1852)	2021 유병률(%) (n=1974)	2019 유병률(%) (n=987)	2020 유병률(%) (n=878)	2021 유병률(%) (n=1008)
상호작용불 안	3.7	4.2	3.3	1.3	1.8	0.7
우울증	7.8	8.7	6.0	3.0	6.5	4.3
자살위험성	4.1	4.0	2.9	2.3	2.1	1.6
외상후 스트레스증상	0	0	8.0	0	0	2.5
코로나19 불안	0	0	4.7	0	0	4.0

자료: 국방부

그런데, 최근 5년간 군인 자살률 살펴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 2017년 51명에서 2021년 83명까지 자살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고 2021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41명이 늘어난 97.6%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사 자살자 수는 2017년 17명에서 2019년 27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1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는 25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간부 자살자는 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4~35명 수준이었다가 2020년 27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58명으로 전년 대비 31명이 늘어난 114.8%가 증가하였다.

한편, 최근 5년간 군 간부와 병사의 자살자 수 비중은 매년 간부의 자살자 비중이 병사보다 높았고, 2019년 56.4%에서 2020년 64.2%, 2021년 70%로 상승 추세에 있는 등 군 간부의 자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인 자살률 현황]

(단위: 명, %)

구 분	'17	'18	'19	'20	'21
자살자 수	51	56	62	42	83
10만명당 자살률 ¹⁾	8.0	8.7	9.7	7.1	14.1
간부 자살자 수 ²⁾ (비중)	34(66.6)	35(62.5)	35(56.4)	27(64.2)	58(70)
병 자살자 수(비중)	17(33.3)	21(37.5)	27(43.5)	15(35.7)	25(30)

주: 1) 참고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7명으로 OECD 국가(평균 10만명당 11명) 중 1위임

2) 5년 이하 초임간부 자살자수는 2017년 14명, 2018년 12명, 2019년 10명, 2020년 7명, 2021년 22명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 국방부

또한, 최근 3년간 병사의 정신질환 등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군별 전역처분건수를 보면, 각 군 모두 신체질환 보다 정신질환 등에 기인한 전역처분건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현황]

(단위: 건, %)

구분	연도	전역처분건수	전역 처분 사유(비중)	
			정신질환 등 복무부적응	신체질환
육군	2019	5,762	4,602(79.9)	1,160(20.1)
	2020	5,457	4,447(81.4)	1,010(18.5)
	2021	4,549	3,774(83.0)	775(17.0)
	계	15,768	12,823(81.3)	2,945(18.7)
해군	2019	117	92(78.6)	25(21.3)
	2020	138	123(89.1)	15(10.9)
	2021	165	135(81.8)	30(18.2)
	계	420	350(83.3)	70(16.7)
공군	2019	149	100(67.1)	49(32.9)
	2020	214	163(76.2)	51(23.8)
	2021	193	151(78.2)	42(21.8)
	계	556	414(74.5)	142(25.5)
해병대	2019	174	128(73.6)	46(26.4)
	2020	238	153(64.3)	85(35.7)
	2021	206	164(79.6)	42(20.4)
	계	618	445(72.0)	173(28.0)

자료: 국방부

3-1. 군 장병 정신건강 관련 지속적인 사업추진 필요

가. 현 황

2021년도 기준 군 장병 정신건강 관련 사업 중 집행률이 50%이하인 내역사업은 ① 그린캠프, ② 병역심사관리대, ③ 자살예방전문교관 양성 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의 예산현액은 총 18억 100만원으로 이 중 8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21년도 군 장병 정신건강 관련 집행을 저조사업(집행률 50%이하)]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장병복무 적응지원	그린캠프	1,079	535	49.5
	병역심사관리대	490	244	49.8
	자살예방전문교관 양성	232	87	37.5
	계	1,801	866	48.1

자료: 국방부

그린캠프 사업은 심리적 어려움 등을 겪는 장병을 대상으로 그린캠프 입소 후 외부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심리치유 등을 통해 자대복귀(복무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군 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병역심사관리대 사업은 그린캠프에 입소한 후에도 회복의 여지가 없는 병사나 각 부대에서 정신건강이 의심되는 병사를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병역심사관리대에 편입시켜고 외부 임상심리사로 하여금 서면 심리검사를 받게 하는 사업이다.

그 밖에 자살예방전문교관 양성 사업은 군 간부를 자살예방 전문교관으로 양성하고 동 교관이 소속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¹⁾

1) 2022년 6월 기준 육군 1,404명, 공군 292명, 해군 181명, 해병대 130명 등 2,007명이 지정되었다.

나. 분석의견

군장병의 정신건강정신건강 관련 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타 사업 재원으로 집행함에 따라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련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0~2021년간 그린캠프 등 3개의 내역사업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그린캠프 사업의 경우 2020년도 10억 7,900만원 중 6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3,1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2021년도 10억 7,900만원 중 5억 1,600만원은 타 내역사업으로 세목조정되었다.

병역심사관리대 사업은 2020년도 4억 8,900만원 중 2억 5,5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 3,4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2021년도 4억 9,0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은 타 내역사업으로 세목조정되었다.

자살예방교관 양성 사업은 2020년도 2억 3,200만원 중 1억 5,100만원이 집행되었고 8,1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2021년도 2억 3,200만원 중 1억 3,400만원은 타 내역사업에 세목조정되는 등 3개의 내역사업은 2020년도에는 불용이, 2021년에는 타 사업으로 세목조정되어 집행되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상기 사업들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0~2021년 기간에 세목조정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집행이 저조하여 불용되거나 타 사업 재원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2017~2021년 그린캠프 등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A)	집행액(B)	불용액(A-B)
그린캠프	2017	766	156 (이월)	922	920	2
	2018	766		766	758	8
	2019	1,079		1,079	1,059	20
	2020	1,079		1,079	648	431
	2021	1,079	△516 (세목조정)	563	535	28
병역심사 관리대	2017	75		75	75	0
	2018	75		75	75	0
	2019	490		490	394	96

사업명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A)	집행액(B)	불용액(A-B)
	2020	489		489	255	234
	2021	490	△220 (세목조정)	270	244	26
자살예방교 관 양성	2017	177		177	165	12
	2018	191		191	185	6
	2019	151		151	151	0
	2020	232		232	151	81
	2021	232	△134 (세목조정)	98	87	11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방역 지침에 따라 외부강사 및 외부 심리검사인원의 부대출입이 제한되어 해당 예산의 집행이 어려웠으나, 내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의한 개인상담 및 심리검 등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높아지는 군 내 자살률과 코로나우울 등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군 장병의 정신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비대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군 장병의 정신건강 관련 사업 예산이 타 사업의 소요재원으로 쓰이기 보다는 군장병의 정신건강 관련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2. 장병 정신건강의 실태조사 내실화 필요

가. 현 황

정신건강실태조사 사업은 군 정신보건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군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2021년 예산현액 1억 500만원 중 1억원을 집행하였다.

[2021년도 군 장병 정신건강 관련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진료지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105	100	95.2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군 내 정신건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표본 및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¹⁾ 및 시행령 제11조는 국방부가 군 정신건강 실태에 대해 매년 1회씩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수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정기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병사 2,000명 및 군 간부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으로 부대 방문 등에 의한 설문조사와 국방의료정보체계 등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자료조사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태조사 방법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은 병사와 초급간부(5년 이하)

1)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표본크기는 병사의 경우 2018년을 제외하고 전체 군 편제병력의 0.42%인 2,000명을 표본으로 삼았으며, 초급간부는 2019년부터 1,000명으로 확대한 후에 2021년까지 1,0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정신건강 실태 조사방법 현황]

연도	대상	표본크기	설문방법	응답인원/응답률
2017	병사	2,000명 (전체 군 편제병력의 0.42%)	직접설문 ²⁾	1,993명(99.7%)
	초급간부	500명		416명(83.2%)
2018	병사	3,500명 (전체 군 편제병력의 0.74%)	직접설문	3,441명(98.3%)
	초급간부	500명		497명(99.4%)
2019	병사	2,000명 (전체 군 편제병력의 0.42%)	직접설문	1,975명(98.8%)
	초급간부	1,000명		987명(98.7%)
2020	병사	2,000명 (전체 군 편제병력의 0.42%)	직접설문	1,852명(92.6%)
	초급간부	1,000명		878명(87.8%)
2021	병사	2,000명 (전체 군 편제병력의 0.42%)	직접설문, 간부협조를 통한 설문 ³⁾	1,974명(98.7%)
	초급간부	1,000명		1,008명(100.8%)

자료: 군 장병 정신건강 실태 조사(서울대학교병원, 군 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 2021년)

그런데 현재의 실태조사는 정신건강이 취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군 내 특정집단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표본의 크기가 작아 대표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등 장병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군 장병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내실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직접 설문은 조사원이 조사대상 부대에 방문하여 특정한 장소에 설문대상자를 모아서 설문을 진행하는 것이다.

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사원에 의한 직접 설문이 제한되는 경우, 부대별 협조간부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고 설문 집행방법을 교육한 뒤에 협조간부가 진행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를 일반장병의 실태조사 외에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대상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추가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전군 병사 및 초급간부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⁴⁾하여 산정함에 따라 군 내 다양한 집단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태조사의 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표본크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병사의 경우 전체 군 편제병력의 약 0.42% 수준이며 전체 군 간부⁵⁾의 약 0.53%, 초급간부의 약 1% 수준으로 모집단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군 장병 정신건강 실태보고서에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으므로 표본크기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실태조사가 내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로 이루어진 자료들이 군장병의 정신건강증진정책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각 군의 병사들을 포함하기 위하여 육, 해, 공군, 해병대로 층화를 하고, 육군은 부대유형 내에서 사단, 대대, 중대 또는 소대로, 해군은 함대 내에서 해상 근무인원은 배단위로, 공군은 3개 대표 부대유형내 부대 2단계, 해병대는 부대유형 내에서 대대, 소대 단위로 2단계로 집락화하였다.

5) 군간부(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의 인력은 약 18만 8,000명이고, 초급간부(중위, 소위, 중사, 하사)의 인력은 약 9만 4,000명이다.

3-3. 군간부를 위한 심리상담 제도 보완 및 강화 필요

가. 현 황

군 장병들의 심리지원 사업으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사업과 민간심리상담지원 사업이 있으며 국방부는 2021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사업 예산현액 315억원 중 304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심리 상담지원 사업 예산현액 6,500만원 중 9,9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1년도 군 장병 정신건강 관련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장병복무 적응지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31,500	30,437	96.6
	민간심리 상담지원	65	991)	152.3

자료: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사업은 복무부적응, 자살우려자 등 심리상담이 필요한 전 군인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민간심리 상담지원 사업은 군 내부 심리상담을 어려워하는 군 간부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심리 상담지원 프로그램²⁾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 분석의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한 군 간부의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이용이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상담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같은 세부사업 내 군내 다문화가정 격려사업에서 3,4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민간심리 상담지원 사업 부족분을 집행하였다.

2) 국방부는 매년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심리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군 간부는 익명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³⁾에 따라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부대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정원 660명으로 이 중 육군 478명, 해군 39명, 공군 46명, 해병대 33명 국직부대 39명 등 635명⁴⁾이 배치되어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현황(2021년 12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국직부대
정원	660	502	40	46	33	39
현원	635	478	39	46	33	39

자료: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특정자격⁵⁾을 갖춘 기간제근로자로 5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공무원 근로자로 전환되고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군인 및 장기복무 군인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복무부적응을 겪고 있는 장병에 대한 대면상담·심리상담, 자살예방교관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전문상담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둔다.

4) 이 중 국방헬프콜 상담인력 21명(24시간 365일 1일 4교대)이 포함되어 있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임무)]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군인 및 장기복무 군인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그 밖에 상담과 관련하여 지휘관이 부여한 업무 수행
2. 복무부적응을 겪고 있는 장병이 상담실을 방문시 대면상담하거나, 출장상담, 심리검사 및 각종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실시
3. 상담 역량의 구비가 필요한 간부 및 병에게 상담 관련 교육을 시행 또는 지도 가능
4. 각종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건의 가능
5. 자살징후자를 식별하고,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을 위한 군 자살예방교관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자료: 국방부

최근 3년간 병영생활전문상담관⁶⁾ 업무실적을 보면, 2019년 25만 4,963건에서 2021년 36만 4,07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군간부상담건수의 비중은 2019년 9.9%, 2020년 13.6%, 2021년 14.6%로, 군 간부 상담보다는 병사들의 상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부터 시작한 민간심리상담지원 사업은 상사 이하 부사관과 소령 이하 장교를 대상⁷⁾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실적건수는 2020년 114명이 384회, 2021년의 경우 359명이 1,020회의 상담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및 민간심리상담지원 사업 실적]

(단위: 건, %)

구분	2019	2020	2021
병영생활전문상담관	254,963	362,318	364,076
군간부상담건수	25,336(9.9)	49,161(13.6)	52,981(14.6)
민간심리상담지원	-	384회(114명)	1,020회(359명)

자료: 국방부

6) 육군에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중에 군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간부상담관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4명이 배치되어 있다.

7) 2022년부터 동 사업의 대상을 전체 간부 및 군무원으로 확대하였다.

유사 비교 대상으로 경찰의 경우 직무특성상 노출되기 쉬운 트라우마·감정노동 등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마음동행센터(18개소) 및 민간상담소(600개소) 운영 등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예산은 2017년 13억 8,600만원에서 2021년 36억 6,100만원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또한 실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관에 대한 외부 심리지원서비스는 확대·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17	1,386	1,386	0	100
2018	1,854	1,854	0	100
2019	2,994	2,991	3	99.9
2020	3,301	3,296	5	99.8
2021	3,661	3,601	60	98.4

자료: 경찰청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최근 5년간 실적]

구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계	18,047	37,096	13,342	28,984	9,505	22,176	5,695	13,467	4,915	9,706
마음 동행 센터	9,940	21,881	8,961	17,487	6,183	13,245	2,895	6,122	2,511	3,649
민간 상담소	8,107	15,215	4,381	11,497	3,322	8,931	2,800	7,345	2,404	6,057

자료: 경찰청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 군 간부의 자살자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군 간부들을 위한 심리지원을 위한 조치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행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한 군 간부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이 저조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심리지원 서비스도 확대하여 군 간부를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탄약지환통의 규격 불일치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교육용 탄약사업¹⁾은 각 군별로 지상교육용, 함포교육용, 항공교육용 및 국직부 대²⁾에서 쓰는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 사업으로 구분된다. 국방부는 교육용 탄약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3,317억 9,100만원 중 3,146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6억 2,400만원을 이월하고 5억 4,2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이월의 주요 원인은 탄약의 지환통이 국방규격에 맞지 않다는 감사원 지적³⁾에 따라 지환통 생산이 지연되어 탄약이 미납품된 것이 그 원인이다.

[2021회계연도 교육용탄약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상교육 용탄약	174,005	174,005	329	△8,900	165,434	153,703	11,709	21
함포교육 용탄약	61,146	61,146	1,348	△1,000	61,494	59,095	1,897	503
항공교육 용탄약	103,658	103,658	138	0	103,796	100,768	3,018	9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1,067	1,067	0	0	1,067	1,058	0	9
계	339,876	339,876	1,815	△9,900	331,791	314,624	16,624	54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339-301(지상교육용탄약), 함포교육용탄약(2339-302), 항공교육용탄약(2339-303), 주요기관 교육용탄약(2339-304)

2) 국방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부대를 말하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등이 있다.

3) 탄약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2021.7.)

참고로, 탄약지환통은 40~105mm 탄약류의 장기 보관을 위해 여러 겹의 종이와 방습·방수 소재를 압축해 적층 구조로 만든 보관·포장 용기를 말하며, 외부 충격 방지 및 습기·결로에 의한 탄약 부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탄약지환통은 1973년도 규격이 제정된 아스팔트 지환통이 쓰이고 있고 2012년부터 정부투자연구 개발을 통해 국방규격으로 제정된 파라핀 지환통은 아스팔트 지환통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하였으나 현재까지 납품된 바 없다.

[탄약지환통 예시(오른쪽 아스팔트 지환통, 왼쪽 파라핀 지환통)]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탄약지환통이 국방규격에 맞지 않아 교육용 탄약이 미납품되어 전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대체 지환통 마련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탄약은 사용목적에 따라 전쟁 시 탄약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비축하는 전투 예비탄약, 평시 부대 교육계획에 따라 각종 실사격 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교육용 탄약, 전쟁발발 또는 국지 도발 등 유사 시 전투예비탄약이 재보급 되기 전까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 내에서 보유하는 기본휴대용 탄약 등으로 구분·관리되고 있다.

전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투예비탄약⁴⁾은 방위력개선헌비(방위사업청)에 편성되어 있고, 평시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한 사격훈련 시 사용하는 교육용 탄약의 구매 예산은 전력운영비(국방부)에 편성되어 있다.

교육용 탄약의 납품절차를 살펴보면, 국방부와 계약한 완성탄 제조업체가 지환통 생산업체로부터 지환통을 받아 1차로 업체 품질보증을 실시하고 2차로 국방기술 품질원에서 품질보증을 실시하여 계약 요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완성탄과 함께 납품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에서 아스팔트 지환통을 포장재로 사용하고 있는 탄약에 대해 방수·방습기능 강화 등의 보완 대책을 수립하도록 방안 마련을 통보⁵⁾한 바 있다.

실제 군에 납품된 아스팔트 지환통은 방수지를 1장만 사용하거나 방수지를 미사용하는 등 국방규격에 맞지 않는 지환통이 납품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되었다.

[지환통 국방규격과 납품되었던 지환통 규격]

일반 판지(4겹) (수용성 접착제 부착) 크래프트지 아스팔트 크래프트지 이중 크래프트지 (방습지) 크래프트지 아스팔트 크래프트지 알루미늄 포일 이중 크래프트지 (방습지) 크래프트지 아스팔트 크래프트지 아스팔트 방수층(6층) 지환통 국방규격(KDS 8140-0007)	일반 판지 이중 크래프트지 누락 일반판지 이중 크래프트지 누락 아스팔트 방수층(4층) <1형> <2형> 실제 제조·납품 지환통
---	--

자료: 국방부

4) 2021년도 전투예비탄약 예산현액은 8,165억 8,700만원이다.

5) 감사원은 국방부에 국방규격과 다르게 제조된 지환통을 포장재로 사용하고 있는 탄약에 대해 방수·방습기능 강화 등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사청은 탄약 납품업체에 납품한 지환통 중 하자보증기간(5년) 내 물량의 대체납품 요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국가기술품질원은 업체 품질보증계획서 검토 및 품질보증 업무절차, 관련자 주의 처분 통보를 받았고 탄약사는 하자보증기간(1년) 내 물량의 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 및 위반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자 주의 처분을 취하도록 통보 받았다.

한편, 국방부와 육군 등은 탄약지환통 생산업체 2곳을 방문하여 국방규격에 따른 지환통 생산가능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현재 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고려할 때 국방규격대로 지환통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2016년 육군에서 개발⁶⁾한 파라핀 지환통을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파라핀 지환통 도입이 가능한 완성탄 4종에 대해 2022년 3월에 국방기술품질원의 형상통제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파라핀 지환통에 대한 국방규격을 개정하였다. 파라핀 탄약지환통이 적용 가능한 탄종은 60mm 고폭탄, 81mm 고폭탄, 105mm 고폭탄의 포병탄 및 전차탄이 해당된다.

참고로, 새로운 탄약지환통 도입을 위해 국방규격을 개정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각 군에서 국방규격 개정안을 작성하고 관련기관 검토 후 탄약지원사령부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하면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이 되어 등급판정, 관련 기관 검토, 형상통제 심의를 거쳐 국방규격을 개정하게 된다.

[탄약지환통 도입을 위한 국방규격 개정 절차]

규격 제·개정 절차								
① 개정(안) 작성	② 관련기관 검토	③ 개정(안) 수정	④ 탄약사 심의	⑤ 개정(안) 제출	⑥ 등급 판정	⑦ 관련기관 검토	⑧ 형상통제 심의	⑨ 규격 개정
← 각 군 주관 →					← 기품원 주관 →			

자료: 국방부

현재 군에서 지환통을 쓰고 있는 탄종은 총 61개로, 국방부는 이 중 4종에 대해 파라핀 지환통이 도입되면 유사 탄종⁷⁾도 적용가능하게 되어 17종에 대하여 파라핀 지환통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외 나머지 44종에 대해서는 파라핀 지환통을 범용화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 투습도 시험을 2022년 5월부터 시행 중이며 투습도 시험결과가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44종에 대해서도 국방규격을 개정하여 파라핀 지환통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6) 2012년부터 정부투자연구 개발(18억 2,100만원, 41개월)을 통해 국방규격으로 제정되었으나 납품실적(MIL-DTL-2439G)이 없다.

7) 예를 들어 60mm 백린연막탄 충격신관과 60mm 신형고폭탄 다중신관은 60mm 고폭탄의 파라핀 지환통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파라핀 지환통 규격서 범용화 계획]

구 분	시기	비교
① 투습도 시험 종료	2022.8.	시행: 탄약사 기술지원 기품원
② 투습도 시험결과 분석	2022.9	
③ 투습도 시험결과를 파라핀 지환통 규격서에 반영	2022.10	
④ 파라핀 지환통 규격서를 완성탄 규격서에 적용	2022.10	시행: 탄약사 기술지원 기품원

자료: 국방부

한편, 국방부는 지환통 규격 불일치로 교육용 탄약이 미납될 것을 대비하여 교육용탄약 여유분이 있고 60mm·81mm 신형·구형의 조명탄 및 고폭탄 간 대체사용⁸⁾이 가능하며, 부족시 군에서 비축하고 있는 전투예비탄을 전환사용⁹⁾하거나 한 국군 탄약과 규격 및 성능이 동일한 미군의 원조받은 구형탄(미군원탄)을 전환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21년 기준 훈련인가량에 대한 교육용탄약·전투예비탄 및 미군원탄 현황]

(단위: 발)

구 분		훈련인가량 ¹⁰⁾	교육용탄약	전투예비탄	미군원탄
1	60밀리 신형 조명탄	1,731	5,478	48,198	0
	60밀리 구형 조명탄	2,594	7,217	163,323	42
2	60밀리 신형 고폭탄	8,544	20,450	232,582	0
	60밀리 구형 고폭탄	5,881	0	1,097	20,891
3	81밀리 신형 고폭탄	8,771	16,400	128,466	0
	81밀리 구형 고폭탄	7,487	5,076	816,310	145,096
4	81밀리 신형 조명탄	0	90	20,966	0
	81밀리 구형 조명탄	3,335	4,109	191,224	13,225
5	섬광폭음탄	2,893	3,936	6,055	0
6	세열수류탄	155,715	290,452	6,055	0
7	105밀리 대전차고폭예광탄	12,655	12,397	35,367	0

자료: 국방부

8) 예를 들어 60mm 신형조명탄 훈련인가량 1,731발 중 탄약이 부족하여 731발만 사격 가능시 잔여량 1,000발을 60mm 구형 조명탄 훈련인가량으로 전환하여 1,000발을 포함한 총 3,594발을 사격훈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9) 「국방탄약업무수행지시」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훈련을 위해 전투예비탄약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0) 해당 당해연도에 교육훈련을 위한 사격훈련 계획 발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미군은 파라핀 함침 지환통(Type VI, 미국방규격 MIL-DTL-2439G)의 경우 68℃의 온도로 제조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용기의 구조적 강도 문제와 파라핀 함침이 내·외부 튜브 사이의 접착강도를 약화시키는 문제(내열성과 연관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2010년에 폴리올레핀¹¹⁾ 재료의 지환통으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방부의 파라핀 지환통 도입 및 범용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납품실적이 없는 파라핀 지환통을 군에 납품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확인하는 등 탄약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16년에 육군에서 개발한 우리 군의 파라핀 함침 지환통은 미군의 파라핀 함침 지환통과 동일한 규격은 아니지만 파라핀이라는 특성상 내열성에 취약할 우려가 있고 현재까지 군에 납품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탄약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파라핀 지환통 외에도 폴리올레핀 재료의 탄약지환통을 개발¹²⁾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군의 폴리올레핀 재료의 지환통(Type V, VI)은 기존의 아스팔트와 파라핀 지환통 보다 저비용, 고내구성, 방수, 경량화, 환경문제 개선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폴리올레핀 소재의 지환통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도 미군의 폴리올레핀 재료의 지환통(Type V, VI)의 특허(US 6460694)가 2021년 3월 4일부터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므로 파라핀 지환통 외에도 폴리올레핀 재료의 지환통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 지환통 시장의 규모가 작고 관련 업체가 영세하므로 기존 납품 업체 외에도 국내 유사 업체의 기술능력 및 생산수준 등을 포함하여 시장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1) 폴리올레핀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메틸펜텐, 폴리부텐-1 등 폴리계열의 소재를 일반적으로 칭하는 용어로, 미군은 보안을 위해 구체적인 재료명이 아닌 폴리올레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2) 개발 이외에 구매의 방법이 있겠으나, 국방부는 미군이 우리 군에 폴리올레핀 재료의 지환통(Type V, VI)을 판매할 의도가 없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가. 현 황

주둔지 경계용 CCTV 사업¹⁾은 민간인의 군 주둔지 무단침입 사건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둔지의 경계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능형 CCTV와 통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획득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주둔지 경계용 CCTV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1,380억 8,500만원 중 355억 4,700만원을 이·전용하고 348억 1,400만원을 이월하였다.

항포구 고성능 CCTV 사업은 2019년 삼척항 북 어선 입항 이후 해안 경계력 보강을 위해 수도군단·2작전사 항·포구 등에 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를 획득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항포구 고성능 CCTV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547억원 중 75억 1,000만원을 이·전용하고 225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1년도 주둔지경계용 및 항포구 고성능 CCTV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통신전자장비	254,430	254,430	11,424	△51,144	214,710	142,071	64,122	8,517
주둔지경계용 CCTV	138,085	138,085	0	△35,547	102,538	67,512	34,814	211
항포구 고성능 CCTV	54,700	54,700	0	△7,510	47,190	24,678	22,511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이·전용등 511억 4,400만원은 부서관 인건비 부족분 249억원, 기본급식비 부족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화력장비 사업 부족분 278억원이 이·전용되었다.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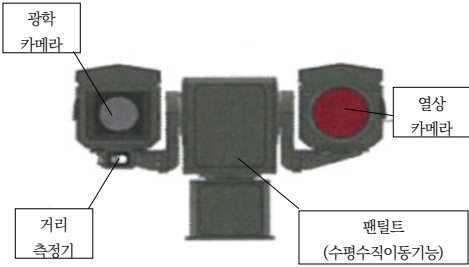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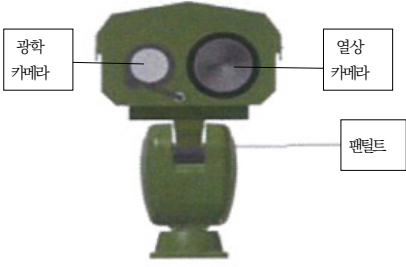
1) 코드: 일반회계 2331-305(통신전자장비)의 내역사업

[육군 주둔지 경계용 CCTV]

cctv 형상 및 주요 재원	
	• 감시능력(인지) -주간 : 인원 0.5km(최대1km) -야간 : 인원 0.1km(최대0.15km) • 영상보정 및 제한된 인공지능 기능 * 일체형 장비로 카메라와 팬틸트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항포구 감시카메라와 달리 열상기능 없음.

자료: 국방부

[항포구 고성능 CCTV 재원]

중거리 감시카메라	근거리 감시카메라
	
•감시능력(인지) -주간 : 선박 6km, 인원 3km(광학) -야간 : 선박 3km, 인원 1km(열상) •거리측정 : 6km이상 •영상보정 및 제한된 인공지능 기능	•감시능력(인지) -주간 : 인원 2km(광학) -야간 : 인원 0.5km(열상) •영상보정 및 제한된 인공지능 기능
주요 통제시스템	
(운용/통제서버) 	(AI서버) 
•CPU : 8Core * 2 CPU (클럭속도 3.2GHz) •GPU : RTX 3090 •메모리 : 128GB •SSD : 960GB (OS영역) •HDD : 1TB (DATA 영역)	•CPU : 3.7GHz(10Core) •GPU : RTX 3090 x 2개 •저장장치(OS) : SSD 1TB •저장장치(Data) : HDD 4TB x 2EA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입찰절차중지 가치분 및 시험평가 실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주둔지 경계용 CCTV 및 항포구 고성능 CCTV를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주둔지 경계용 CCTV 사업은 각 군별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육군은 예산현액 752억 4,200만원 중 414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337억원 4,900만원을 이월하였다.

공군은 예산현액 47억 1,700만원 중 36억 3,600만원을, 해군은 예산현액 101억 1,900만원 중 99억 2,800만원을, 해병대는 예산현액 124억 6,000만원 중 124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1년도 주둔지경계용 및 항포구고성능 CCTV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주둔지 경계용 CCTV	138,085	△35,547	102,538	67,512(49%)	34,814	211
- 육군	109,728	△34,486	75,242	41,493(37%)	33,749	0
- 공군	5,593	△876	4,717	3,636(65%)	1,060	20
- 해군	10,304	△185	10,119	9,928(96%)	0	191
- 해병대	12,460	0	12,460	12,455(99.9%)	5	0

자료: 국방부

이 중 육군의 경우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834개 부대에 5,520대의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2단계 경쟁입찰' 방식²⁾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에서 A업체를 1·3·4권역으로 선정하였으나 입찰과정에서 A업체의 부정한 행위를 식별하여 2순위 업체인 B업체³⁾와 C업체를 각각 1·3권역, 4권역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2) 1단계는 규격, 기술, 제안서 등을 평가해 1차 적격업체를 가린 후에 2차에는 가격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3) 참고로 2권역은 B업체가 선정되어 최종 낙찰까지 받았다.

[2021년도 육군 주둔지경계용 CCTV 사업 설치 현황]

구 분	계	1권역 (1·수도군단, 수방사)	2권역 (5·6·7군단, 지작사 직할, 동전사)	3권역 (2·3·8군단)	4권역 (2작사, 교육사, 특전사, 군수사)
대상(부대수)	834	210	224	219	181
카메라 (대)	5,520	1,360	1,591	1,299	1,270
계약금 (억원)	752.4	164.7	240.2	162.3	185.2
계약 기간		'21. 9. 3. ~ '22. 9. 26.	'21. 9. 3. ~ '22. 2. 28.	'21. 9. 3. ~ '22. 10. 10.	'21. 9. 3. ~ '22. 10. 10.
계약업체		B업체			C업체

자료: 국방부

이에 A업체는 법원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을 신청을 냈고 이에 따라 1·3·4 권역 사업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중지되었으나 현재 A업체는 소를 취하한 상태⁴⁾이다. 또한 동 사업은 선행연구 및 소요결정에 6개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기간에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연내 사업을 종결하지 못해 관련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2022년 6월 기준 2권역 CCTV 설치가 완료되어 2권역 각 부대의 수락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나머지 권역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해군과 해병대는 2021년 연내 CCTV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공군의 경우에도 2022년 4월에 CCTV 설치를 완료⁵⁾하였다.

한편, 항포구 고성능 CCTV 사업⁶⁾은 2021년도에 67개의 통제시스템과 202대의 카메라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으로 구매시험평가를 받게 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 또한 부대 소요변경에 따른 물량도 증가⁷⁾되어 계약이 수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 225억 1,100만원이 이월하게 되었다.

4) 1·3·4권역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5) 해군은 5권역 68개 부대에 722대 카메라를, 해병대는 5개 지역 29개 부대에 1,305대 카메라를, 공군은 61개 부대에 972대 카메라를 설치 완료하였다.

6) 동 사업은 2020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예산 3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다.

7) 광케이블선이 1,249km에서 1,409km로 연장되는 등 부대 기반시설 소요가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항포구 고성능 CCTV의 경우 구매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가 나왔고, 2022년 7월 기준 60개소의 통제시스템 및 감시카메라 설치가 완료되어 완료된 지역부터 부대 수락검사 등을 진행 중이며, 2022년 9월까지 동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1년도 항포구 고성능 CCTV 사업 설치 현황]

구 분	계	설 치 부 대							
		수 도 군 단		2 작 전 사					
		17사단	51사단	31사단	32사단	35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
통제시스템 (개소)	67	1	2	15	16	5	10	7	11
카 메 라	소 계 (카메라)	202	1	7	38	62	13	20	42
	중거리카메라 (대)	91	1	6	24	36	3	8	5
	근거리카메라 (대)	111	·	1	14	26	10	12	37

자료: 국방부

양 사업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항포구 고성능 CCTV의 경우 2019년 삼척항 북 어선 입항 이후 해안 경계력 보강을 위해 항·포구 등에 고성능 감시장비를 획득하여 감시체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주둔지 경계용 CCTV 사업의 경우 2020년에 민간인이 제주 해군기지를 침입한 사건이 발생하여 기존의 감시장비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되었다.

특히, 주둔지 경계용 CCTV 사업의 경우 당초 국방부가 중기예산(2021~2026년)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안 검토 시 사업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1년 단기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은 국회에서도 감액 없이 의결되었다.

또한 국방부는 군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제반 준비 사항으로 현재 감시장비 전력화, AI기반 과학화경계체계 구축개념 발전, 경계부대 편성 및 임무 최적화 등을 추진 중인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 경계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경계작전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주둔지 경계용 CCTV 및 항포구 고성능 CCTV 설치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성이 있는 바, 군의 과학화 경계시스템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수도병원 장례식장 기부채납사건 패소 관련 사전에 사업추진가능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

가. 현 황

수도병원 장례식장 기부채납사업 배상금¹⁾은 수도병원 장례식장 증축 기부채납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타 사업에서 11억 2,000만원을 전용²⁾하여 배상금(판결금과 이자)을 집행하였다.

[2021 회계연도 수도병원 장례식장 기부채납사업 배상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도병원 장례식장 기부채납사업 배상금	0	0	0	1,122	1,122	1,120	0	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참고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방부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국군수도병원 내 장례식장을 신축하였다. 장례식장의 규모는 면적 3,153㎡, 지하 1층, 지상 1~3층, 일반실 3개소, 특실 1개소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73억 6,300만원이 소요되었다.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231-305(의무시설개선)의 내역사업

2) 진료지원(2231-301) 사업에서 11억 2,200만원 전용(2021.12. 8.)되었다.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개요]

구 분	내 용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내
연면적	3,153㎡(지하1층, 지상 1~3층, 총사업비 73억 6,300만원)
사업연혁	설계 및 공사(2018.3~2020.12)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사전에 기부채납 사업방식의 추진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도병원 장례식장 기부채납 사건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2011년 10월에 국방부는 수도병원 장례식장 증축을 위해 기부채납방식으로 공모를 하여 동년 11월에 특정 민간사업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 이후 국방부는 민간사업자와 2012년 3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6월에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기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수도병원 장례식장 기부채납사건 주요 개요]

2011년 10월 :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증축 공모
2011년 11월 :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2년 3월 : 국군의무사령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기부채납 사업 실시협약 체결
2013년 6월 : 국방시설본부장과 ○○○(민간사업자) 간의 기부계약 체결
2013년 6월 및 8월 : 분당구청 및 성남시청 건축허가 신청 반려
2013년 8월 : 민간사업자가 구(舊)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
2014년 10월 27일 ~ 10월 31일 : 감사원 감사 실시
2016년 : 민간사업자 1심 소제기
2021년 10월 : 대법원 확정 판결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및 1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민간사업자는 2013년 6월 관할 건축인허가 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인허가 관청은 군사시설이어서 「건축법」³⁾에 따라 인허가할 사항이 아니라

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2013년 8월에 구(舊)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하였으나 국방부는 사업의 건축허가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어서 건축 인허가를 받아 준공 후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회신⁴⁾하였다.

[구(舊) 「국방시설사업법」(2016.1.19. 법률 제13770호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라. ~ 바. (생략)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제3조(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국방시설사업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의제와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방부는 수도병원 장례식장 증축사업의 경우 동법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민간사업자는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이후 국방부는 감사원 감사 시까지 인허가 관청인 성남시와 협의를 하지 않다가 감사원 시작 이후인 2014년 12월에 성남시와 관련 사건을 협의하였고 성남시는 장례식장 예정부지(국군수도병원 내)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에 따른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국방부에 회신하였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기반시설(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국방부에 통보⁵⁾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계약기간 도래로 2015년 2월에 민간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며 민간사업은 계약해제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1·2심에서 원고(민간사업자)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동 사건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제도⁶⁾를 통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국방부는 배상금으로 11억원 2,000만원을 타 사업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5) 감사원은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장관은 성남시와 협의하여 국군수도병원 내에 건축법에 따른 장례식장 건축허가에 필요한 기반시설(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군부대 내 장례식장 신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인·허가 기관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사업자가 신청한 건축허가가 반려됨으로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6) 동 제도는 1994년 도입된 것으로,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거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등의 경우 정식재판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상기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동 사건은 2011년부터 사업공모부터 대법원 판결이 난 2021년까지 약 10년간 계속되어 배상금 지급 등 불필요한 소송비용 등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2018년에 국가예산을 통해 수도병원 장례식장이 완공됨에 따라 장례식장 건립지연 문제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향후 건설사업 추진 시 사전에 사업추진 방식 및 인허가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¹⁾은 주한미군 반환 및 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및 정화사업이다. 국방부는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772억 4,500만원 중 567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204억 9,1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방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니블로배럭스²⁾ 환경정화비용 청구에 따른 선지급을 위해 204억 9,100만원을 타 사업에서 전용하였으나 2021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다.

[2021회계연도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환경조사 및 치유	56,754	56,754	0	20,491	77,245	56,754	20,491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참고로, 동 사업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법정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나. 분석의견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 협약」에 따라 매각부지의 환경오염 정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송으로 추가 손해배상을 부담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4232-302

2)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1 등 총 32필지의 토지를 말하며, 이 중 2필지(한남동 699-22, 705-8)는 소송 대상에서 2필지는 제외되었다.

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니블로배럭스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공여했던 토지로 그 규모는 6만 667㎡이다. 처음 사용은 캠프 니블로 주둔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1979년 3월경 주둔지가 옮겨지면서 해당 토지는 국방부에 반환되었다.

국방부는 1979년 LH와 부지의 사용 목적을 주한미군 주택부지로 정하기로 하고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부지는 2014년까지 주한미군 주택부지로 사용되어 왔다.

2007년 11월 및 2011년 11월(일부 내용 변경) 경, 국방부는 LH와 LH의 비용으로 주한미군에 공여할 시설물들을 평택지역에 건설·기부하고, 그 비용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는 4개의 미군 반환부지(니블로배럭스, 수송부, 유엔사, 캠프김 부지)를 LH에 양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2년 산정기준, 양여재산은 3조 3,908억원이며 기부재산은 3조 4,0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방부와 LH는 상기 미군 반환부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평가를 재산정한다는 계획이다.

[니블로배럭스 양여·기부가액 및 매각가액 현황]

구 분	양여재산			기부재산 (예상가격)	비고 (LH→민간업체)
	필지	면적(㎡)	예상가격 ¹⁾ (백만원)		
니블로배럭스	32	60,751	336,063	건축물164동 (72만 4,203㎡) : 3조 4,030억원	니블로배럭스 매각 토지(30필지) (60,677.2㎡) 및 매도가액 : 6,242억원
수송부	4	77,232	1,124,122		
유엔사	5	50,600	776,052		
캠프김	2	48,398	1,154,599		
계	43	236,936	3,390,836		

주: 1) 캠프김, 수송부, 유엔사 부지의 용도변경(일반상업지역, 용적률 800%이하)을 전제로 산정한 가격이며, 산정시점은 2012년임

자료: 국방부

한편, 동 협약 제8조제5항은 국방부가 양여 대상부지의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지하 및 지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 협약」 제8조제5항〕

제8조(기부 및 양여) ⑤ 갑(국방부)은 양여 대상부지의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지하 및 지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자료: 국방부

이후 국방부와 LH는 동 협약에 따라 2015년경 「주한미군 시설사업 니블로배릭스 부지 양여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고, 2016년 1월 니블로배릭스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LH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³⁾하였고, 해당 업체가 건설공사 중 토지오염을 발견하여 LH에 정화비용 등으로 손해비용 원금 365억원, 지연손해금 53억원 등 418억원(지급시점⁴⁾ 기준이다. 이하 같음)을 청구하게 되었다.

[니블로배릭스 사건 관련 주요 개요]

1951년 10월 : 주한미군에게 니블로 배릭스 부지 공여
 1979년 3월 : 캠프 니블로 주둔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토지 반환
 1979년 3월 : 대한주택공사와 주한미군 아파트 부지로 정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1979년 ~ 2014년 : 주한미군 아파트로 사용
 2007년(2011년) 11월 : 국방부와 LH 간 ‘주한미군시설사업 시행협약’(기부대 양여) 체결
 2016년 1월 :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2016년 3월 및 5월 : 토지 및 아파트 일반경쟁입찰 공고 및 낙찰자 선정
 2017년 8월 : 토지 및 아파트 민간 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2017년 9월 : 아파트 철거 및 터파기 공사 중 오염물질 발견
 2019년 9월 : 민간사업자가 LH에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청구하는 소 제기(1심)
 2020년 3월 : 대한민국(국방부) 독립당사자 참가신청
 2020년 7월 : LH는 대한민국(국방부)에 민간사업자에게 패소할 것을 대비해 예비적으로 반소제기
 2020년 12월 : LH 및 대한민국(국방부) 패소(1심판결에 따라 LH는 민간사업자에게 418억원을 지급하고 국방부는 LH에게 10억 5,300만원을 지급)
 2022년 : 현재 2심 심리 중

자료: 국방부

3) LH와 민간 사업자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6,242억원이다.

4) 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손해비용 원금 365억원을 지급한 시점에 지연손해금 53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1심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법원은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LH와의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여 LH에게 정화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365억원, 지연손해금 53억원 등 418억원 청구를 인용하였다.

또한, LH가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 법원은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 협약」 제8조제5항에 따라 오염원인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국방부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여 418억원 중 LH가 제기한 10억원과 이자 5,300만원 등 10억 5,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현재 2심에서 LH는 1심과 달리 원금 365억원(지연손해금 제외) 전액을 국방부에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를 확정할 예정이다.⁵⁾

이에 국방부는 상고·항소심이 진행될수록 향후 이자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약 204억원을 타 사업⁶⁾에서 전용하여 지급을 결정하였고, 국방부 승소시 LH로부터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LH는 선지급금에 대한 반환이자⁷⁾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동 예산은 전액 이월되었다.

[1심 판결 주요결과 내용]

구 분	청구내용	판결
민간사업자 (원고)	[본소] LH는 매매계약의 특약 ⁸⁾ 등 (불완전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지출한 정화비용 지급책임	LH의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 매매계약 특약은 LH가 민간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오염원인이 무엇인지 불문하고 정화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것
LH(피고)	[반소] ⁹⁾ 시행협약 ¹⁰⁾ 에 따른 의무불이행 등(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원인으로, LH에 비용지급책임을 인정되	국방부의 시행협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 시행협약은 오염원인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국방부가 LH와의 관

5) LH가 1심에서 10억원만을 제기한 이유는 소송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418억원을 모두 청구하면 인지 값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1심 판결 결과 추이를 보고 추후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에 따르면 소송목적 값에 따라 인지 값이 달라진다).

6) 평택기지이전사업(4231-301)

7) 국방부가 LH에 선지급한 후, 2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되면 LH가 국방부에 다시 해당 금액을 반환하고 그 기간 동안 과다한 금액분에 대한 발생한 이자를 의미한다.

구 분	청구내용	판결
	는 정화비용을 국방부에 청구	계에서 니블로배릭스 부지에 대한 정화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임 ※토양오염원인자에 대한 판단 없음
국방부 (독립당사자 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신청] ¹¹⁾ 채무부존재 확인(니블로배릭스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비용 부담책임 없음)	토양오염으로 인한 책임이 국방부에 있다는 원·피고의 주장은 소송상 주장일 뿐이며 국방부를 사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요건 ¹⁾ 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각하

주: 1) 독립당사자참가 중 (생략)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음[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업집행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

첫째,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 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매각부지의 환경오염 정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송으로 추가 손해배상을 부담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군공여구역법」¹²⁾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지 매각 전에

8) 〈특약사항〉

2. 매매대상토지에서 오염토 등 불법으로 매립된 지중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갑(매수인 민간업체, 이하 같다)은 즉시 을(매도인 LH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갑은 폐기물 반출수량의 확정 및 처리비용 적정성 검토 등 처리 과정에서 을의 확인을 득한 후 갑의 비용으로 폐기물을 선처리하도록 한다. 이후 갑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을에게 청구하고, 을은 동 비용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9)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10) 시행협약(11) 제8조 ⑤ 갑(국방부)은 양여대상 부지의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지하 및 지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1)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12) 「미군공여구역법」은 2006년 3월 3일에 제정되었다.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니블로배릭스 부지는 1979년 토지가 반환되어 상기 법에 따른 부지 매각 전 토양오염 등의 제거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정화는 사전 오염조사가 아닌 오염이 확인된 경우 토양오염책임자에게 정화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니블로배릭스는 매각 후 개발과정 단계에서 2017년 9월 토양오염이 확인된 사항으로 국방부의 환경정화 의무는 없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1심 법원의 판결만 본다면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 협약」(국방부와 LH간) 제8조제5항에 따라 오염원인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국방부가 환경오염을 정화하도록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에 환경오염 정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당 부지를 매각하여 결국 소송으로 국방부가 추가적인 환경정화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배상금 선지급과 관련하여 LH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부족했다. 국방부는 판결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배상금 지급에 따른 이자비용¹³⁾을 절감하기 위하여 적극행정¹⁴⁾ 차원에서 배상금을 선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적극행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사전에 LH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 사업 예산을 전용하고 이를 다시 이월한 것은 관계 기관과 충분한 사전검토¹⁵⁾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3) 국방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환경정화비용 등 지급시 32억원에서 48억원의 이자가 추가발생이 예상되므로 선지급을 통한 국가예산 절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14)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적극행정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우선 LH가 국방부에 정화비용(418억원)을 청구(21.1.12.)하여 국방부는 LH에게 예산편성 후 지급이 가능함을 회신(21.1.28.) 하였고, 국방부는 이자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21.4.21.)를 거쳐 일부 비용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LH는 국방부에 일부 판결금 지급 요청 공문을 발송(21.5.10.) 하였고 일부 배상금(205억원) 지급을 위해 전용(21.6.2.)하였으나, 국방부와 LH간 합의서 작성을 위한 논의(21.6~8월, 6회) 및 실무토의(21.8~10월, 3회) 진행 중에 LH는 국방부 합의서 일부 조항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여 최종 지급 보류결정(21.12.13.) 되었다.

가. 현황

개인파병등 사업¹⁾은 UN PKO(평화유지활동) 개인파병자에게 공공요금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UN PKO 장관회의 후속 시범사업(남수단 스마트 캠프 실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개인파병등 사업의 2021년도 예산 현액 31억 9,700만원²⁾ 중 30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개인파병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개인파병등	2,749	2,749	15	434	3,197	3,017	0	18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UN PKO 장관회의는 PKO 분야 유일의 장관급 정례 회의체로 2015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주최한「평화유지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로서 2016년 출범하였고, 2021년 서울(제4차)에서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하였다.

나. 분석의견

스마트캠프 전시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성 금액보다 사업비 규모를 확대하여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업추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UN PKO 장관회의 기여공약 사업으로 남수단에 스마트 캠프 실증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5134-303의 내역사업

2) 집행액 30억 1,700만원 중 개인파병지원과 해외파병부대 운영을 위해 6억 4,700만원, 2021년 서울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기여공약 이행사업을 위해 23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167억원³⁾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2021년도에 남수단 스마트 캠프 실증시범사업 초기 예산 14억 원을 포함해 총 18억 600만원⁴⁾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기여공약 이행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남수단 스마트 캠프 실증 시범사업은 남수단 한빛부대에 UN 캠프 내 스마트팜 설비와 에너지관리 및 태양광시스템을 설치, 시범 운영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를 UN 임무단 활동지역에 확대·적용하려는 사업이다.

3) 국방부는 동 시범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스마트캠프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분	사업내용	비고
'22~'23 (34억원)	• 한빛부대 스마트캠프 구축 ISP 수립 (4억원) • 무선 네트워크 장비 도입 (29억원) •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관리체계 설계 (1억원)	모델 정립, 기반 체계
'23~'24 (69억원)	•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15억원) • 지능형 통합관제체계 (24억원) • 부대 출입통제체계 (15억원) •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 (1차, 15억원)	경계, 관제 시스템
'24~'25 (34억원)	• 스마트캠프 유지·관리 운영비 (3억원) •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 (2차, 15억원) • 스마트 상황전파체계 (3억원) • 시설물 통합관제체계 (3억원) • 물 재활용 및 모니터링 체계 (10억원)	기타
'25~'26 (30억원)	• 스마트캠프 유지·관리 운영비 (3억원) • 차량 위치정보시스템 (5억원) • 원격의료지원체계 (8억원) • 폐기물 관리체계 (1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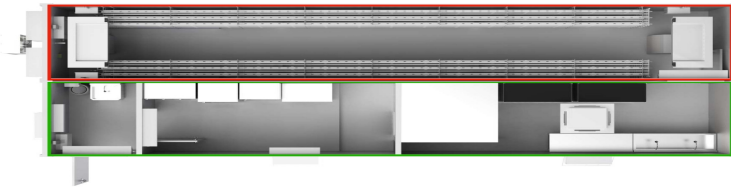
4) 기여공약 이행사업 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연구비(스마트캠프 조성 실증사업 14억원, UAV 부대 파견 타당성 현지조사 등 1억원) 15억원, 일반용역비(대국민참여 이벤트 개최 7,000만원, 스마트 캠프 전시회 7,000만원, 기여공약홍보물 제작 6,000만원) 2억원, 국외여비(UAV 부대 파견 타당성 현지조사 6,300만원) 6,300만원, 업무추진비 4,300만원 등 총 18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스마트팜 설비 개요]

구 분	내 용
개요	스마트팜은 온습도 제어,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제어 기술 등을 활용하여 열대우림, 사막 등 악기후 하에서도 농작물을 재배 가능시스템
필요성	UN 임무단이 활동하는 지역은 주로 아프리카중동 등 식량난이 심각한 지역이 많아, 평화유지군의 민사작전 시 지원이 필요
기대효과	· 기후와 관계없이 운영 가능한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빛부대 민사작전의 외연 확장 가능 · 농업 조건이 열악한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기후를 극복할 수 있는 선진 모델로서, 전 UN 임무단*으로 확대 가능

자료: 국방부

[컨테이너 타입 스마트팜 구성도(위에서 본 모습)]



[에너지관리 및 태양광발전 시스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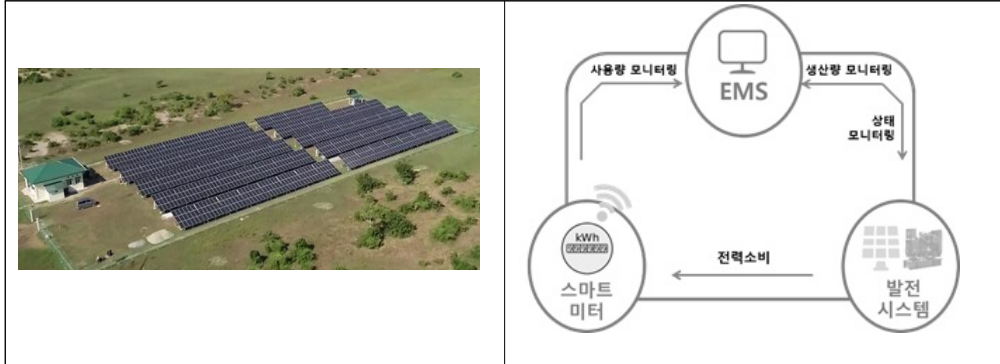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개요	ESS+ EMS ⁵⁾ 가 통합된 시스템 (200kW 발전기와 디젤발전기 제어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하여 에너지 생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필요성	UN 임무단이 활동하는 캠프는 전기·수도 등 에너지 확보가 열악한 상황으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절실
기대효과	·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통해 전력 생산 효율 극대화, 스마트미터 (SMS⁶⁾)를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 한빛부대 시범적용을 통해 향후 UN 임무단에 적용 가능한 모델 구축, 확산

자료: 국방부

5) ESS (Energy Storage System) : 변환된 에너지의 저장 시스템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 ICT 기술을 이용, 전력 생산/전송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여 최적화하도록 보조하는 시스템

6) SMS (Smart Metering System) : ICT를 접목한 미터링 시스템

[에너지관리 및 태양광시스템(좌: 태양광발전 시스템 구성도), 우(ESS + EMS + SMS 개념도)]



자료: 국방부

그러나 코로나19로 남수단 스마트캠프 실증 시범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실증 시범사업 예산 대부분⁷⁾과 타 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20억 1,100만원⁸⁾을 서울에서 개최되는 UN PKO 장관회의 기간 중 스마트캠프 전시회 비용으로 집행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UN PKO 장관회의의 기여공약을 각국 관계자들에게 홍보 하고 보여주는 목적의 스마트캠프 전시회는 실제 사업 개시 시기와 관계없이 장관 회의 개최국으로서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UN 평화유지활동에 우리나라의 기여 현황을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회를 확대하여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7) 실증시범 예산 14억원 중 11억 8,000만원을 스마트캠프 전시회 개최를 위해 일반연구비에서 일반용 역비로 전용하였다.

8) 2021년도 개인파병의 내내역사업 중 스마트캠프 전시회를 포함한 기여공약 이행사업의 집행액은 총 23억 7,000만원이며, 이 중 기여공약 소개영상 제작비 1억 3백만원, 스마트캠프 모델설계 2억 5,600만원, 스마트캠프 전시회는 20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다. 이 중 스마트캠프 전시회 사업의 경우 국방부는 당초 동 사업을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할 것으로 계획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20억 1,100만원을 집행하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하였다. 이는 당초 편성 예산의 약 30배 수준에 해당한다.

[스마트캠프 모델 전시관]



〈 스마트캠프 전시관 전경 〉

〈 스마트캠프 지휘통제실 〉

〈 스마트캠프 주둔지 3D 전경 〉

〈 친환경 에너지 재생 시스템 〉

자료: 국방부

그러나 남수단 스마트 캠프 실증시범사업의 초기 단계인 스마트캠프 모델정립 및 기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회 개최에 많은 비용을 우선 지출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예산의 이·전용은 당초 예산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사업집행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간부확보장려 사업¹⁾은 장교 및 부사관에게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하고, 학군 및 학사 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군 간부유입을 촉진하려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간부확보장려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액 643억 3,900만원 중 620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간부확보장려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간부확보 장려	64,339	64,339	0	0	64,339	62,016	0	2,323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가산복무지원금은 대학(전문대학 포함) 재학생 중 장교 또는 부사관 지원자에게 군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하고 수혜 받은 기간만큼 가산복무하도록 하여 중기복무 장교와 전투·기술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사업이고, 단기복무장려금은 학군²⁾ 및 학사 사관후보생³⁾에게 일회적 장려금을 지급하여 단기복무 장교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439-301

2)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된 4년제 대학교 등의 재학생을 선발하여 재학 중에 2년간(3~4학년)의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로(소위 ROTC로 약칭한다), 의무복무기간은 육군 2년 4개월, 해군해병 2년, 공군 3년이다.

3)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취득예정자) 자(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소정의 시험을 거쳐 군사교육을 받은 뒤 장교로 임관하는 장교양성 과정(소위 학사장교로 불린다)으로, 의무복무기간은 육군 해군공군 3년이다.

[가산복무지원금 및 단기복무 장려금 사업 비교]

구 분	가산복무지원금 (舊 군장학생 제도)		단기복무장려금	
	대학(장교)	전문대학(부사관)	학군 사관후보생	학사 사관후보생
지급대상	재학생 중 지원자	재학생 중 지원자	학군장교후보생 3학년	학사 예비장교후보생 4학년
의무복무 기간	-		육군 2년 4개월 해군·해병 2년 공군 3년	3년
지급단가	지원자 대학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 ¹⁾		600만원(2022년 기준)	
지급기간	1년~4년		1회	
연장 복무기간	지원금 지급기간 만큼 가산하여 복무		없음	
기타	가산복무지원금과 단기복무 장려금 중복 지원 금지			

주: 1) 현재 편성 기준액은 국립대 412만원, 사립대 742만원, 전문대학 560만원을 지원함
자료: 국방부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최초 등급에 따라 150만원 또는 300만원으로 나뉘었으나, 2018년부터 균등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 180만원, 2019년 200만원, 2020년 300만원, 2021년 400만원으로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며, 2022년에는 지급단가가 600만원으로 2021년보다 200만원 인상되었다.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단가 변동현황]

(단위: 만원)

2011~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등급(300), 2등급(150)	180	200	300	400	600

주: 2017년까지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으나 2018년부터 균등지급 방식으로 변경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군 간부의 선발인원 부족 및 중도포기자의 증가 등으로 군 간부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간부확보장려 사업에 대한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장교 가산복무지원금은 예산현액 411억 5,900만원 중 406억 9,200만원,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80억 6,100만원 중 63억 7,600만원, 단기복무장려금 151억 1,900만원 중 149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이 중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의 불용액 16억 8,500만원에 대해 국방부는 지급대상자 지원 감소 및 진로변경 등으로 인한 자진포기자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한다.

[2021회계연도 간부확보장려 사업 내역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교가산 복무지원금	40,926	40,926	0	233	41,159	40,692	0	467
부사관가산 복무지원금	8,061	8,061	0	0	8,061	6,376	0	1,685
단기복무 장려금	15,352	15,352	0	△233	15,119	14,948	0	17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최근 5년간 장교 가산복무지원금 계획대비 선발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계획인원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2021년의 경우 계획인원 1,478명 중 1,402명이 선발되어 7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포기자를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중도포기자는 121명으로 2019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1년 다시 179명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장교 가산복무지원금 계획대비 선발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획인원 ⁴⁾	선발인원	과부족	해당연도 중도포기자 ⁵⁾
2017	1,173	1,095	△78	93
2018	1,140	1,082	△58	116
2019	1,621	1,685	64	124
2020	1,498	1,477	△21	121
2021	1,478	1,402	△76	179

자료: 국방부

그리고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계획 대비 선발인원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계획인원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2021년의 경우 계획인원이 1,211명 중 1,075명이 선발되어 13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포기자를 살펴보면, 2018년을 기점으로 2019년 139명, 2020년 195명, 2021년 20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계획대비 선발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획인원 ⁶⁾	선발인원	과부족	해당연도 중도포기자 ⁷⁾
2017	1,066	1,058	△8	197
2018	863	863	0	235
2019	1,276	1,214	△62	139
2020	1,302	1,143	△159	195
2021	1,211	1,075	△136	207

자료: 국방부

4) 예산집행인원이 아닌 신규 선발인원을 말한다.

5) 중도포기자는 선발시기와 무관하게 해당연도에 중도포기 및 제적된 인원을 말한다.

6) 예산집행인원이 아닌 신규 선발인원을 말한다.

7) 중도포기자는 선발시기와 무관하게 해당연도에 중도포기 및 제적된 인원을 말한다.

전반적으로 간부확보장려사업의 선발인원 및 지급인원이 부족하고 중도포기자가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병사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급여수준이 최근 상당부분 개선⁸⁾되어 군간부에 지원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병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인 반면, 학군장교(육군)는 2년 4개월, 학사장교는 3년이다.

[의무복무 기간 비교]

구 분	병	학군장교	학사장교
의무복무기간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육군 2년 4개월, 해군·해병 2년, 공군 3년	3년

자료: 국방부

또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단계적 봉급을 인상하는 것이 이번 국정과제⁹⁾에 채택됨에 따라 병사와 군 간부 간 봉급 격차는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라 군간부 지원률이 더욱 낮아지는 등 군 간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는 군 간부의 선발인원 부족 및 중도포기자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군 간부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8) 2022년 기준 병장월급은 67만 6,100원이다.

9)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108과제인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에서 '병사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병사 월급 월 200만원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2025년, 병장기준).

가. 현 황

군무원 인건비 사업¹⁾은 군무원의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2021년도 군무원 인건비 사업의 예산현액 2조 643억 2,100만원 중 2조 641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119억 8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1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다.

전용액 119억 800만원은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79억 800만원), 부서관 인건비 부족분(40억원)에 집행되었다

[2021회계연도 군무원 인건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군무원 인건비	2,076,229	2,076,229	0	△11,908	2,064,321	2,064,199	0	122

자료: 국방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국방개혁 2.0’²⁾은 병력 중심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병력 규모를 현 61.8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하되 병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투부대의 간부보강, 예비전력 내실화, 비전투부대의 민간 인력 확대 등을 통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방인력 구조 개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간부 정원 및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우리 군이 필요한 전투부대의 병력을 충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의 직위에 편성된 군인 정원을 신규 무기 전력화 등에 따라 신설되는 전투 직위에 할당하고, 비전투분야 직위는 군무원 및 민간근로자 등 민간인력으로 대체한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02-151

2) 국방개혁 2.0은 2022년 5월부터 국방혁신 4.0으로 대체되었다.

다는 계획이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민간인력 충원³⁾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초에 민간인력 3만 2,000명에서 2021년말 4만 8,500명으로 1만 6,500명이 증가하였으나 국방개혁 2.0에 따른 목표 6만명에는 1만 1,5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군무원은 국방개혁 2.0 대비 7,000명이 확충되지 못하였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민간인력 충원 계획 및 실적]

(단위: 명)

구 분	'18년 초	'19년 말	'20년 말	'21년 말	「국방개혁 2.0」 계획
민간인력 총계	3.2만	3.88만	4.25만	4.85만	6.0만
군무원	2.6만	3.2만	3.5만	4.0만	4.7만
민간근로자	0.6만	0.68만	0.75만	0.85만	1.3만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임기제 채용률이 계획 대비 부진하고, 중도퇴직 비율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5년간 군무원 운영 현황을 보면, 2017년 97.2%에서 2019년 91.5%로 하락하다가, 2020년 92.2%로 다소 상승한 후에 2021년 91.1%로 다시 하락하였다.

[2017~2021년 군무원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17년	2018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	정원(A)	26,429	26,919	31,655	34,928	40,295
	현원(B)	25,696	25,528	28,964	32,221	36,704
	운용률(B/A)	97.2%	94.8%	91.5%	92.2%	91.1%
예산	군무원인건비예산(C)	1,606,186	1,653,272	1,777,470	1,887,189	2,064,321
	군무원인건비집행(D)	1,605,441	1,651,675	1,747,219	1,886,955	2,064,199
	집행률(D/C)	99.9%	99.9%	98.3%	99.9%	99.9%

자료: 국방부

3) 정원이 충원되는 기준을 말한다.

이는 ‘국방개혁 2.0’의 국방인력구조 재설계에 따라 군무원 정원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4,736명, 3,273명, 5,367명⁴⁾ 등 최근 3년간 13,376명이 증원된 반면, 군무원 신규 채용인원은 매년 계획 대비 미달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3년 군무원 채용률의 경우 2019년 89.6%, 2020년 81.4%, 2021년 88.2%로 채용률이 정체되어 있고, 이 중 2021년 군무원 채용률의 경우 공개경쟁채용 94%, 경력경쟁채용 71%, 임기제 69%로 나타나는 등 경력경쟁채용과 임기제 채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직급별 군무원 채용률]

(단위: 명, %)

구 분		2019			2020			2021		
		모집	최종 합격	채용률	모집 (경쟁률)	최종 합격	채용률	모집 (경쟁률)	최종 합격	채용률
공 채	7급	191	175	91.6	421	401	95.2	714	587	82.2
	9급	3,012	2,751	91.3	2,789	2,365	84.8	5,170	4,946	95.7
	소계	3,203	2,926	91.4	3,210	2,766	86.1	5,884	5,533	94
경 채	4급 이상	11	7	63.6	6	4	66.6	-	-	-
	5급	36	31	86.1	69	66	95.6	38	27	71
	6·7급	413	353	85.4	613	439	71.6	235	154	65.5
	8·9급	530	430	81.1	241	193	80.1	333	219	65.8
	소계	990	821	79.1	929	702	78.4	606	400	70.9
임기제/전문군무		1,916	1,729	90.2	1,121	815	72.7	1,084	750	69.2
총계		6,109	5,476	89.64	5,260	4,283	81.4	7,574	6,683	88.24

자료: 국방부

특히, 6급이하(6~9급) 경력경쟁채용 군무원 채용률은 2019년 83%, 2020년 76%, 2021년 65.6%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수, 수사, 전자, 유도무기, 총포 직렬의 채용률이 최근 3년간 7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4) 2018년 대비 4,736명, 2019년 대비 3,273명, 2020년 대비 5,367명이 증원되었다.

[최근 3년간 6급이하 군수 직렬 등 군무원 채용률 현황]

(단위: 명, %)

직렬	2019			2020			2021		
	모집	합격	채용률	모집	합격	채용률	모집	합격	채용률
군수	92	54	58.7	107	62	57.9	9	6	67
수사	4	2	50	42	29	69	31	15	48.3
전자	23	11	47.8	27	12	44.4	7	3	42.8
유도 무기	14	7	50	41	23	56.1	19	5	26.3
총포	16	11	68.7	30	15	50	10	6	60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에 대해 국방부는 경력직 군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인원이 많았으며, 임기제 군무원의 경우 신분불안정 및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이에 대한 채용률이 저조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군무원의 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군무원 퇴직자 중 중도퇴직자 비율이 63.7%로 정년퇴직자 34.6%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 비율도 전체 퇴직자 중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중도 퇴직 사유를 이직 및 개인사유 등으로 보고 있으나 개인별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방인력구조 개편 계획이 군무원을 통하여 비전투직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중도 퇴직사유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무원의 중도 이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 간 군무원 퇴직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 퇴직자 (A)	정년퇴직자 (B)	중도퇴직자 (C=A-B)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
2019년	1,290 (100)	609 (47.2)	681 (52.8)	129 (10)
2020년	1,194 (100)	413 (34.6)	781 (65.4)	162 (13.6)
2021년	1,635 (100)	593 (36.3)	1,042 (63.7)	213 (13)

자료: 국방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는 군무원 신규채용 시 경력직 군무원 및 임기제·전문 군무원 채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공·경채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채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군무원의 중도퇴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무원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군 간부에 대한 전세지원 사업¹⁾(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 사업과 군간부전세자금대부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은 관사 부족으로 입주 대기하고 있는 군 간부에게 민간주택 임대자금(이자, 월세 및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2021년도 전세자금이자지원 사업의 계획액 541억 2,600만원 중 376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4억 4,6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전세자금대부(융자)사업의 경우 계획액 16억 4,00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군 간부 전세자금이자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군간부전세 자금이자지원	54,126	54,126	0	0	54,126	37,680	0	16,446
군간부전세 자금대부(융자)	1,640	1,640	0	0	1,640	0	0	1,640

주: 2021년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전세자금대부(융자)사업 계획액이 전액 불용된 것은 2022년도부터 대부사업을 중단하고 이차지원 사업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도 대부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관사 및 간부숙소를 직접 또는 BTL방식으로 건립하여 제공하는 기존 주거지원방식으로는 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재정부담이 크다고 보아 직업군인에 대한 전세자금 이차지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거지원 정책의 전환을 시도²⁾하고 있다.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군인복지기금 2240-640(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

군인복지기금 2240-648(군간부전세자금대부)

2)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도 '전세지원액 현실화, 급지제도 개선 등 전세대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

나. 분석의견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자원부족이 예상되므로 전세지원물량을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세지원사업의 자원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21년도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 결산내역을 보면, 국방부는 9,707세대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계획 대비 2,427세대 감소한 7,280세대에 계획 대비 1,500만원 상승한 1억 7,900만원을 지원하여 376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164억 4,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년도와 2022년도 군 간부 전세자금 지원사업 예산 산출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2021년도 계획	2021년도 결산	2022년도 계획
전세자금 이자지원	예산	54,126	37,680	52,900
	지원세대수	9,707세대	7,280세대	8,542세대
	지원한도	164 ²⁾	179	182
	이자율 ¹⁾	3.4%	2.9%	3.4%
전세자금 대부	예산	1,640	전액 불용	미편성
	지원세대수	10세대		
	지원한도	164		

주: 1) 군 간부에 대한 전세대출을 실시하는 협약은행에 적용하는 이자율

2) 지원한도는 군 간부가 협약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의 한도를 의미하며, 협약은행은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국방부에 청구하게 되고 국방부는 그 이자를 협약은행에 지급하는 방식임

자료: 국방부

2021년 계획 대비 전세자금지원 세대수가 7,280세대로 감소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전세가격 상승 및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전세 이사수요가 줄어든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 민간주택 활용 확대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전세지원 현실화 추진현황을 보면, 전세지원한도를 2016년 평균 0.7억원에서 2021년 평균 1.64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전세대부 급지를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개선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군 간부 전세자금지원세대수 지원 현황]

(단위: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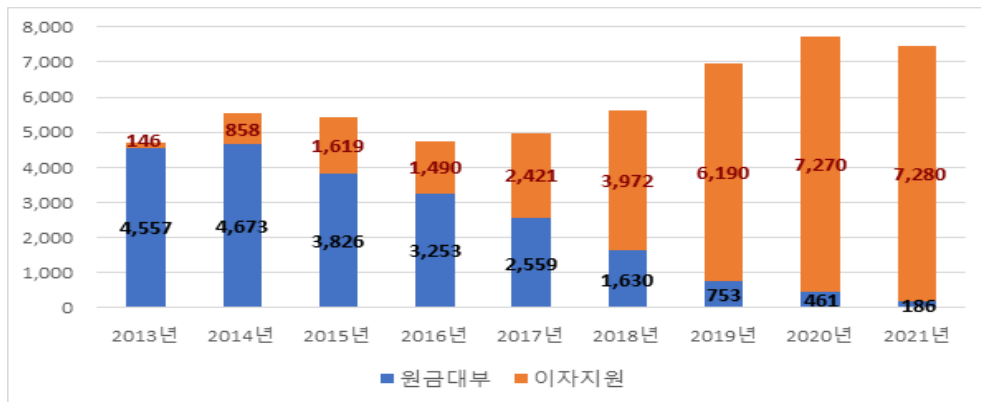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980	5,602	6,943	7,731	7,466

주: 전세자금 이자지원세대수와 전세자금 용자세대수를 합한 세대수

자료: 국방부

[연도별 전세지원사업 지원 현황]

(단위: 명)



자료: 국방부

2022년 6월 기준 현재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 및 간부숙소는 관사 74,847호, 간부숙소 10만 7,599호 등 18만 2,446호가 있다. 이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관사 및 간부숙소는 2만 3,468호이며, 2025년 증원되는 군간부 정원을 기준으로 부족 소요는 1만 6,144호 등 총 3만 9,612호가 개선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1만 6,844호는 개선 중에 있고, 2만 2,768호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³⁾이다.

3) 국방부는 관사의 경우 '25년 정원 기준 대비 89%를 지원(노후물량, 전세지원 포함)하고 있으며, 노후·부족한 1만 4천호 중 현재 개선(신축·리모델링) 중인 3천호를 제외한 약 1만 1천호가 개선이 필요하고, 간부숙소의 경우 '25년 정원 기준 대비 94%를 지원(노후물량 포함)하고 있으며, 노후·부족한 2만 6천호 중 현재 개선(신축·리모델링) 중인 1만 4천호를 제외한 1만 2천호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사 및 간부숙소 보유 및 소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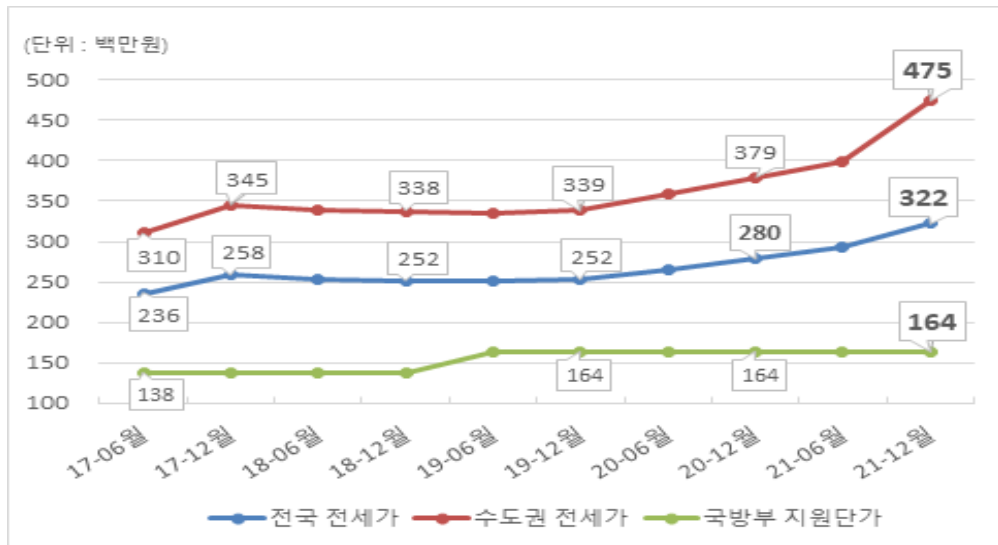
(단위: 호)

구분	222년 6월 보유				부족 (B)	소계 (A+B)	개선 소요	
	소계	양호	노후 (30년 이상)(A)	전세 대부			개선 중	개선필요
합계	182,446	151,536	23,468	7,442	16,144	39,612	16,844	22,768
관사	74,847	62,563	4,842	7,442	9,304	14,146	3,067	11,079
간부 숙소	107,599	88,973	18,626	0	6,840	25,466	13,777	11,689

자료: 국방부

한편,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아파트 중위 전세가(2021년 12월 기준)가 93㎡(28평) 기준 3억 2,200만원으로, 2021년도 계획 지원단가 1억 6,400만원의 9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군간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파트 중위 전세가 및 지원단가 변동 추이]



자료: 국방부

그런데, 군인복지기금⁴⁾ 주거지원계정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민간예수금(주거지원보증금)은 향후 반환해야 하는 특성⁵⁾이 있어 전세자금 이자지원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타재산 이자수입(기타재산수입)과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는 전세자금융자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이자수입과 원금회수 수입이나 2022년부터 전세자금융자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재원이 되기는 어렵다.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22년도 수입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계획		2022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주거지원계정 수입 합계	268,889	217,150	217,150	217,031	△119	△0.1
기타재산수입	1,038	1,571	1,571	-	△1,571	△100
기타재산이자수입	-	-	-	788	788	순증
기타경상이전수입	1,391	1,287	1,287	1,237	△50	△3.9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44,368	10,662	10,662	8,743	△1,979	△18.6
한국은행예치금회수	49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8,000	79,759	79,759	40,000	△39,759	△49.8
일반회계전입금	-	-	-	20,000	20,000	순증
기금예수금	-	-	-	20,000	20,000	순증
기타민간예수금	114,043	123,871	123,871	126,323	2,452	2.0

자료: 국방부

특히,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은 군 간부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 발생분을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수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이자지원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도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수입에 일반회계전입금 200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기금예수금) 200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의 지출규모(529억원)와 비교할 때 일반회계전입금은 그 규모가 작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향후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또다시 재원을

4) 참고로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 학자금대부계정, 주거지원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민간예수금은 주거지원보증금을 수입처리하는 과목으로, 주거지원보증금은 보증금을 납부한 개인에게 결국 반환해야한다(주거지원보증금반환금 사업).

확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세지원물량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높이는 등 군 간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세지원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의 지출소요만큼 일반회계전입금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군인복지기금의 계정을 통합하는 한편, 군인복지기금의 수입원⁶⁾을 발굴 또는 확충함으로써 전세지원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군인복지기금은 복지계정, 학자금대부계정, 주거지원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군간부전세지원을 융자방식으로 하여 융자원금회수금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주거지원계정을 별도로 설치할 실익이 있었으나, 최근 군간부 전세지원의 융자비중을 줄이고 이자지원방식으로 일원화하고 있어 향후 주거지원계정에서 융자원금회수금 수입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주거지원계정을 별도로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군인복지기금 자체수입으로 군 체력단련장 및 골프연습장 이용료 수입과 군 복지시설(마트, 식당, 복지회관) 운영 수입금 등이 있다.

방위사업청
(235~299 비공개)



병무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5억 2,600만원이며, 3억 7,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3.7%인 3억 1,700만원을 수납하고 4,800만원은 미수납하였으며 1,4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1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526	1,526	1,526	379	317	48	14	83.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병무청

2021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443억 6,800만원이며, 이 중 90.0%인 2,200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243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병무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1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44,368	244,368	244,368	220,018	0	24,350	90.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병무청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병무청의 자산은 3,723억 8,600만원, 부채는 126억 8,000만원으로 순자산은 3,597억 5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61억 2,400만원, 투자자산 7,600만원, 일반유형자산 3,529억 7,100만원, 무형자산 48억 4,8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83억 6,7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3억 4,400만원(1.4%) 감소하였다. 이는 감가상각, 일반유형자산 재평가 및 처분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81억 7,700만원 감소, 임차보증금 유동성대체금액 전기대비 감소 등에 따른 유동자산 11억 9,1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45억 8,500만원, 장기차입부채 80억 6,800만원, 장기충당부채 2,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3억 6,100만원(12.0%) 증가하였다. 이는 신규금융리스 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7억 1,900만원의 증가, 금융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금액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6억 3,4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병무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72,386	377,730	△5,344	△1.4
Ⅰ. 유동자산	6,124	7,315	△1,191	△16.3
Ⅱ. 투자자산	76	54	22	40.7
Ⅲ. 일반유형자산	352,971	361,148	△8,177	△2.3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4,848	3,163	1,685	53.3
Ⅵ. 기타비유동자산	8,367	6,051	2,316	38.3
부 채	12,680	11,319	1,361	12.0
Ⅰ. 유동부채	4,585	3,951	634	16.0
Ⅱ. 장기차입부채	8,068	7,349	719	9.8
Ⅲ. 장기충당부채	28	19	9	47.4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359,705	366,411	△6,706	△1.8
Ⅰ. 기본순자산	249,142	249,142	0	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36,700	24,777	△61,477	△248.1
Ⅲ. 순자산 조정	147,263	92,492	54,771	59.2

자료: 병무청

병무청은 2021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966억 5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76억 6,300만원, 관리운영비 2,710억 6,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21억 2,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686억 4,300만원(30.1%) 증가한 2,966억 500만원이며, 이는 관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673억 7,700만원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한다.

총 3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병역자원선발 프로그램(154억 8,300만원)과 보충역복무지원 프로그램(96억 9,300만원), 병역자원충원 프로그램(24억 8,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306억 7,200만원과 경비 1,403억 9,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병무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7,663	24,466	3,197	13.1
가. 프로그램 총원가	27,663	24,466	3,197	13.1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
Ⅱ. 관리운영비	271,062	203,685	67,377	33.1
Ⅲ. 비배분비용	0	0	0	0
Ⅳ. 비배분수익	2,120	189	1,931	1,021.7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296,605	227,962	68,643	30.1
Ⅵ. 비교환수익 등	0	0	0	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296,605	227,962	68,643	30.1

자료: 병무청

병무청의 2021년도 기초순자산은 3,664억 1,1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597억 500만원으로 기초 대비 67억 600만원(1.8%)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2,966억 500만원 발생하였으며,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547억 7,1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2,351억

2,900만원 발생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2,354억 4,5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3억 1,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547억 7,1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병무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366,411	357,103	9,308	2.6
Ⅱ. 재정운영결과	296,605	227,962	68,643	30.1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35,129	226,842	8,287	3.7
Ⅳ. 조정항목	54,771	10,429	44,342	425.2
Ⅴ. 기말순자산(Ⅰ - Ⅱ + Ⅲ + Ⅳ)	359,705	366,411	△6,706	△1.8

자료: 병무청

병무청의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화상면접 실시에 따른 모집전형 예비 사업**이 있다.

모집전형 면접대상자의 30%에 대한 화상면접 실시계획에 따라 모집전형 예비 3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입영판정검사 사업**, ② **사회복무요원 직접관리 사업**이 있다.

입영판정검사 사업은 각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병무청 주관의 입영판정검사를 신설 운영할 수 있도록 입영판정검사 경비 1억 8,800만원, 의무자여비 2억 6,700만원, 전산시스템 구축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무요원 직접관리 사업은 반복적인 복무규정 위반 사회복무요원을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하여 2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다.²⁾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 2020.11.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2) 국방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 2020.11.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병무청은 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병역처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② 군소요 적정 충원 및 병력동원업무 수행, ③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 강화, ④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자긍심 고취 등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대체역 심사 사업의 경우 대체역심사위원회의 개원 초기에 대체역 편입 신청이 집중되고 이에 따라 편입신청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이를 법정 결정기간 내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당하여 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한하여 편입신청 결정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의 경우 보충역 소집적체로 인하여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는 동시에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대체역 편입신청 집중으로 인한 편입결정 지연 해소 필요

가. 현 황

대체역 심사 사업¹⁾은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대체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무청은 대체역 심사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액 28억 9,400만원 중 21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5,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대체역 심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체역 심사	2,894	2,894	0	0	2,894	2,138	0	75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대체역심사위원회의 개원 초기에 대체역 편입신청이 집중되고 이에 따라 편입 신청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이를 법정 결정기간 내에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 제13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한하여 편입신청 결정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대체역 심사 사업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7134-318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체역’을 신설하도록 「병역법」 제5조제1항을 개정²⁾(2020.1.1. 시행)하고 「대체역법」을 제정(2020.1.1. 시행)하면서, 2020년 6월 30일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와 함께 시작된 사업이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역법」 제3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대체역 편입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되는 경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되어 36개월 동안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근무 형태로 복무를 하고, 대체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8년까지 교정분야에서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군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대체복무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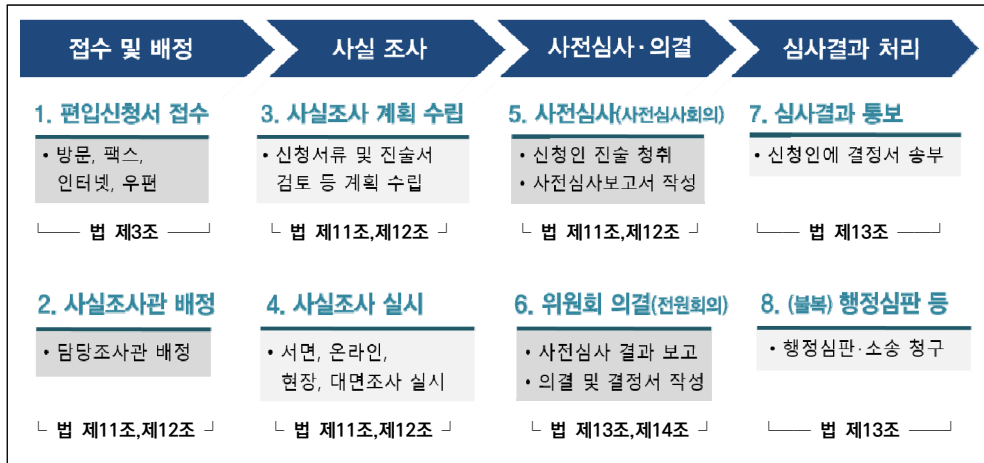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법률	「병역법」 제5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복무기간	36개월
복무기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복무관리 주체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총괄 지휘·감독) • 대체복무기관의 장(소속 대체복무요원 지휘·감독) • 병무청장(합동 실태조사)
복무형태	합숙근무
신청자격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예비역, 복무만료 보충역
대체역 편입절차	①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 및 사실조사관 배정, ② 사실조사, ③ 사전 심사·의결, ④ 심사결과 처리
대체복무요원 병역이행 과정	<pre> graph LR A[19세 병역판정 검사] --> B[편입 신청] B --> C[위원회 심사 90일 (+60일)] C --> D[편입] D --> E[소집 대기] E --> F[소집] F --> G[합숙 36개월] G --> H[복무 만료] H --> I[예비군 대체 복무] I --> J[8년까지] J --> K[40세 면역] subgraph "대체복무요원" G H end subgraph "대체역" D E F G H I J K end </pre>

자료: 병무청, 「대체복무제도 안내 리플렛」을 바탕으로 재작성

- 2)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제1항 제6호가 신설되었다. 동 조항은 대체역을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역 편입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역 편입심사는 ① 편입신청서 접수, ② 사실조사관 배정, ③ 사실조사 계획 수립, ④ 사실조사 실시, ⑤ 사전심사(사전심사회의), ⑥ 대체역심사위원회 의결(전원회의), ⑦ 심사결과 통보 단계를 거쳐 편입여부가 결정되며, 불복 시에는 ⑧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게 된다.

[대체역 편입심사 절차]



주: 법은 「대체역법」을 의미
 자료: 병무청

「대체역법」 제13조³⁾는 대체역심사위원회가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단서는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체복무제도 시행 초기에 대체역 편입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부칙(2019.12.31. 법률 제16851호) 제4조⁴⁾를 두어,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 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9.12.31. 법률 제16851호) 제4조(위원회 결정기간에 대한 특례) 이 법 제3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편입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본문 중 “90일 이내”를 “24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0일 이내”를 “120일 이내”로 한다.

6월 29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역심사위원회가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24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1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신청시기	결정기간	연장 포함 결정기간
2020.6.30.~2021.6.29.	240일 이내	360일 이내
2021.6.30.~	90일 이내	150일 이내

주: 결정기간은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산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020년~2021년 간 처리된 편입신청 결정 건의 심사기간(대체역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대체역법」 부칙(2019.12.31. 법률 제16851호) 제2조⁵⁾의 적용을 받는 무죄판결 확정자의 경우 심사기간이 평균 22일 및 33일로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죄 이외자의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020년도의 경우 평균 110일, 2021년도의 경우 평균 248일로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결정 연도	구분	인원(명)	1인당 심사기간
2020년 (총 731명)	무죄판결 확정자	673	평균 22일
	무죄 이외자	58	평균 110일
2021년 (총 1,297명)	무죄판결 확정자	182	평균 33일
	무죄 이외자	1,115	평균 248일

자료: 병무청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9.12.31. 법률 제16851호)

제2조(대체역 편입에 관한 특례) ③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 제90조제1항 또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구체적으로 편입신청 일자(2020년~2021년)를 기준으로 무죄 이외자 편입신청의 심사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 신청된 1,206건의 경우 결정기간이 연장된 건은 438건⁶⁾(36.3%)이며 2021.1.1.~2021.6.29.에 신청된 150건의 경우 결정기간이 연장된 건은 135건⁷⁾(90.0%)으로 나타나 상당 비율의 편입신청에 대하여 연장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6.30.~2021.12.31.에 신청된 편입신청 321건의 경우 「대체역법」 부칙(2019.12.31. 법률 제16851호)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결정기간이 짧아진 영향으로 법정 결정기간을 미준수한 건이 307건⁸⁾(95.6%)으로 편입신청 건의 대부분이 법정 결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 이외자의 대체역 편입신청 심사기간별 현황]

(단위: 건, %)

신청일자	신청건수	심사 제외	심사 완료			심사 진행 중		
			결정기간 이내	연장포함 결정기간 이내	법정 결정기간 미준수	결정기간 이내	연장포함 결정기간 이내	법정 결정기간 미준수
합 계	1,677 (100.0)	39 (2.3)	755 (45.0)	538 (32.1)	109 (6.5)	- (0.0)	5 (0.3)	231 (13.8)
「대체역법」 부칙 제4조 적용			240일 이내	240~360일	360일 이후	240일 이내	240~360일	360일 이후
‘20	1,206 (100.0)	23 (1.9)	745 (61.8)	416 (34.5)	22 (1.8)	- (0.0)	- (0.0)	- (0.0)
‘21.1.1.~	150 (100.0)	5 (3.3)	10 (6.7)	121 (80.7)	11 (7.3)	- (0.0)	3 (2.0)	- (0.0)
‘21.6.29.								
「대체역법」 부칙 제4조 미적용			90일 이내	90~150일	150일 이후	90일 이내	90~150일	150일 이후
‘21.6.30.~	321 (100.0)	11 (3.4)	- (0.0)	1 (0.3)	76 (23.7)	- (0.0)	2 (0.6)	231 (72.0)
‘21.12.31.								

주: 1. 2022년 4월말 기준

2. 괄호는 신청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심사 제외는 심사 진행 중 신청인이 대체역 편입신청을 철회하거나 신청인이 사망한 건

4. 진한 박스(연장포함 결정기간 이내, 법정 결정기간 미준수)의 모든 건은 연장의결이 있었음

자료: 병무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연장 포함 결정기간 이내 심사 완료 건 416건 + 법정 결정기간 미준수 심사 완료 건 22건

7) 연장 포함 결정기간 이내 심사 완료 건 121건 + 법정 결정기간 미준수 심사 완료 건 11건 + 연장 포함 결정기간 이내 심사 진행 중 건 3건

8) 법정 결정기간 미준수 심사 완료 건 76건 + 법정 결정기간 미준수 심사 진행 건 231건

병무청은 이와 같이 편입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접수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체역심사위원회 개원 초기 대체역 편입신청이 집중되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인한 사실조사 한계 등으로 결정 기간 지연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체역법」은 부칙(2019.12.31. 법률 제16851호) 제4조를 규정하여 대체역심사위원회 개원 후 1년간 대체역 편입신청이 집중되는 것을 이미 고려했다는 점, 병무청은 「대체역법」 제13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결정이 지연되는 모든 편입신청 건에 대해서 연장 의결을 하고 있다는 점, 2021년 하반기에 신청된 편입신청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95.6%) 법정 결정기간을 미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무청은 대체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법정 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결정을 수행하는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전원회의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의 경우 33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 개최 예상 횟수 65회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병무청은 1회의 전원회의 당 적정한 심사건수를 30~40건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원회의 개최 횟수 축소가 대체역 편입신청 결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⁹⁾

[전원회의 개요 및 개최현황]

구 분	상세 내용
위원 구성	• 인원 29명(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7명)
위원 자격요건	•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10년 이상 재직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심사·의결사항	•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각하 결정 •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 대체역 제도 관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9) 병무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인한 사실조사 한계 등으로 전원회의 개최 횟수가 축소되었다는 입장이다.

구 분	상세 내용
예산액 (집행액 / 집행률)	• 안건검토비 4억 3,850만원 (1억 6,160만원 / 36.9%) • 위원회참석비 3억 9,600만원 (2억 7,056만원 / 68.3%)
2021년도 전원회의 개최현황	• 예산편성 시 개최 예상 횟수 65회 • 실제 개최 횟수 33회(매월 약 3회)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대체역 편입 결정기간은 대체역을 신청한 사람의 군복무시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만큼, 병무청은 적정한 기간 내에 대체역 편입신청이 처리되도록 규정한 「대체역법」 제13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정 결정기간 내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체역 편입신청 결정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체역법」 제13조의 단서에 해당하여 연장 의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방안¹⁰⁾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 병무청은 「대체역법」 제13조의 단서에 해당하여 연장 의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특정하여 구체화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 현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¹⁾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현장 중심의 밀착 복무 지도를 통해 복무부적응 발생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18억 4,800만원 중 17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829	1,829	-	19	1,848	1,722	-	12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보충역 소집적체로 인하여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는 동시에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처분자를 소집대상으로 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군사교육 3주 포함 21개월 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공익 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자가에서 출퇴근하는 형태로 복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분야 등이 있다.

김소연 예산분석관(sky317@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434-320

[사회복무요원 복무 분야별 업무 내용]

복무 분야		세부 업무 내용
사회 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 - 정서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가사 및 생활지원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보건 의료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 지원
	환자 구호업무 지원	- 환자 지원, 의료활동 지원
교육 문화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 유치원·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된 학생 교육활동 지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 유치원·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된 장애학생 활동 지원
	문화재관리 지원	- 문화재보호감시지원
환경 안전	환경 보호·감시 지원	- 산림 및 공원시설 보호지원 - 하천 및 해양시설 보호지원
	재난·안전관리 지원	- 재해의 예방·관찰·지도 - 사회질서 유지, 소방안전, 생활안전·교통업무 지원
행정	일반행정 지원	-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기관 경비지원 분야 외의 복무분야에서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
	행정기관 경비지원	- 관공서 등 시설물 관리지원, 방호·경비지원 등

자료: 병무청

최근 보충역 소집대기 인원이 2017년 7만 4,828명 수준에서 2019년 8만 9,448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보충역 소집적체²⁾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도 늘어나고 있다. 2017년 90건 수준의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³⁾은 2021년도에 1만 4,485건으로 증가하였다.

2) 병무청은 보충역 소집적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하여 병역자원 일시적 증가로 현역병 입영적체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 신체검사규칙을 개정하여 기존 기준에 의하면 현역으로 판정되는 사람들을 보충역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충역 소집적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는 사회복무요원 소요 대비 소집자원이 많은 지역, 낙도·원거리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간 소집을 대기한 사람에 대하여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역법」 제65조제9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8항에 근거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기간 3년이 경과한 만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일(매년 1.1./7.1.부)에 처분한다.

[보충역 소집대기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초 소집대기 인원	74,828	84,320	89,448	80,322	75,502
전년도 연말 소집대기 인원	40,499	49,512	57,950	43,694	38,247
신규보충역 등 인원	34,329	34,808	31,498	36,628	37,255
연중 증가 인원	23,550	24,497	21,932	29,275	28,158
연중 감소 인원	48,866	50,867	67,686	71,350	71,596
사회복무요원 소집	30,615	29,835	35,666	35,160	36,459
산업기능요원 소집	7,412	7,529	6,459	6,315	6,510
전문연구요원 소집	352	370	368	354	414
기타	10,397	10,816	13,736	14,190	13,728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90	2,317	11,457	15,331	14,485

- 주: 1. 연초 소집대기 인원 = 전년도 연말 소집대기 인원 + 신규보충역 등 인원
 2. 연초 소집대기 인원 + 연중 증가 인원(병역처분 변경, 연기해소자 등) - 연중 감소 인원(소집인원 등) = 당해연도 연말 소집대기 인원
 3. 연중 증가 인원은 병역처분 변경 및 연기해소자 등에 해당하는 인원
 자료: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 정립으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보충역 소집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대기 사유 전 시근로처분의 수를 늘이는 방식보다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요처를 늘리는게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병무청은 보충역 소집적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충역 수요처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병역법 시행령」⁴⁾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⁵⁾에

4) 「병역법 시행령」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①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0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에

의한 사회복지요원 배정결정 규모는 2017년 약 3만명의 수준에서 2019년~2021년 약 3.5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병무청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인원을 2021년까지 매년 9,000명 규모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요원 배정요청 인원 및 배정결정 인원]

(단위: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회 서비스	배정요청	20,301	20,039	22,144	24,790	25,585	22,533	21,857
	배정결정	19,858	19,951	22,094	24,550	25,241	22,042	21,077
행정 분야	배정요청	10,545	10,129	13,549	10,628	10,276	8,281	8,675
	배정결정	10,165	10,082	13,539	10,595	10,234	8,170	8,504
합 계	배정요청	30,846	30,168	35,693	35,418	35,861	30,814	30,532
	배정결정	30,023	30,033	35,633	35,145	35,475	30,212	29,581

주: 대도시지역은 요청인원 대비 100% 배정, 그 밖의 지역은 가용자원 현황을 감안해 최대 배정
자료: 병무청

그러나 2022년도 및 2023년도 배정결정 인원은 다시 3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산업기능요원 소집규모는 2017년 7,412명에서 2021명 6,510명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등 목표 규모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장기대기 사유 전이근로 역 처분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요원의 수요처를 확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복무기관이 사회복지요원을 배정받아 근무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⁶⁾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역의 복무형태별 복무부실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사

사회복지요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인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13조(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복무기관별,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매년 3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배정결과를 매년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은 배정요청을 한 시·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 등의 경우도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복무기관의 부담을 높이는데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회복무요원 복무부실자 비율은 전체의 3%로 그 외의 복무형태에서 복무부실자 비율이 0.6%로 나온 것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정부에서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 중 ‘108.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의 내용 중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단계적 봉급 인상(2025년 병장기준 월 200만원 실현) 역시 향후 사회복무요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충역 복무형태별 복무부실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실자	2,426	2,353	2,502	2,044	1,743
	인원	57,580	57,675	60,698	56,306	57,769
	비율	4.21	4.08	4.12	3.63	3.02
그 외	복무부실자	84	64	134	123	202
	인원	41,388	44,639	42,396	39,162	36,032
	비율	0.2	0.1	0.3	0.3	0.6

자료: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20대 청년층으로, 보충역 소집 대기가 길어지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감소하여 적기 사회진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보충역 소집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병무청은 복무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 배정결정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⁷⁾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병무청은 군부대 비전투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등 수요확대 방안과 병역판정신체검사 규칙 개정을 통한 공급감축을 통해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처분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없다.

[2021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0	0	0	0	0	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2021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21억 6,900만원이며, 이 중 77.1%인 93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1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0,187	10,187	12,169	9,379	481	2,309	77.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기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자산은 19억 1,000만원이고, 부채는 3,000만원이며 순자산은 18억 8,0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0억 9,900만원, 일반유형자산 3억 2,500만원, 무형자산 2억 4,9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2억 3,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5억 8,0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에 기인한다.

부채는 장기충당부채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3,000만원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910	1,330	580	43.6
Ⅰ. 유동자산	1,099	762	337	44.2
Ⅱ. 투자자산	0	0	0	0
Ⅲ. 일반유형자산	325	415	△90	△21.7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249	152	97	63.8
Ⅵ. 기타비유동자산	237	1	236	23,600
부 채	30	0	30	순증
Ⅰ. 유동부채	0	0	0	0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
Ⅲ. 장기충당부채	30	0	30	순증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1,880	1,330	550	41.4
Ⅰ. 기본순자산	442	442	0	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1,438	888	550	61.9
Ⅲ. 순자산 조정	0	0	0	0

자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91억 8,5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순원가 93억 4,8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와 지급임차료 등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없다.

[2021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9,348	5,116	4,232	82.7
가. 프로그램 총원가	9,348	5,116	4,232	82.7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
Ⅱ. 관리운영비	0	0	0	0
Ⅲ. 비배분비용	0	0	0	0
Ⅳ. 비배분수익	163	57	106	186.0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9,185	5,059	4,126	81.6
Ⅵ. 비교환수익 등	0	0	0	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9,185	5,059	4,126	81.6

자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예산이체일 기준)은 13억 3,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8억 8,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5억 5,000만원(41.4%) 증가하였다. 이는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91억 8,500만원이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97억 3,500만원으로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은 97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억 1,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국고수입 증가 36억 6,100만원, 기타재원조달 3억 4,9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1,330	664	666	100.3
II. 재정운영결과	9,185	5,059	4,126	81.6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9,735	5,725	4,010	70.0
IV. 조정항목	0	0	0	0
V.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880	1,330	550	41.4

자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과 증액된 사업은 없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5.18 진상규명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문회 미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불용하였고 관련자의 제보 및 진술 확보가 미흡하여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집행이 부진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5·18 진상규명지원 사업의 집행을 제고

가. 현 황

5·18 진상규명지원 사업¹⁾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청문회 개최 및 연구 용역 등)을 위한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는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45억 2,300만원 중 22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5,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5·18 진상규명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5·18 진상규명지원	4,022	4,022	50	0	451	4,523	2,289	481	1,753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최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1.1.5.)²⁾으로 위원회 직원 증원 및 조사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는 17억 4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고 이 중 4억 5,100만원의 예비비가 동 사업비에 편성³⁾되었다.

최형수 예산분석관(jjaps@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31-300

2)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첫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후 2년간 활동할 수 있되, 2회에 한정하여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연장하였다. 둘째, 조사범위를 ‘광주일원’에서 ‘광주관련지역’으로, 관련시기를 ‘5·18민주화운동 당시’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시기로 확대·연장하였다. 셋째, 직원의 정원을 50명에서 70명(위원장 및 상임위원 제외)으로 증원하였다.

3) 운영비(210목) 4억 302만원, 연구용역비(260목) 4,768만원

나. 분석의견

청문회 미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 불용 등 사업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18 진상규명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5억 2,300만원 중 22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8,1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7억 5,300만원은 불용되었다.

이월된 4억 8,100만원은 일반용역비와 일반연구비에서 이월된 것으로, 그 사유는 헬기사격 관련 용역계약의 연말체결과 5·18민주화 운동 피해자유가족 실태조사 지연 등에 기인한다.

불용액은 청문회 미실시⁴⁾에 따른 관련 일반수용비 4억 6,300만원, 지표조사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축소 등 일반연구비 4억 1,500만원, 암매장 제보 및 진술 확보 미흡 등 일반용역비 1억 5,200만원, 종결과제 부재⁵⁾에 따른 손실보상금 1억 2,000만원 미집행 등 17억 5,300만원(사업비 대비 39%)으로 사업 집행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였다.

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는 증거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전반적인 조사활동 종결단계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 활동기간이 2022년말까지 연장되었고 2021년도말까지 조사 종결단계에 이른 과제가 없어 2021년도에는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다.

5) 위원장 소속하에 4개의 조사과가 있으며, 2021년까지 해당 과에 부여된 종결된 조사과제가 없었다.

[2021회계연도 5·18 진상규명지원 사업 결산 및 집행부진 사유]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집행	이월	불용	집행부진 사유
일반수용비	717	254	0	463	■ 청문회 미실시 등에 따른 운용비 불용
일반용역비	1,039	546	341	152	■ 암매장 관련 제보 및 진술 확보 미흡 등에 따라 사업 축소 ■ 조사활동 영상물 제작 사업축소로 인한 일부 불용 ■ 관련협의 지연으로 헬기사격관련 4개용역계약의 연말체결에 따른 사업비 일부집행·이월
관리용역비	20	19	0	1	■ 홈페이지 운영 및 서버유지 용역 사업이 소폭 축소
일반연구비	1,787	1,232	140	415	■ 행불자유전자검사 용역예산 불용(1.2억원) ■ 안면인식기술 용역은 기술 적용 재검토 필요로 불용(0.5억원) ■ 지표조사결과 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축소(1.8억원) ■ 성폭력 사건 관련 용역, 피해자 관련 용역, 무장시위대 활동 관련 용역은 사업비(잔금) 일부집행으로 이월(1.4억원) ■ 암매장 제보 및 진술확보 미흡 등에 따라 불용
손실보상금	120	0	0	120	■ 규정에 따라 조사종결전에 한해 지급가능하나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종결과제 부재로 미지급
국내여비 등 기타	840	238	0	602	■ 코로나로 인한 직접 조사활동 축소 등에 따라 예산집행 제한
계	4,523	2,289	481	1,753	

자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는 사업집행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사유를 위원회가 수행 중인 조사활동 중에 종결된 사안이 없어 청문회를 개최하기 어렵고⁶⁾ 일부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에서 관련자의 제보 및 진술 확보가 미흡하여 일부 사업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는 한시적 조직⁷⁾으로 활동 기간이 제

6)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는 2021년 및 2022년 예산에서 청문회 개최 횟수를 각 6회로 계획하여 예산(각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다.

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는 2019년 12월 26일 설립되었으며 현행법 상 최장 2023년 연말까지 활동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법을 개정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한되어 있다는 점,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과제로 고령인 피해자·유가족 및 제보자 등의 진술 및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수행 시기가 늦어질수록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2년 8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066-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471-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